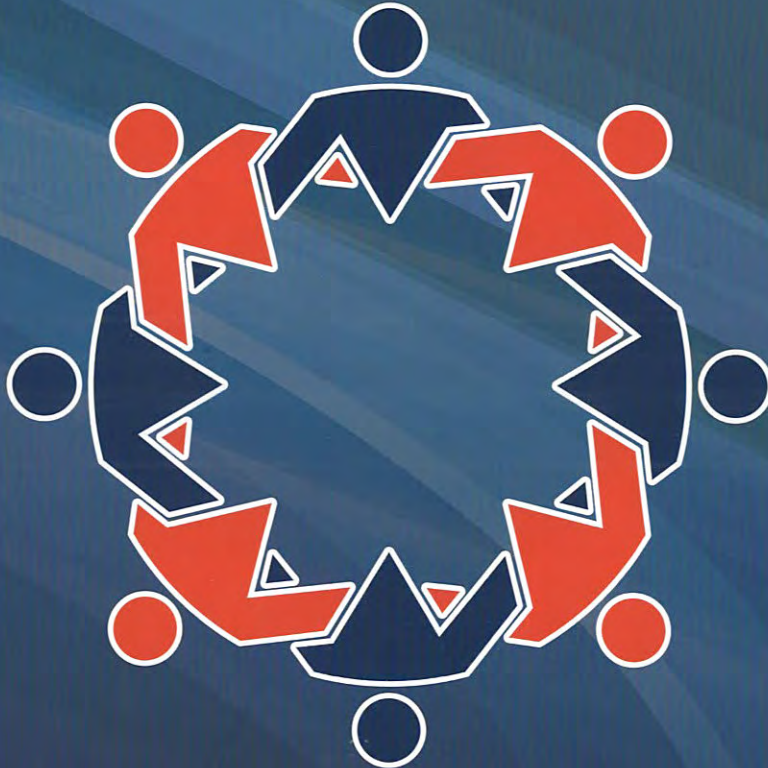




한-중 FTA 활용방안 설명회

KINTEX 301, 302 Seminar Room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주관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국무역협회 차이나테스크

『한·중 FTA 활용방안 설명회』 개요

1. 행사 개요

- 일 시 : 2015. 4. 27(월) 14:00~18:00
- 장 소 : KINTEX 제 2전시장 3층 301, 302호 세미나실
- 참 가 비 : 무료
- 신청기간 : 2015년 4월 16일~24일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 관 : KOTRA, 차이나데스크

2.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연 사
13:30-14:00(30분)	참가자 등록	
14:00-14:10(10분)	인사말	윤효춘 본부장 (KOTRA 중국지역본부)
Session 1 - 한중 FTA 이해와 활용		
14:10-14:40(30분)	한중 FTA 소개 및 활용방안	정환우 조사담당관 (KOTRA)
14:40-15:10(30분)	상품관세·원산지 이해와 활용	최대규 관세사 (신한관세법인)
15:10-15:40(30분)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장상해 차장(KOTRA)
15:40-15:50(10분)	차이나데스크 소개 및 활용법 안내	홍희 부장(차이나데스크)
15:50-16:00(10분)	휴 식	
Session 2 - 中 시장 진출전략		
16:00-16:30(30분)	中 내수시장 진출전략	홍창표 부분부장 (KOTRA 중국지역본부)
16:30-17:00(30분)	온라인 플랫폼 활용 中 내수시장 진출 전략	정용환 상무(Qoo10)
17:00-17:15(15분)	개성공단 역외가공 활용 中 시장 진출 방안	김상훈 과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7:15-17:50(30분)	중국 인증제도 이해와 활용	김기현 대표 (중국경영인증컨설팅)
17:50-18:00(10분)	Q & A	연사합동

* 세부 프로그램 내역(주제 및 연사)은 변동 가능성 있음

목 차

Session 1. 한중 FTA 이해와 활용 / 1

- | 한중 FTA 소개 및 활용방안 3
 - ▷ 정환우 조사담당관(KOTRA)
- | 상품관세 · 원산지 이해와 활용 25
 - ▷ 최대규 관세사(신한관세법인)
- | 차이나데스크 소개 및 활용법 안내 45
 - ▷ 홍 희 부장(차이나데스크)

Session 2. 中 시장 진출전략 / 53

- | 中 내수시장 진출전략 55
 - ▷ 홍창표 부본부장(KOTRA 중국지역본부)
- | 온라인 플랫폼 활용 中 내수시장 진출 전략 75
 - ▷ 정용환 상무(Qoo10)
- | 개성공단 역외가공 활용 中 시장 진출 방안 91
 - ▷ 김상훈 과장(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 중국 인증제도 이해와 활용 123
 - ▷ 김기현 대표(중국경영인증컨설팅)

Session 1

한중 FTA 이해와 활용

한중 FTA 소개 및 활용방안

▷ 정환우 조사담당관(KOTRA)

한·중 FTA 활용방안 설명회

한·중 FTA 이해와 활용

2015년 4월 27일

KOTRA 중국사업단

Contents 目录

1. 한중 FTA 소개

2. 업종별 영향 종합

3. 주요업종 영향과 활용 전략

화학	화장품	가공식품
IT·전자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섬유·의류	소비재(내구, 비내구)	



FTA 일반 : 흐름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네바관세협정, 1948.1.발효)**
 - UR(GATT 8차 협상/95 발표; 상품/서비스 15개 의제, 농산물/섬유교역, 지재권 등 포함)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95.1 정식 출범) 160개 회원국**
 -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분쟁조정,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 구속력 행사
 - DDA(Doha Development Agenda, 2001.11 WTO 제4차 각료회의)
 - * UR을 이어 농업, 서비스, 지재권 등 자유화 목표
 - * '라운드' 대신 '개발 아젠다' 명칭 : 개도국 개발/성장도 다룬다는 의미지만 선진국-개도국 이해 차로 난항
- **FTA(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양자 또는 지역주의)**
 - FTA는 UR 타결 이전에도 존재
 - WTO 체제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양자 혹은 그 이상 간) 특별약관
 -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고유 관세/수출입제도 유지하면서 무역장벽 완화
 - * EU(유럽연합) : 역내 모든 국가의 단일관세/수출입제도
 - * FTA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으로 RTA(지역무역협정)의 대중 이름
 - WTO 출범 이후 적용 및 대상범위 대폭 확대해 상품관세 철폐 외에 서비스·투자 자유화,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조화부문도 포함

KOTRA 중국사업단

FTA 일반 : 구조와 틀

상품교역 서비스 투자 규범, 기타 이슈

제조업/농림수산업 WTO GATS W/120 외자에 대한 비차별 무역투자관련 규범
*제조업: 통관업/경공업 12개 서비스산업

전기전자 화학·석유제품포함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 플라스틱, 고무, 가죽 생활용품 식품 섬제품 농림수산업	비즈니스서비스 통신 건설 교육 유통 보건 및 의료 환경 관광 문화 스포츠 예술 금융 기타 서비스	진입장벽 운영장벽 환수장벽 투명성 결여 차별보호주의장벽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부과금지 (performance requirement)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SPS(검역규제) TBT(무역기술장벽) 원산지 분쟁해결 환경 무역구제 (AD, SG, CD)
--	--	---	--

관세양허 바HP 비관세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서비스공급형태 Model-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각종 불합리한 허가요구 각 지방 세칙의 차이	국제기구 가입 중앙/지방 간 동일한 규정
--------------------	---	---	------------------------------

*양허유형(ex) 즉시 3년 5년 7년 10년 예외적 미양허	Model: 경쟁간 공급 (금융, IDD, 원격교육) Model2: 해외소비 (해외의료, 관광서비스) Model3: 상업적 판매 (자회사, 사무소 설치) Model4: 자연인 이동	보통 NT 지방행정관서의무명시 이행요건부과금지 승급보장 경영진 국적부과 금지 수출,보상기반 명시 공정 및 경쟁대우	원산지 규정 (역외가공인정) 지배권 (기간, 집행, 협력) 전자상거래 (무판세적용) 환경협력
---	--	---	---



KOTRA 중국사업단

한중 협력관계 재구성 : 한중 FTA 협정문 구성

- 서문 및 총 22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 ※ 특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분야 폭넓게 규정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1) 상품	7) 서비스	12) 지적재산권	18) 최초규정 및 정의
2) 원산지(PSR 포함)	8) 금융*	13) 경쟁	19) 예외
3) 통관·무역원활화	9) 통신*	14) 투명성	20) 분쟁해결
4) 무역구제	10) 자연인 이동	15) 환경	21) 제도
5) SPS(위생·검역)	11) 투자	16) 전자상거래*	22) 최종조항
6) TBT(무역기술장벽)		17) 경제협력	

Source: 산업부

KOTRA 중국사업단

한중 FTA 기대 성과 : 상품시장 개방 [1/2]

상품 시장 개방 20년 이내 양국의 90% 이상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 즉시철폐 : **韓** 419억불 ↔ **中** 734억불

- (韓) 품목수 50%, 수입액 52% → (中) 품목수 20%, 수입액 44%

• 10년내 관세철폐 : **韓** 623억불 ↔ **中** 1,105억불

- (韓) 품목수 79%, 수입액 77% → (中) 품목수 71%, 수입액 66%

• 20년내 관세철폐 : **韓** 736억불 ↔ **中** 1,417억불

- (韓) 품목수 92%, 수입액 91% → (中) 품목수 91%, 수입액 85%

* 한-미 FTA : (韓) 218억불, (美) 283억불 즉시철폐/(韓) 273억불, (美) 409억불 10년내 철폐

* 한-EU FTA : (韓) 182억불, (EU) 318억불 즉시철폐/(韓) 272억불, (EU) 415억불 10년내 철폐



Source: 산업부

KOTRA 중국사업단

한중 FTA 기대 성과 : 상품시장 개방 [2/2]

품목군		우리		중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일반 품목	즉시	6,108 (50%)	418.5억불 (52%)	1,649 (20%)	733.7억불 (44%)
	(유관세)	4,125 (34%)	80.4억불 (10%)	958 (12%)	87.1억불 (5%)
	5년내	1,433 (12%)	31억불 (4%)	1,679 (20.5%)	58.3억불 (3.5%)
	10년내	2,149 (18%)	173.3억불 (21%)	2,518 (31%)	312.5억불 (19%)
	소계	9,690 (79%)	622.8억불 (77%)	5,846 (71%)	1,104.5억불 (66%)
민감 품목	15년내	1,106 (9%)	79.5억불 (10%)	1,108 (13.5%)	219.2억불 (13%)
	20년내	476 (4%)	34.1억불 (4%)	474 (6%)	93.75억불 (5.6%)
	소계	1,582 (13%)	113.6억불 (14%)	1,582 (19%)	312.9억불 (19%)
초민감 품목	양허 제외	852 (7%)	42.9억불 (5%)	637 (8%)	149.9억불 (9%)
	부분감축	87 (0.7%)	22.8억불 (3%)	129 (1.6%)	100.1억불 (6%)
	TRQ	21 (0.2%)	5.7억불 (0.7%)	-	-
	소계	960 (8%)	71.3억불 (9%)	766 (9%)	250.1억불 (15%)
합계		12,232 (100%)	807.7억불 (100%)	8,194 (100%)	1,667.5억불 (100%)
자유화율		11,272 (92%)	736.4억불 (91%)	7,428 (91%)	1,417.4억불 (85%)

※ 품목수는 HS 2012 한국(HSK 10단위), 중국(HSC 8단위), 수입액은 '12년 수입액 기준

※ 추후 중축과 양허안 검증 관련 기술협의 과정에서 일부 품목 미세조정 가능

Source: 산업부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KOTRA 중국사업단



한중 FTA 업종별 영향 전망(잠정) -1

업 종		수출 비중 (‘14)	수입 비중 (‘14)	무역 수지 (억\$)	FTA 효과 (관세철폐(T), NTB 완화(N), VC 활성화(V))
전기 전자	전 자	44.5	31.3	365.1	● (T) 가공무역, ITA등으로 크진 않으나 효과 있음 ● (N) 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 상호인정 등 수혜 ● (V) 대표적 GVC 업종으로 더욱 활성화 전망
	전 기	2.4	5.9	-3.3	● (T) 우리측 민감분야로 보호수준 높음(장기철폐) ● (N) 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상호인정 등 수혜 ● (V) 일부 수혜 전망
자 동 차	승용차	1.2	0.0	17.4	● (T) 효과 없음. 상용차 장기철폐로 일부 수혜 ● (N) 직접수혜 별무이나 자동차부품 장벽 완화로 간접 수혜 가 능 ● (V) 자동차부품 통한 간접 수혜
	부 품	4.4	1.4	52.0	● (T) 일부 수혜. 대부분 장기 철폐 ● (N)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등 수혜 예상 ● (V) 원산지, 통관 등 통한 수혜 예상

한중 FTA 업종별 영향 전망(잠정) - 2

업 종		수출 비중 ('14)	수입 비중 ('14)	무역 수지 (억\$)	FTA 효과 (관세철폐(T), NTB 완화(N), VC 활성화(V))
섬유 의류	섬 유	1.4	2.5	-1.5	● (T) 한국 민감분야. 한국 보호, 중국 개방 → 관세철폐 효과 유리 ● (N) NTB 완화 및 경제협력 수혜 ● (V) VC 활성화 업종으로 더욱 활성화 기대
	의 류	0.3	3.9	-31.2	● (T) 민감분야. 중국 개방 확대로 우리기업 수혜 ● (N) NTB 완화 및 경제협력 수혜 ● (V) VC 활성화 업종으로 더욱 활성화 기대
석유	석유 제품	4.2	0.3	58.6	● (T) 중국 장기철폐(15년) - 단 항공유(관세율 9%) 즉시철폐로 수혜 가능 ● (N) 별무 효과 ● (V) 별무 효과
석유 화학	석유 화학	15.4	2.4	201.5	● (T) P-Xylene, TPA 등 주력품목 양허 제외로 효과 제한적, 단 고부가 품목 개방수준 높아 향후 수혜 기대 ● (N) 별무 효과 ● (V) 별무 효과

11

한중 FTA 업종별 영향 전망(잠정) - 3

업 종		수출 비중 ('14)	수입 비중 ('14)	무역 수지 (억\$)	FTA 효과 (관세철폐(T), NTB 완화(N), VC 활성화(V))
철 강		3.3	13.5	-73.9	● (T) 한국 무관세, 중국 관세철폐 → 한국 유리. 단 철강 ↔ 철강제품 상이 ● (N) 별무 관계 ● (V) 한-중간 분업 재편에 유리
비철금속		1.6	1.8	6.3	● (T) 한국측 민감분야. 중국측 고수준 개방 수용 → 다소 수혜 ● (N), (V) 별무 효과
기 계		9.6	11.4	36.3	● (T) 상당 부분 중국관세 철폐, 우리측은 민감분야(기계요소) 보호 - (고개방) 보일러, 펌프, 냉장고 부품, 버너, 히터, 측정기기 등 - (저개방)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 ● (N), (V) 별무 효과
화 학		3.4	5.7	-2.6	● (T) 대체로 중국 고수준 관세 철폐 → 수혜 - (고개방) 의약, 광택제, 계면활성제, 도료·안료 등 - (저개방) 비료, 화장품, 사진·영화재료 등 ● (N) 상당수 소비재 포함 → NTB 완화 기대 ● (V) 양국간 분업관계 재배치·활성화 전망
플라스틱 고가 무족		2.4	2.9	8.6	● (T) 세부업종별로 다르나 보통수준, 가족분야 수혜 - 플라스틱·고무 보통수준, 가족 고수준 개방 ● (N) 업종 성격상 유리 전망 ● (V) 한-중간 분업 활성화 및 재구성 전망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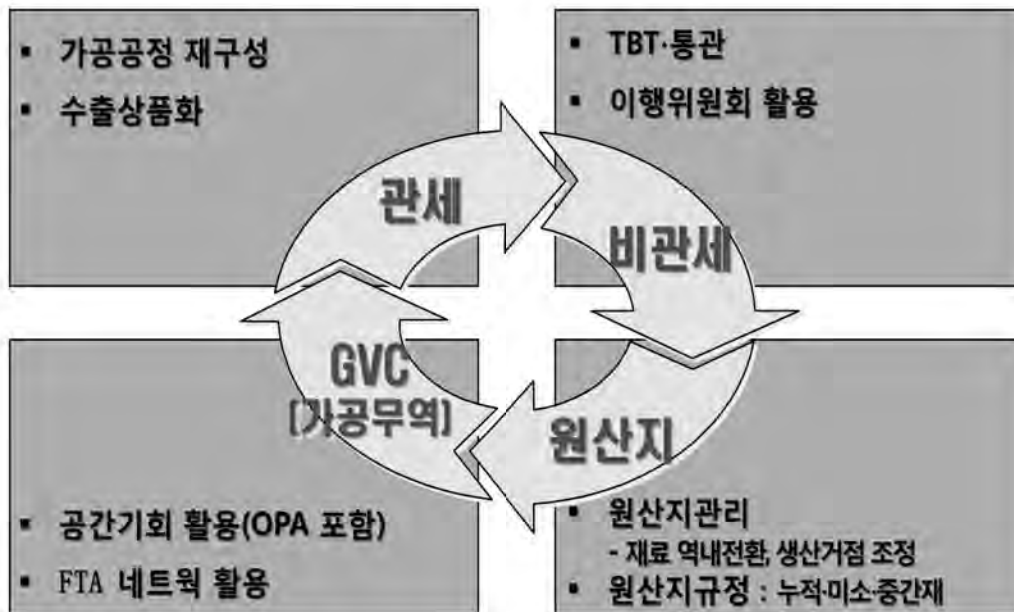
한중 FTA 업종별 영향 전망(잠정) - 4

업 종		수출 비중 ('14)	수입 비중 ('14)	무역 수지 (억\$)	FTA 효과 (관세철폐(T), NTB 완화(N), VC 활성화(V))	
농식품		0.6	2.5	-14.0	● (T) 한국 고수준 보호, 중국 보통수준 개방 → 다소 수혜 ● (N) 업종 성격상 유리 ● (V) 한-중간 분업 활성화 및 재구성 촉진	
소비재	내 구	0.7	2.0	-8.5	<공통> ● (T) 중국측 고수준 개방(상당수 10년 철폐) ● (N) 업종 성격상 큰 폭 수혜 ● (V) 한-중간 분업 활성화 및 재구성 촉진	● 철폐예외 및 부분개방 품목 : 의자부분품, 세탁기, 종이·판지, 건반악기, 귀금속제품, 기타 가전제품 ● 나머지 0, 5, 10년 철폐
	반내구	0.8	8.6	-66.0		● 철폐예외품목 : 기타가죽제품 ● 나머지 대부분 10년 철폐
	비내구	1.3	1.6	3.8		● 하기 제품 이외 모두 5년, 10년 철폐 ● 철폐예외품목 : 화장품, 종이제 위생 병원용품, 기타비누 ● 부분감축(PR) : 기타화장품, 샴푸, 기타 두발용품, 기타 소매용 계면활성제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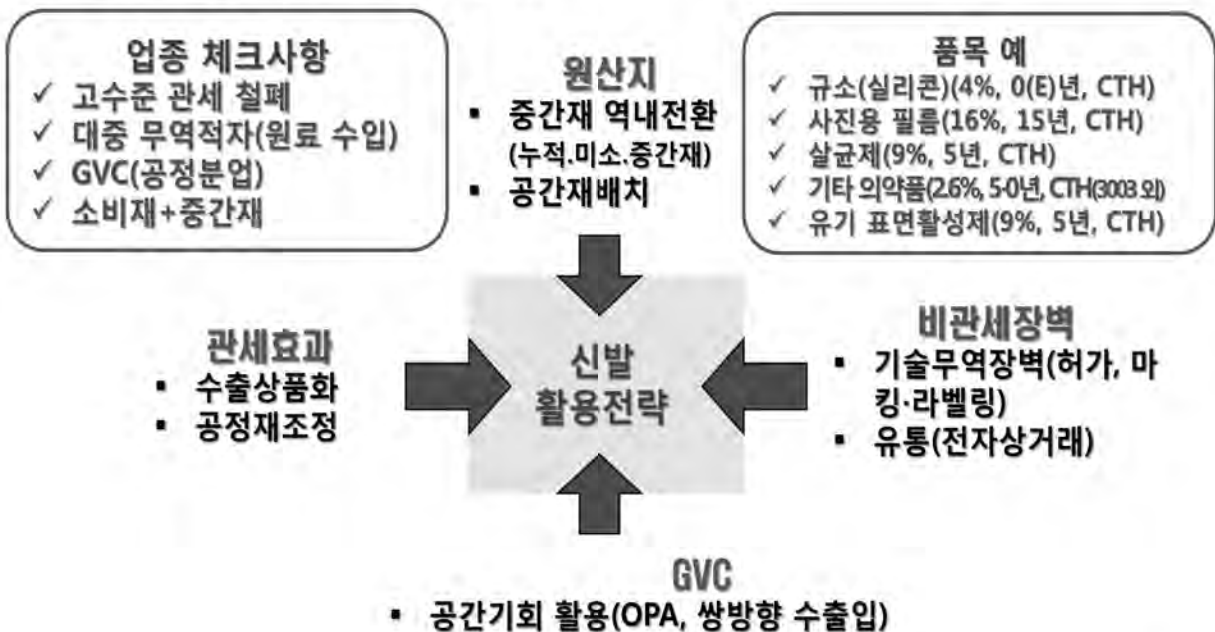


[참고] 한중 FTA 활용 전략 개념도 : 분야 - 수단



15

업종별 활용전략 :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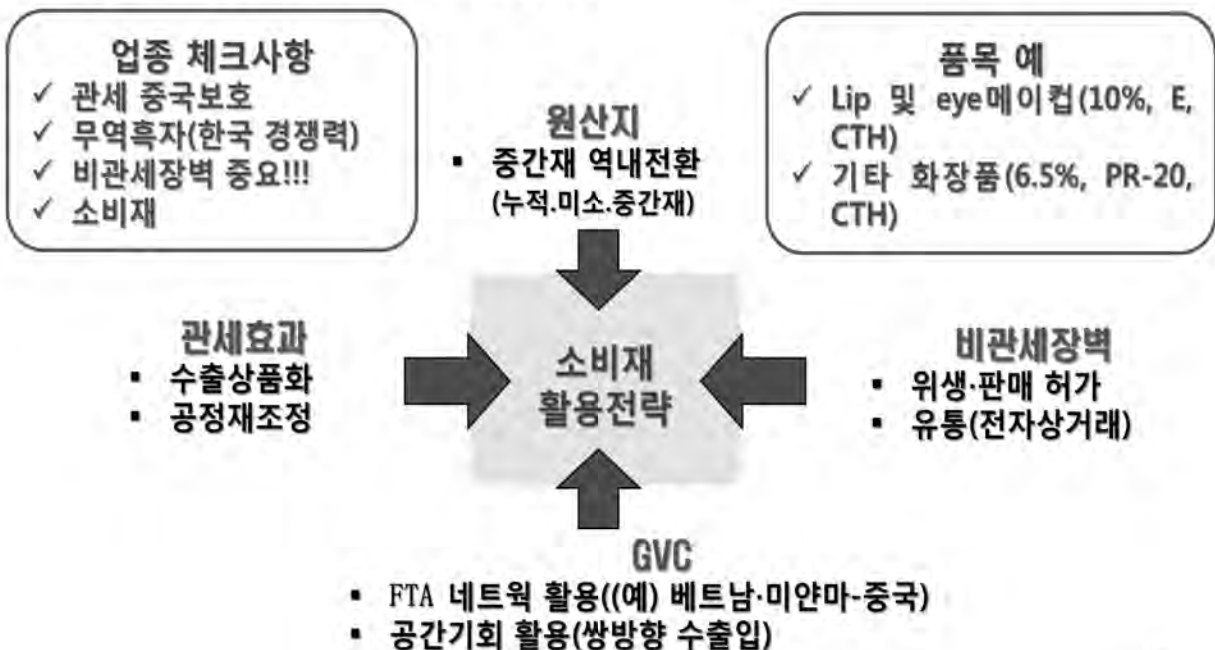


16

화학 수출입 및 협상 결과 : 한국 고수준 개방, 중국 다소 고수준 개방

순위	HS	BEC	품목명	무역현황				한국개방		중국개방	
				수출액 (14년)	수출증가율 (11-14)	수출비중 (14년)	무역수지	한국관세	협상결과	중국관세	협상결과
1	280461	22	규소 (규소함량이 99.99%이상인것)	663,359	#NUM!	0.46	648,433	3	0	3.7	E,15
2	330499	63	기타 화장품	494,355	22.7	0.34	488,527	8	10	6	PR-20
3	382490	22	기타 조제접착제	474,817	16.0	0.33	220,740	6	15	5.6	5,10,15
4	292610	22	아크릴로니트릴	337,599	14.5	0.23	337,599	6.5	0	3	E
5	320730	22	액체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311,392	19.7	0.21	308,206	6.5	0	5	5
6	370790	22	기타 사진,영화재료	212,342	18.1	0.15	197,842	3.3	0	10.7	10,15
7	320890	22	기타 페인트,바니쉬	149,670	7.0	0.10	137,770	6.9	0	8	10,20
8	284190	22	기타	131,212	17.3	0.09	-135,902	5.5	0.5,10	3.8	10
9	381800	22	전자공업용 도프처리(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상)	119,801	#NUM!	0.08	-207,059	0	0	0	0
10	292910	22	이소시아네이트	102,109	6.1	0.07	83,902	6.5	0.5	6.5	5,15,E
11	370590	22	기타 사진용 판,필름	98,807	14.8	0.07	96,208	0.3	0	5.5	0,10
12	350691	22	고무,프라스틱 기재로 한 접착제	79,165	11.1	0.05	63,841	6.5	0	7	10,15,20
13	290110	22	포화비환식탄화수소	57,179	13.2	0.04	53,726	0	0	2	0
14	320820	22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54,338	10.2	0.04	48,169	6.9	0	8	10,20
15	380991	22	섬유공업용 완성가공제·염색캐리어·드레싱·매염제등	53,125	12.4	0.04	45,763	6.5	0	6	5,10
16	380892	63	살균제	50,004	12.9	0.03	43,933	4.3	0,10	6.6	5
17	380891	63	살충제	48,744	13.3	0.03	42,591	3.3	10,15	4.6	5,10
18	350610	63	글루(glue)나 접착제 적합 물질(소매용)	47,034	#NUM!	0.03	40,030	6.5	0	9.2	5
19	280300	22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 포함)	42,765	#NUM!	0.03	-12,670	5.5	0.5	4.4	15
20	320650	22	무기의 루미노퍼	39,043	11.3	0.03	36,385	6.5	0	5.9	10
21	340420	22	폴리에틸렌글리콜왁스	37,640	11.1	0.03	37,561	6.5	0	10	E
22	300210	22	면역활성, 기타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질	37,630	12.7	0.03	37,322	0	0	0	0
23	294190	22	기타 활성제	34,572	#NUM!	0.02	-26,168	5.3	0,10	4.6	0,5,10
24	381400	22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	33,780	#NUM!	0.02	29,357	6.5	0	9	20
25	330510	63	상투	30,452	11.3	0.02	28,465	8	5	5.4	PR-35
26	300490	63	기타 의약품	29,465	9.8	0.02	-26,466	5.4	0,10	2.6	5,0
27	300420	63	그 밖의 활성물질을 함유한 것	28,897	6.9	0.02	27,851	4.7	0	4.8	5,10
28	282110	22	산화철과 수산화철	23,721	4.4	0.02	12,545	5.5	0	5.5	15
29	340319	322	기타 광택제	23,213	9.7	0.02	21,839	6.5	0	8	5
30	340290	22	기타 유기 표면활성제	22,962	6.7	0.02	6,613	6.5	0	7.4	5

업종별 활용전략 : 화장품



화장품 : 수출입 및 협상 결과(중국측 양허)

- 중국, 완제품 철폐제외, 원료 10, 15년 철폐, 원산지 세번변경 4단위(일부 추가 제한)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관세율	FTA 관세철폐	원산지기준
1	33011200	Essential oils of orange	0.0	0.0	3.0	284.0	-3.0	20.0	15	CTH
2	33011300	Essential oils of lemon	620.0	0.0	1.0	0.0	619.0	20.0	15	CTH
3	33011990	Essential oils of citrus fruit, nes	19.0	0.0	10.0	-17.1	9.0	20.0	15	CTH
4	33012400	Essential oils of peppermint	0.0	0.0	1.0	0.0	-1.0	20.0	15	CTH
5	33012500	Essential oils of mints, nes	169.0	39.7	0.0	0.0	169.0	15.0	10	CTH
6	33012920	Essential oils of citronella	314.0	3,167.3	0.0	0.0	314.0	15.0	10	CTH
7	33012930	Essential oils of aniseed	433.0	0.0	0.0	0.0	433.0	20.0	15	CTH
8	33012950	Essential oils of litsea cubeba	3.0	0.0	0.0	0.0	3.0	20.0	15	CTH
9	33012960	Essential oils of eucalyptus	88.0	289.6	0.0	0.0	88.0	20.0	15	CTH
10	33012999	Essential oils other than citrus fruit, nes	518.0	7.2	41.0	348.8	477.0	15.0	15	CTH
11	33013090	Other resinoids	0.0	-100.0	0.0	-100.0	0.0	20.0	15	CTH
12	33019010	Extracted oleoresins	293.0	31.1	9.0	32.3	284.0	20.0	15	CTH(121120, 130219 제외)
13	33019020	Terpenic byproducts deterpenatn of citrus fruit essential oils	0.0	-100.0	0.0	-100.0	0.0	20.0	15	CTH(121120, 130219 제외)
14	33019090	Concentrants in fats, etc., terpenic by products distillates, of essential oils	46.0	130.1	5.0	-89.0	41.0	20.0	15	CTH(121120, 130219 제외)
15	33021010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for drink industries, alcohol v. <0.5%	131.0	-33.9	543.0	23.8	-412.0	15.0	10	CTH
16	33021090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for food or drink industries, nes	13,599.0	41.2	4,064.0	20.0	9,535.0	15.0	10	CTH
17	33029000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as raw materials in industry, nes	4,800.0	-23.2	3,402.0	54.4	1,398.0	10.0	10	CTH
18	33030000	Perfumes & toilet waters	6.0	444.5	13.0	-82.6	-7.0	10.0	E	CTH
19	33041000	Lip make-up prep.	2,035.0	41.1	3,081.0	25.7	-1,046.0	10.0	E	CTH
20	33042000	Eye make-up prep.	2,435.0	2.4	3,728.0	39.6	-1,293.0	10.0	E	CTH
21	33043000	Manicure or pedicure prep.	0.0	-100.0	284.0	8.3	-284.0	15.0	E	CTH
22	33049100	Powders, whether or not compressed, for cosmetic/toilet use	253.0	-36.5	3,189.0	20.7	-2,936.0	10.0	E	CTH
23	33049900	Beauty, make-up, skin-care (incl. suntan), nes	6,327.0	-19.3	204,644.0	63.9	-198,317.0	6.5	PR-20	CTH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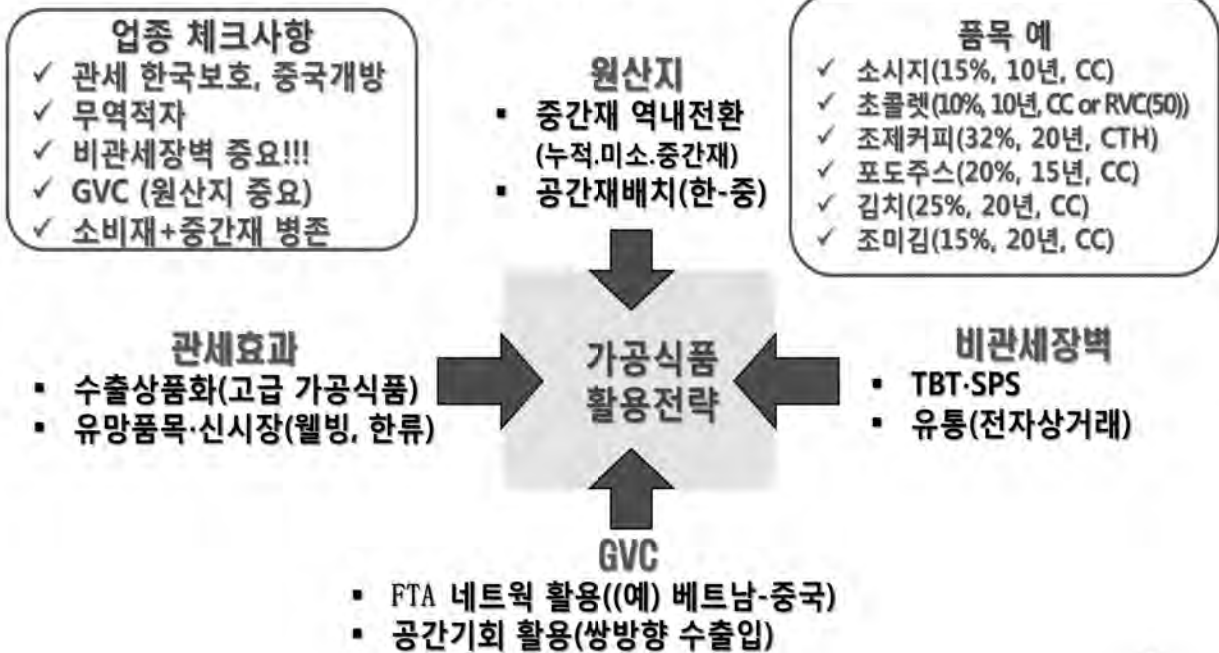
[참고] 한중 FTA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챕터內 표시 및 라벨링 규정

제6.11조 표시 및 라벨링

- 이 조의 목적상,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따라, 기술규정은 표시 또는 라벨링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
-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2조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포함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상, 그러한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아니하다.
- 당사국이 상품의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나.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라벨 또는 표시의 형식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관련 국내 규정에 비추어 라벨 또는 표시에 제공될 특정 정보의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다. 그 당사국은,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 고유한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그러한 번호를 발행한다.
 - 라. 그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국제상품분류체계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러한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 언어의 동시 사용은 다음이 만족되는 경우 금지되지 아니한다.
 - 1) 다른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 또는
 - 2)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상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 마. 그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정당한 목적이 이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20

업종별 활용전략 : 가공식품



21

가공식품

● 협상결과 : 한국 보호, 중국 장기 철폐 → 국내 산업 보호하면서 중국진출 일부 진출 발판 마련

	HS	품목명	무역현황				한국양허		중국양허	
			수출액 ('14년)	수출증가율 ('13-14)	수출비중 ('14년)	무역수지	한국관세	협상결과	중국관세	협상결과
1	170199	기타 · 사탕수수당, 사탕무무당, 화학적순수자당	104,793	#NUM!	0.07	104,792	40	E	50	E
2	190590	기타	89,067	13.6	0.06	53,588	5.2	5, 10, 15	17.1	20
3	190110	유아용 조제 · 식료품(소매용)	77,679	14.2	0.05	77,284	23	E, 5	10	E
4	210690	기타	68,399	12.6	0.05	41,077	83.7	E, 5, 10, 15, 20, PR-10	14.9	0.10, 15, 20, PR-8
5	220290	기타	54,215	11.1	0.04	51,659	8.3	5, 10, 20	29.5	20
6	190230	그 밖의 파스타	40,177	6.9	0.03	39,472	8	5	14.1	10, 15, 20
7	210111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33,068	9.6	0.02	31,668	8	20, 5	17	15
8	210390	기타	30,296	#NUM!	0.02	-53,873	8	E, 10, 20, PR-1	19.2	20
9	200830	감귤류 과실	24,165	8.2	0.02	22,091	45	E	20	15, 20
10	210112	조제식료품	19,319	#NUM!	0.01	18,883	8	15, 20	30	20
11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17,200	9.9	0.01	11,281	20	15, 20	9.9	E, 10
12	170490	기타	15,388	6.3	0.01	-13,479	8	5, 10	8.2	20
13	220300	맥주	14,121	8.5	0.01	5,004	30	20	0	0
14	30331	냉동냉치 (간장과 어란제외)	11,537	7.3	0.01	11,497	10	5	5.9	10
15	190531	스위트 비스킷	10,738	9.2	0.01	7,396	4	10	12.4	15
16	220890	기타	9,548	7.1	0.01	3,934	26	10, 20	8.8	10, 20
17	2105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	8,710	7.4	0.01	8,710	8	15	19	E
18	170290	기타	8,095	7.2	0.01	-28,991	66.8	E, PR-10	30	E
19	30339	기타 냉치류 (냉동한것, 간장과 어란제외)	6,471	#NUM!	0.00	-163	10	E	8	10
20	200899	기타	5,525	6.0	0.00	-20,286	45	E, 15, 20, 20-A	16.9	10, 15, 20
21	220210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가미 음료수	5,278	6.2	0.00	4,928	8	5	20	20
22	200990	혼합 주스	5,131	7.1	0.00	5,125	42.3	E	18.7	15
23	180620	그 밖의 조제 식료품(2킬로 초과)	4,823	6.2	0.00	4,272	8	5	7.7	10
24	190220	숙을 채운 파스타	4,367	6.7	0.00	-60	8	10	15	15
25	160414	다랑어 · 가다랑어 · 버니토(bonito)	4,265	#NUM!	0.00	3,744	20	15, 20	5	0
26	190190	기타	4,039	5.0	0.00	-117	15.3	20, E, 15, C-Out*	5	15
27	2206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 배술 · 마드(mead))	3,851	5.1	0.00	3,821	15	5, 10, 15	40	20
28	30342	냉동완다랭이 (간장과 어란제외)	3,664	4.5	0.00	1,607	10	20	9	10
29	1904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 팥이나 붉은 조제 식료품	3,541	4.6	0.00	1,369	5.4	10	25	20
30	160100	소시지류	3,507	6.4	0.00	3,494	24	E, 15	15	10

[참고] 김치는 어떻게 되나?

- 협상결과 : (중국) 25% 관세, 20년 철폐, 세번변경 2단위
(한국) 20% 관세, 발효즉시 既관세의 1% 철폐(PR-1)
- ✓ 비관세장벽 : 관건은 중국의 위생검역 규정(저장채소류(HS2005) 품목 대장균수 제한)

- 그러나 조만간 통 규정 수정 가능성 높음
- 한중 정상간 김치수입규제 개선 약속('14.7)
- '15. 3월 중국의 김치관련 위생규정 위한 의견수렴 완료
(별균형, 비별균형으로 구분해 검사 진행키로 규정)
- '15년 하반기 개정 규정 실시 예상

<한중간 김치 무역현황과 한중 FTA 협상 결과>
(기준: '14년, 천달러, 관세(%), 협상결과(했수))

순서	HS 코드	품목명	수출액	수입액	수지	관세	협상 결과	원산지
	2005	저장·조제 채소, 식초 처리·담 처리 제외						
1	200510	균질화한 채소	138	0	138	25	10	CC
2	200520	감자	253	68	185	15	10	CC
3	200540	완두	139	0	139	25	10	CC
4	200551	팥 페이스트	11,309	4	11,305	25	10	CC
5	200559	기타	0	0	0	25	10	CC
6	200560	아스파라거스	61	0	61	25	10	CC
7	200580	스위트콘	207	4	203	10	10	CC
8	200591	죽순	6,703	0	6,703	25	20	CC
9	200599	기타(김치)	276,492	683	275,809	25	20	CC

‘食品安全国家标准 酱腌菜’等24项食品安全国家标准(征求意见稿)意见的函>

중국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2015-02-11)

*의견 청취 기간(2015. 3.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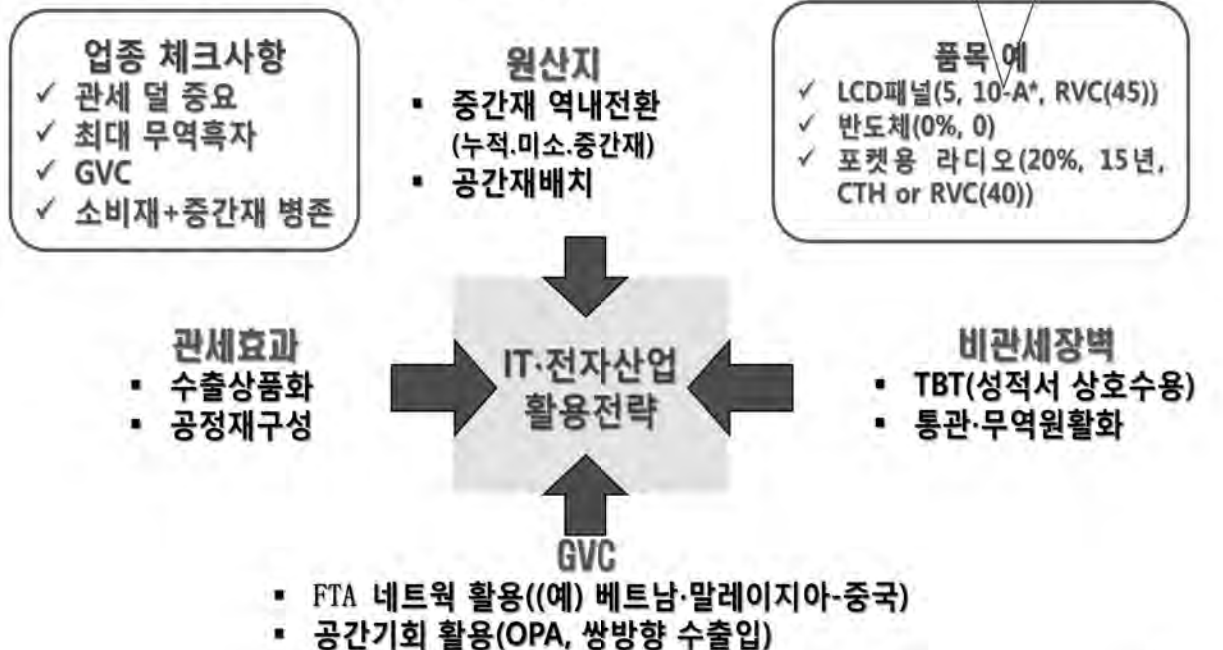
《食品安全国家标准 酱腌菜》
(征求意见稿)编制说明

微生物限量:

1.大肠菌群: 考虑到产品生产工艺的不同, 根据检测数据结果, 将发酵型酱腌菜产品分为灭菌型和非灭菌型两类进行管理。灭菌型产品的大肠菌群指标采用ICMSF 三级采样方案, 修改为: $n=5, c=2, m=10CFU/g$, $M=1000CFU/g$, 检测方法按照 GB 4789.3 平板计数法。非灭菌型产品经自然发酵而产生, 其产品原料没有经过灭菌处理。根据检测数据, 随着发酵的持续, pH值逐渐下降, 大肠菌群数量会逐步降低。经相关专家研究以及征求行业意见, 认为由于生产工艺的特殊性, 不必对这类产品的大肠菌群设定限量

23

업종별 활용전략 : IT·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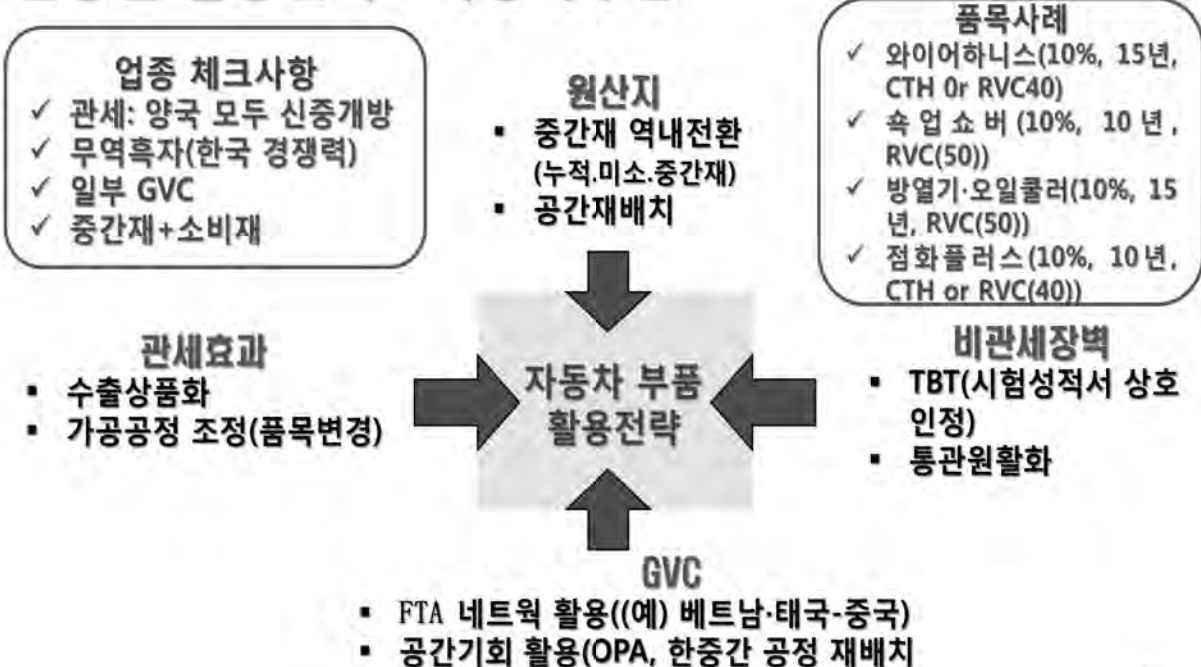
24

IT·전자

- (산업) GVC 업종, 품목마다 다르나 대체로 한국 경쟁력 우위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폰 등 상이)
→ 관세철폐 효과는 제한적, 한국기업의 Biz 환경 개선

	HS	품목명	무역현황			한국양허		중국양허	
			수출액 ('14년)	수출증가율 ('13~'14)	수출비중 (%14년)	무역 수지	한국 관세	협상 결과	중국 관세
1	901380	디스플레이	15,974,082	#NUM!	10.99	14,028,565	4.1	0.5,10,10-A	6.1
2	854232	메모리	13,816,747	50.5	9.51	10,175,133	0	0	0
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7,109,201	40.9	4.89	6,148,120	0	0	0
4	851770	핸드폰 부품	5,721,568	36.7	3.94	1,348,620	0.7	0.5	1
5	853190	시청각,신호기기 부품	4,222,516	41.3	2.91	4,165,993	5.3	0.10	0
6	854370	기타 독립기능 전자기기	2,430,005	30.9	1.67	1,397,916	6.7	0.5,15	1.1
7	853400	인쇄회로	2,249,052	27.0	1.55	909,608	0	0	0
8	853890	기타	1,946,399	33.2	1.34	1,624,536	5.8	10	7
9	847170	기억장치	1,809,854	31.1	1.25	1,308,529	0	0	0
10	852990	수신기,컴퓨터용 부품	1,757,099	24.4	1.21	1,516,895	5	0.10	2.6
11	854140	광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1,620,726	#NUM!	1.12	186,204	0	0	0
12	854239	집적회로	1,006,017	23.2	0.69	216,315	0	0	0
13	854190	집적회로 및 전자 결정소자 부품	459,833	16.8	0.32	438,845	0	0	0
14	853669	전기물류,소켓(1,000볼트 이하)	439,038	16.3	0.30	-100,976	0	0.15	0
15	853690	기타 스위치,보호기(1,000볼트 이하)	325,507	19.3	0.22	188,720	1.3	0.15	0
16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301,087	#NUM!	0.21	128,016	8	15,20	3.2
17	901390	디스플레이 부품,부품	294,397	18.6	0.20	243,773	-4	0.10	7.3
18	854390	기타 전기기기 부품	290,057	6.7	0.20	180,951	2	15	0
19	853224	세라믹유전체 고정식축전기(다층)	286,575	#NUM!	0.20	117,711	0	0	0
20	851890	스피커,헤드폰 부품	222,719	10.6	0.15	180,272	4	0	5.3
21	852851	컴퓨터용 모니터	212,827	#NUM!	0.15	-615,481	0	0	0
22	852351	고체 기억장치	206,127	#NUM!	0.14	123,405	2.7	0.10	0
23	853120	LCD나 LED 결합 표시판	177,837	#NUM!	0.12	-626,493	0	0	0
24	854129	기타 트랜지스터(광광성 제외)	162,644	16.8	0.11	34,276	0	0	0
25	854121	트랜지스터(광광성 제외)	140,431	#NUM!	0.10	43,227	0	0	0
26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107,180	10.1	0.07	76,037	8	0.10	2
27	854110	다이오드(광광성,발광 제외)	104,100	7.7	0.07	-153,288	0	0	0
28	854290	부품	83,796	8.1	0.06	61,242	0	0	0
29	852721	라디오 수신기(자동차용)	76,823	#NUM!	0.05	-48,181	8	0.15	8
30	854150	기타 반도체 디바이스	67,528	10.3	0.05	51,259	0	0	0

업종별 활용전략 : 자동차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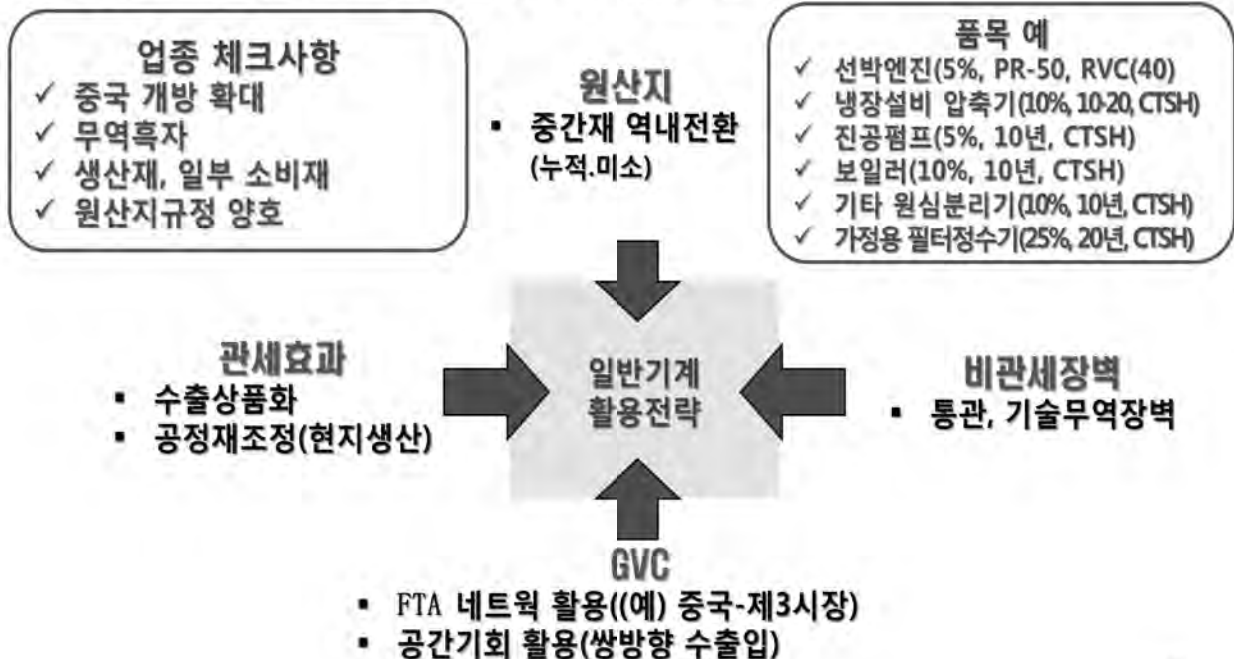
자동차부품

- (무역) 대중 무역흑자, 중국 고관세(10%), 양국간 분업(VC) 형성
→ 협상결과 : 중국 신중한 개방, NTB 완화

			무역현황			한국당허		중국당허		
			수출액 ('14년)	수출증가율 ('13-'14)	수출비중 ('14년)	무역수지	한국관세	협상결과	중국관세	협상결과
1	870899	기타 자동차부품	2,685,564	#NUM!	1.85	2,434,887	0	10,15	13.3	10,15,20
2	870840	기어박스	1,438,470	32.2	0.99	1,354,859	0	15	8.3	E,PR-20
3	870829	자동차용 차체 부분품,부속품	963,895	21.8	0.66	837,534	0	10	9	15,20,PR-10
4	840991	가솔린엔진 부품	629,990	22.3	0.43	569,694	8	5,10	3.6	10,15,PR-35
5	840999	디젤엔진 부품	193,941	#NUM!	0.13	117,797	3.8	0.5,10,15	4.1	0,10,15
6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173,184	14.4	0.12	60,764	0	10,15	8.1	10,15,20,PR-10
7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자동차용)	105,234	14.1	0.07	53,347	0	15	8.9	E,15,20
8	870850	자동차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69,372	9.9	0.05	14,926	0	15	8.8	E,15,20,PR-10
9	870894	현들,운전대 및 운전석박스	55,664	10.9	0.04	-50,322	0	PR-30	8.6	E,15
10	870880	소크 업소오버	52,407	11.6	0.04	12,187	0	15	9	10
11	870895	에어백과 그 부분품	33,269	9.4	0.02	-116,807	0	15	9	PR-10
12	870892	소음기와 배기관 (자동차용)	32,986	6.1	0.02	18,794	0	15	10	E
13	870870	로드 휠일 및 그 부분품,부속품	16,520	7.7	0.01	-51,822	0	20	9	E,10,15
14	870821	안전벨트	4,476	7.0	0.00	4,230	0	10	10	15
15	840820	제87류 차량용 디젤엔진	3,149	6.0	0.00	-17,557	8	5,15	10.3	15,20
16	870810	자동차용 범퍼와 그 부분품	1,025	#NUM!	0.00	-19,013	0	20	9.6	20
17	870891	방열기 (자동차용)	850	#NUM!	0.00	-5,814	0	20	10	15
18	870790	트랙터,버스,트럭,특수차용 차체	362	3.4	0.00	353	8	10	9	15
19	870710	승용차와 기타 차량용 차체	74	#NUM!	0.00	16	8	10	10	15

27

업종별 활용전략 : 일반기계(엔진, 공조기, 펌프, 가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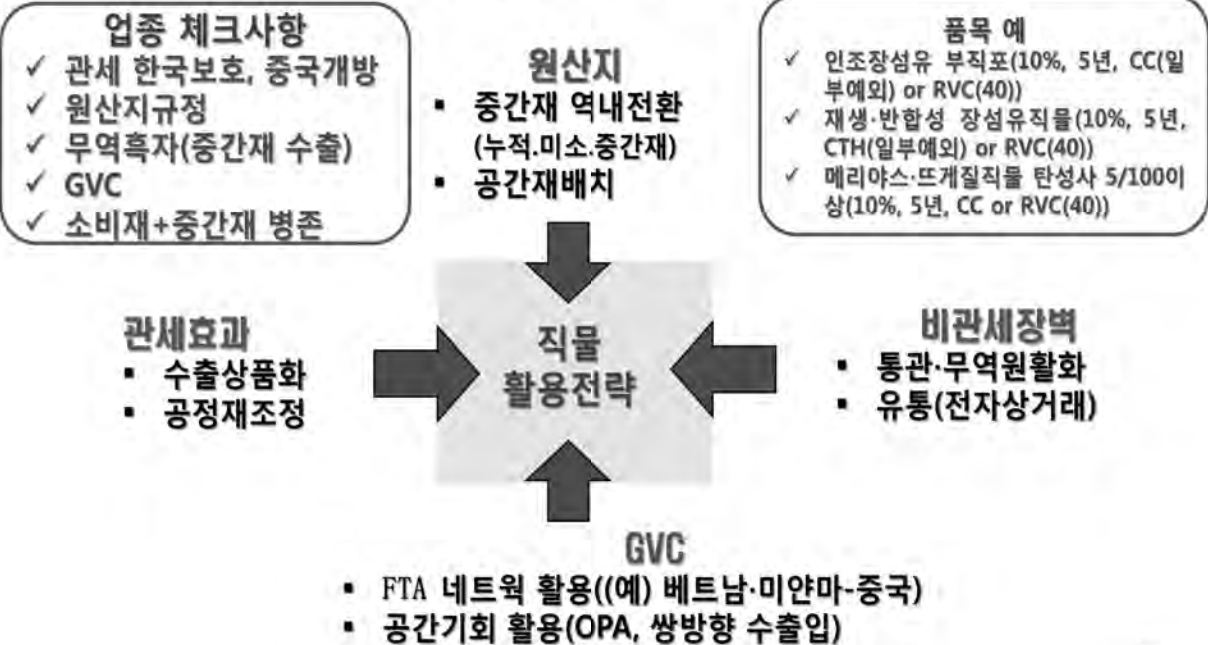
28

일반기계 무역현황 및 양허내용 : 대중흑자, 양국 개방 확대

HS	품목명	무역현황				한국양허		중국양허	
		수출액('21년)	수출증가율 (11~14)	수출비중 (14년)	무역수지	한국관세	협상결과	중국관세	협상결과
1 840810	선박추진용 엔진	597,427	#NUM!	0.41	597,312	8	0.5	5	PR-50
2 84143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204,820	15.9	0.14	-22,837	6.4	0.10	6.3	5.10,15,20
3 841590	공기조절기의 부품품	180,257	12.1	0.12	80,097	4	0	6	10
4 842139	기타 원심분리(건조·정제)기	146,462	17.0	0.10	127,173	6.2	0.10,15	3.9	PR-35,0.5,10,15
5 841490	공기 혹은 진공 펌프 부품품	133,389	13.9	0.09	25,530	6.4	10	4.8	0.5,10
6 84181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 구비)	113,834	15.0	0.08	100,363	8	10,15	13.3	10,20,E
7 841410	진공펌프	100,925	11.6	0.07	93,767	6.3	0.10	5	10
8 841989	기타 가열형 기계	89,740	#NUM!	0.06	34,192	8	0.5	0	0
9 841899	기타 냉동·냉장기	73,808	12.5	0.05	47,001	8	0	6	5.10
10 841391	액체 펌프 부품	72,221	#NUM!	0.05	19,924	6.2	0.5,10	2.5	0
11 842199	기타 원심분리기	66,922	11.2	0.05	14,669	6.4	0.10	5.3	0.10
12 842121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원심분리기	66,222	13.9	0.05	56,084	6.8	0.5,10	4.2	15,20
13 841950	열교환기	58,673	7.3	0.04	42,861	8	0.15	9.5	5
14 840890	그 밖의 엔진	56,913	#NUM!	0.04	43,324	5.9	0.10,15	5.5	5.15
15 841480	기타 공기·진공펌프	44,354	#NUM!	0.03	-19,644	8	5.10,15	4.9	0.5,10,15
16 841229	기타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42,890	#NUM!	0.03	40,694	8	10	10.3	15,20
17 841330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	39,986	10.1	0.03	28,022	4	10,15	2.8	5
18 841459	기타 공기·진공 펌프용 팬	33,745	7.8	0.02	-70,624	8	15,E	7.4	5
19 840734	가솔린엔진 1,000시시 초과	33,280	#NUM!	0.02	19,473	8	0.10	7	20
20 84122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엔진	31,710	#NUM!	0.02	18,895	8	10	12	20
21 842129	기타 원심분리형 여과·청정기 부품	24,757	9.6	0.02	13,904	6.4	0.10,15	3.5	0.10
22 841990	가열형 기계 부품품	21,484	6.9	0.01	-2,146	6.7	0	2	0
23 841290	기타 엔진 부품품	21,186	8.8	0.01	6,347	4.5	0.5,10	3.5	0.15
24 840310	보일러	19,168	8.4	0.01	15,134	8	0.10	9.5	10
25 841350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17,819	#NUM!	0.01	7,646	7.6	0.5,10	6	10,15,20
26 841370	그 밖의 원심펌프	17,121	#NUM!	0.01	-5,102	7.1	0.5,15	7.7	5.10
27 841360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16,593	7.5	0.01	10,268	7.6	0.5,10	5.8	10,15,20
28 841939	기타 가열형 기계	15,227	#NUM!	0.01	7,137	5.5	0	4.4	5.10
29 840690	스팀터빈 부품품	13,585	#NUM!	0.01	11,393	8	0.10	2	0
30 841582	기타 공기조절기(냉장유니트 결합한 것	12,069	#NUM!	0.01	1,987	8	0	13	E

29

업종별 활용전략 : 섬유(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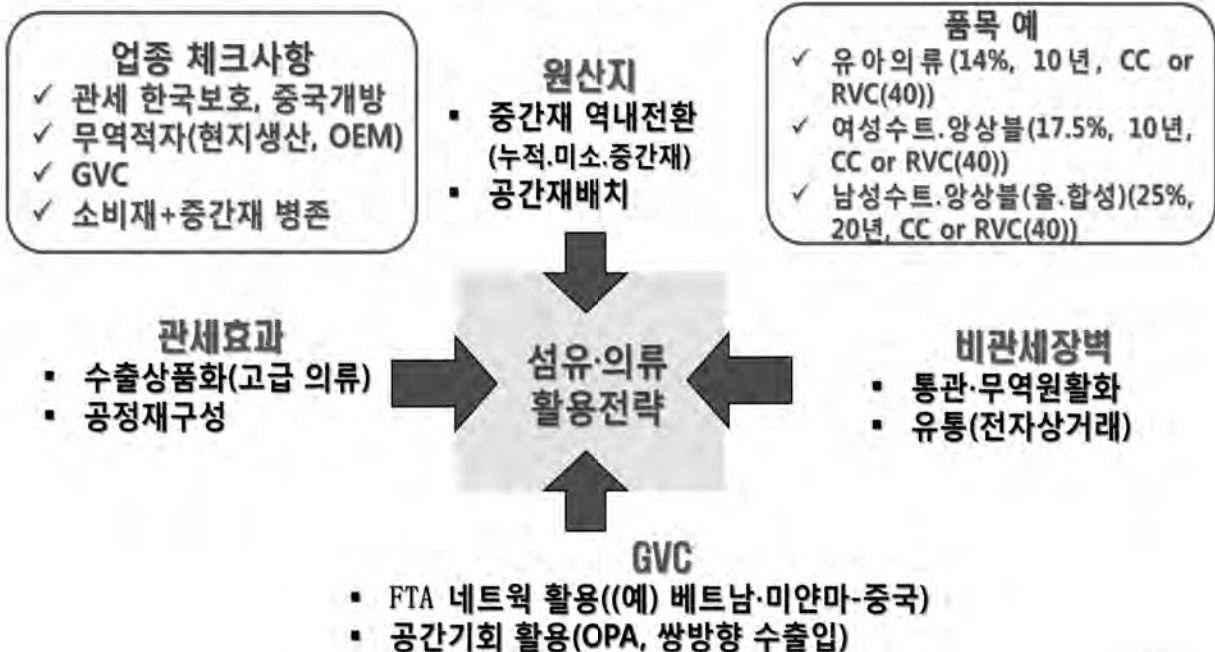
30

섬유(섬유사, 직물)

- 협상결과 → 고수준 보호, 중국 고수준 개방
- (산업) 한국 기술 우위, 단 중국 추격 신속하며 대규모

	HS	품목명	무역동향			한국압력		중국압력	
			수출액 ('14년)	수출증가율 ('11~'14)	수출비중 ('14년)	무역수지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1	600410	원사(탄성사 함유중량 100분의 5 이상)	159,382	#NUM!	0.11	151,552	10	15	8.8
2	590320	폴리우레탄을 침투도포복합한 방직용 섬유직물류	142,570	#NUM!	0.10	93,831	5	15	8.5
3	540761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함유량 5/100 85 이상인 것	125,769	#NUM!	0.09	51,901	8	E,5	9.5
4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118,105	11.0	0.08	113,319	8	10,15	4.5
5	600632	염색한 것	115,054	#NUM!	0.08	105,578	10	E	8.5
6	600532	염색한 것	71,463	6.4	0.05	64,563	10	E	8.5
7	551219	기타	54,742	9.2	0.04	45,326	5	0,10,15	10
8	540792	염색한 것	42,109	9.8	0.03	39,840	8	0,5,10	10
9	540769	기타	36,973	#NUM!	0.03	26,690	8	E,5	9.5
10	520523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 이상인 것	36,474	8.6	0.03	6,652	8	E	3.5
11	540742	염색한 직물 (감색사가 전중량의 85%이상인 것)	35,106	#NUM!	0.02	33,308	8	E	9.5
12	540752	염색직물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장섬유 85%이상)	34,419	#NUM!	0.02	26,548	8	E	9.5
13	560394	1필방단 중량 150그램초과(인조필라멘트 부직포)	33,314	#NUM!	0.02	15,422	8	10	8.5
14	540245	기타(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의 것)	30,055	#NUM!	0.02	19,896	4	E,15	4.7
15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9,395	#NUM!	0.02	-26,474	8	10,E	4.7
16	5503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9,372	#NUM!	0.02	29,050	8	0,5	4.5
17	590390	기타 폴라스틱을 침투도포복합한 방직용 섬유직물류	28,182	#NUM!	0.02	-3,858	10	15	8.5
18	550390	기타 합성단섬유 (방직준비처리 제외)	26,697	11.0	0.02	25,576	8	0	5
19	56031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	26,022	#NUM!	0.02	22,020	8	10	7.8
20	570320	폴리아미드제의 양탄자와 바닥 깔개 (더루트한 것)	25,263	5.3	0.02	3,662	10	15	10
21	600192	인조섬유제의 기타 편직편물	24,666	#NUM!	0.02	14,574	5	15	8.5
22	540772	염색한 것	24,291	#NUM!	0.02	23,423	8	0,10	9.5
23	590220	폴리에스테르제 감색사의 타이여코오드직물	23,067	#NUM!	0.02	17,714	8	15	9
24	600622	염색한 것	22,536	#NUM!	0.02	20,621	10	15	8.5
25	590700	기타 침투·도포·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류	22,369	8.6	0.02	20,515	8	0,5	8.5
26	560312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19,264	6.9	0.01	5,857	8	E,10	9.3
27	52052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 이상	18,199	7.4	0.01	7,126	8	E	3.5
28	540211	아라미드의 것	17,920	#NUM!	0.01	17,583	4	15	5
29	560311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17,643	8.9	0.01	10,190	8	10	8.5
30	540220	폴리에스테르장섬유 감색사(재용사·소매용사 제외)	17,412	#NUM!	0.01	-36,306	4	PR-30	5

업종별 활용전략 : 섬유(의류)



섬유(의류)

- 협상결과 : 한국 고수준 보호, 중국 고수준 개방

HS	품목명	무역통량			한국양허		중국양허		
		수출액 (14년)	수출증가율 (11~14)	수출비중 (14년)	무역수지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621710	기타의제품으로부터 의류부속품 (직물제)	44,848	#NUM!	0.03	36,651	13	15	12.2	10
621790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직물제)	37,536	4.9	0.03	36,245	13	0	12.6	15
610910	면으로 만든 것	21,297	9.4	0.01	-146,759	13	10,15	9.4	5
620433	합성섬유제의 여자용 자켓 (직물제)	17,822	8.7	0.01	-48,571	6.5	E	12.3	15
620690	합성섬유제 여자용 브라우스,셔츠(직물제)	13,662	9.7	0.01	7,850	0	10	11.7	10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428	7.1	0.01	-122,924	12.7	10,15,20	9.3	10
6201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206	8.3	0.01	-106,060	13	E,10	12.3	10
620443	합성섬유제의 여자용 드레스 (직물제)	11,458	7.0	0.01	-44,992	8.1	E	12.3	15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9,004	6.0	0.01	-124,072	13	E,10	10.9	15
620463	합성섬유제의 여자용 바지 (직물제)	8,646	5.3	0.01	-95,252	6.5	PR-11	12.3	10
620211	양모,섬수모제 여자용 오버코트,카코트,,클룩 (직물제)	7,465	1.2	0.01	-35,977	6.5	10	11.7	10
620462	면으로 만든 것	7,423	#NUM!	0.01	-208,828	7.8	PR-10	14.4	5
62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65	#NUM!	0.00	-147,742	6.5	5,PR-10	12.3	10
6204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860	7.5	0.00	3,283	6.5	E,10	9.3	10
620342	면으로 만든 것	5,580	6.3	0.00	-134,072	13	E	12.9	10
62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458	6.6	0.00	-10,291	6.5	PR-10,10	12	10
620331	양모,섬수모제의 남자용 자켓,블레이저 (직물제)	5,283	#NUM!	0.00	-16,866	13	E	11.7	10
611011	양모의 것	4,475	#NUM!	0.00	-57,649	6.5	20	9.3	5
6105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4,408	6.7	0.00	-9,185	6.5	10,15	12.3	10
620311	양모,섬수모제의 남자용 슈트 (직물제)	4,162	#NUM!	0.00	-9,701	13	E	12.3	10
6204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156	6.3	0.00	-3,852	8.1	10	11.7	10
610610	면제 여자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브라우스(편직,크로세)	4,018	5.9	0.00	-5,242	6.5	E	13.6	10
620341	양모,섬수모제의 남자용 바지 (직물제)	3,961	#NUM!	0.00	-9,234	9.1	E	11.7	10
6211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3,779	#NUM!	0.00	-41,675	11.1	10	12.3	10
610432	면제의 여자용 자켓 (편직,크로세)	3,767	5.2	0.00	2,928	13	15	13.6	10
6202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3,750	#NUM!	0.00	-104,481	6.5	10,PR-10	13.6	10
620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494	4.4	0.00	-7,735	6.5	10	11.7	10
620333	합성섬유제의 남자용 자켓,블레이저 (직물제)	3,407	#NUM!	0.00	-56,374	13	E	12.3	5,10
6206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3,280	#NUM!	0.00	-69,126	6.5	E,10	12.3	10
620442	면제의 여자용 드레스 (직물제)	3,173	4.8	0.00	-26,319	8.1	10	16	10

33

소비재 : 영향평가와 대응시사점(종합)

<영향평가>

업종/품목	관세	비관세장벽	산업·무역특성	종합
내구소비재			- 완제품 무역 - 가공무역 포함 - 韓, 브랜드디자인 경쟁력 高 - 중소기업 多	- 수출 확대 - 국내 투자 촉진
반내구소비재	완화	완화		
비내구소비재		- 후속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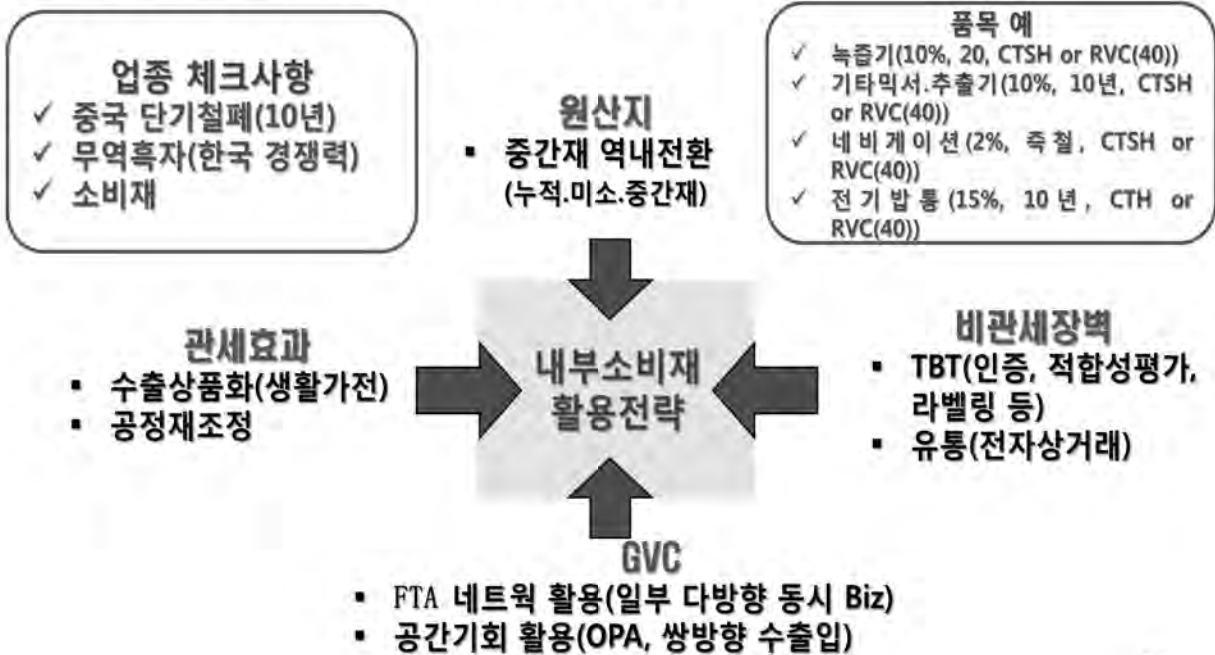
- 내구소비재(BEC61): 카페트, 보석류, 가전제품, 가구, 시계, 악기, 음향기기, 의료기기, 의자, 골동품 등
- 반내구소비재(BEC62): 주방용품, 트렁크, 가방류, 장갑, 가죽제품, 매트, 의류, 유아용품, 침구류, 커튼, 텐트, 신발류, 모자, 우산, 기념품, 컵, 식기류, 게임기, 카드, 머리장식품
- 비내구소비재(BEC63): 생화, 애완동물먹이, 담배, 의약품, 화장품, 비누, 광택제, 양초, 살충제, 고무장갑, 화장지, 신문지, 지도, 직물, 내복, 스타킹, 양말, 타이, 손수건, 면도기, 필기류, 스키, 건전지 등

<대응시사점>

Biz 유형	시 사 점
수출· 현지경영	- 브랜드·디자인 경쟁력 제고 - GVC 최적화·활성화
공 통	비관세장벽(투자, TBT) 완화

34

업종별 활용전략 : 내구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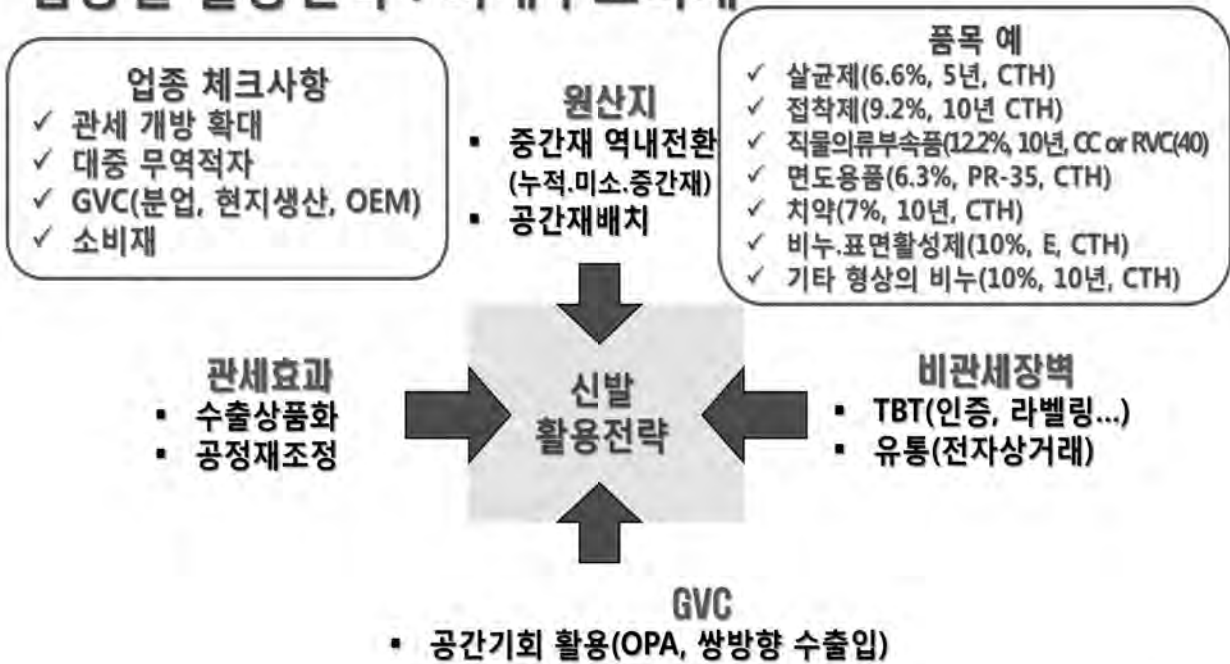
35

생활용품(내구소비재)

- 내구소비재 협상 결과 : 한국 개방 확대, 중국 개방 확대(대부분 10년 철폐)

	HS	품목명	무역통관				한국양허		중국양허	
			수출액('14년)	수출증가율('11-'14)	수출비중('14년)	무역수지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1	940190	의자 부분품	351,644	15.0	0.24	94,808	8	0	3.3	5.0
2	850940	식용용 그라인더, 믹서, 과즙, 녹즙기	147,995	18.3	0.10	96,811	8	0	6	10
3	841810	냉장고·냉동고(부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	113,834	15.0	0.08	100,363	8	10.15	13.3	20
4	852691	합형용 무선기기(네비게이션)	107,180	10.1	0.07	76,037	8	0	2	0
5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방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57,587	6.3	0.04	23,633	6.7	0.10	1.5	10
6	851660	오븐, 쿠키, 조리판, 그릴러, 로스터	26,113	10.2	0.02	-59,989	8	0	10.8	10
7	570320	올리마이드 양탄자와 바닥 깔개(더후트한 것)	25,263	5.3	0.02	3,662	10	15	10	10
8	845011	완전자동세탁기(10KG이하)	20,000	10.5	0.01	470	8	10	8.7	10, PR-35, E
9	902213	기타(지과용, 엑스선, 알파선, 베타, 감마선 기기)	18,747	9.6	0.01	18,203	8	0	4	3
10	482390	기타 종이, 판지	15,890	#NUM!	0.01	6,779	0	0	7.5	E
11	741999	기타 동제품	13,885	#NUM!	0.01	3,263	8	10	11.8	10
12	841510	냉열이나 병형(일체형이나 분리형)	5,113	5.4	0.00	-84,986	8	10.0	13.5	10
13	850811	차공청소기(출력 1,500와트 이하)	4,596	7.2	0.00	-26,769	7.2	10	8.2	10
14	920710	건반악기(아코디언 제외)	4,532	5.7	0.00	-14,681	8	10	15	E
15	902190	기타 정형외과용 기기	4,158	5.6	0.00	-2,044	0	0	2	10
16	902214	기타(내과용·외과용·수외과용)	3,294	5.1	0.00	283	8	5.0	4	5
17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	3,028	3.0	0.00	-1,348	5.6	5	23.8	E
18	851629	전기식의 기타 난방기구와 토양가열기	2,458	#NUM!	0.00	-12,286	7.2	0	10	10
19	920190	기타 악기	2,369	5.1	0.00	2,231	8	0	17.5	10
20	850980	그 밖의 기기	2,074	4.6	0.00	-64,900	8	10	21.7	E
21	570330	인조 섬유양탄자와 바닥 깔개(더후트한 것)	1,798	5.4	0.00	-2,989	10	10	10	3
22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1,624	#NUM!	0.00	-125,568	0	0	0	0
23	851679	기타	1,489	4.5	0.00	-72,862	8	0	24	E
24	841821	압출식	1,483	3.4	0.00	-6,301	8	10	9.3	10
25	902139	기타 정형외과 기기	1,169	3.9	0.00	397	0	0	4	10
26	732111	가스용, 가스와 기타연료 겸용 조리기구(철강제)	1,058	#NUM!	0.00	-2,263	8	0	15	10
27	841451	태이블·바닥·벽·창·전장용(125W 이하)	972	#NUM!	0.00	-114,131	7.6	15.0	13.1	15
28	711311	은제, 신통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893	#NUM!	0.00	-7,985	8	5	16.5	15
29	940390	기타 가구(침대·책상·화장대·장롱등) 부분품	774	#NUM!	0.00	-45,228	8	0	0	0
30	940180	그 밖의 의자	669	#NUM!	0.00	-45,437	0	0	0	0

업종별 활용전략 : 비내구소비재



37

비내구소비재 수출입 및 협상 결과 - 1

● 한국 추가 개방, 중국 대량 수입품목 비개방, 소량 품목 개방 확대

HS	품목명	수출액('14년)	무역조건		무역수지	한국입력		중국입력	
			수출증가율 ('11~'14)	수출비중 ('14년)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1	900190 기타 의자부분품	769,843	#NUM!	0.53	678,737	8	0	4.8	10.15
2	330499 기타 화장품	494,355	22.7	0.34	488,527	8	10	6	PR-20
3	380892 살균제	50,004	12.9	0.03	43,933	4.3	0	6.6	5
4	380891 살충제	48,744	13.3	0.03	42,591	3.3	15	4.6	10
5	350610 글루(glue)나 접착제	47,034	#NUM!	0.03	40,030	6.5	0	9.2	10
6	621710 기타의류제품으로된 의류부속품(직물제)	44,848	#NUM!	0.03	36,651	13	15	12.2	10
7	621790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직물제)	37,536	4.9	0.03	36,245	13	0	12.6	10
8	330510 샴푸	30,452	11.3	0.02	28,465	8	5	5.4	PR-35
9	300490 기타 의약품	29,465	9.8	0.02	26,466	5.4	0	2.6	0
10	300420 그 밖의 화장품질을 함유한 것	28,897	6.9	0.02	27,851	4.7	0	4.3	10
11	610910 면제 티셔츠,싱글릿	21,297	9.4	0.01	-146,759	13	15	9.4	5
12	330790 기타 면도용품	16,710	9.7	0.01	15,358	7.3	0	6.3	PR-35
13	340540 조제연마페이스트,연마분,기타 조제품	14,675	9.3	0.01	11,620	6.5	0	10	10
14	340111 화장용(약용 포함)	13,758	8.8	0.01	12,024	7.3	10	8.3	10
15	610990 그 밖의 발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428	7.1	0.01	-122,924	12.7	10	9.3	10
16	330590 기타 모발용품	11,215	7.1	0.01	5,406	8	5	8.5	PR-35
17	340220 소매용 조제품	11,087	#NUM!	0.01	8,043	6.5	0	8.5	PR-35.15
18	240220 꿀렌(담배 함유)	8,986	#NUM!	0.01	8,845	40	20	25	E
19	330610 치약	8,722	6.2	0.01	8,346	8	5	7	10
20	950790 기타 낚시용품	8,261	#NUM!	0.01	-9,894	5.6	10	13.9	20
21	340590 기타 모발용품	8,004	6.9	0.01	7,496	6.5	0	8.5	10
22	3401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와 조제품(소매용)	7,765	8.2	0.01	3,627	6.5	0	10	10
23	853929 기타 필라멘트 램프(자외선,적외선 램프 제외)	7,190	5.6	0.00	-2,600	5.6	10	8.9	10
24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7,117	7.9	0.00	4,397	8	10	10	E
25	821220 안전면도날	6,240	#NUM!	0.00	5,081	5.6	0	14	10
26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6,156	7.0	0.00	3,027	8	10	10	E
27	481890 펄프,지재로 만든 기타 가정,위생,병원용품	5,887	7.6	0.00	-11,418	0	0	7.5	E
28	340119 기타 비누,표면활성제	5,663	4.8	0.00	4,440	6.5	0	10	E
29	380893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4,698	#NUM!	0.00	2,948	6.5	0.15	6.4	5
30	340120 기타 형상의 비누	4,503	3.6	0.00	1,897	6.5	0	10	10

38

비내구소비재 수출입 및 협상 결과 - 2

- 한국 추가 개방, 중국 대량 수입품목 비개방, 소량 품목 개방 확대

			수출액('14년)	수출증가율 ('11-'14)	수출비중 ('14년)	무역수지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31	850650	리듬제 일자전자(외용적 300CM3이하)	4,118	#NUM!	0.00	-408	8	0	14	E
32	960350	기타 부러쉬(기계,기구,차량등의 부분품 구성)	3,889	5.7	0.00	186	8	0	14	10
33	3304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27	5.8	0.00	2,850	8	10	10	E
34	330730	함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목욕용 제품류	3,187	5.8	0.00	2,510	8	0	8.5	PR-35
35	401519	고무제의 기타 장갑	1,875	3.5	0.00	-1,974	5.6	0	18	5.10
36	490199	기타 서적(인쇄된 것)	1,788	3.7	0.00	-25,501	0	0	0	0
37	611595	면제 팬티,스타킹,양말	1,740	#NUM!	0.00	-12,263	13	15	14	10
38	611596	합성섬유제 팬티,스타킹,양말	1,730	3.9	0.00	-15,928	13	15	10.9	10
39	611790	의류,의류부속품 메리야스,뜨개질한물제 부분품	1,702	2.3	0.00	1,272	9.1	10	7	10
40	300439	기타 호르몬제	1,634	4.7	0.00	1,628	8	0	3.5	S
41	330690	기타 구강,치과용품	1,454	4.9	0.00	1,439	8	10	10	10
42	401695	그 밖의 팽창성 제품	1,225	3.6	0.00	-818	6.2	15	13.5	10
43	380899	기타 살충,살균제	1,139	2.6	0.00	-1,939	6.5	0	9	S
44	611610	프라스틱,고무 질투,도포,파퐁한 장갑(편직,크로세)	1,088	4.2	0.00	-5,333	8	15	14	10
45	621290	기타,콜렛,브레이스,서스펜더등과 부분품	1,013	#NUM!	0.00	-3,816	13	10	12.9	10
46	821290	면도기의 기타 부분품	992	4.6	0.00	217	5.6	0	12	10
47	680430	수지석	980	2.7	0.00	647	8	5	6.4	5.10
48	392620	플라스틱제 의료 및 의류부속품	931	3.2	0.00	-13,952	8	10	10	10
49	330749	기타 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	928	3.8	0.00	-14,121	8	0	10	10
50	960860	볼펜을 심(볼포인트와 잉크저장기가 있는것)	894	#NUM!	0.00	752	8	0	21	20
51	961100	날파 도장·복합용 스탬프·넘버링스탬프 류	860	#NUM!	0.00	-638	8	0	21	20
52	330430	메니큐어용과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808	#NUM!	0.00	4	8	10	10	E
53	401691	가향한 고무제의 바닥깔개와 매트	785	3.6	0.00	-2,726	5.6	15	18	10
54	481820	지제의 손수건 크린실티슈,면면용 화장지 및 타물	762	3.6	0.00	-87	0	0	7.5	E
55	620892	인조섬유제 여성 슬립,페티코트,브리프,팬티	761	#NUM!	0.00	-17,629	13	10	16	10
56	621210	브래지어	683	#NUM!	0.00	-72,267	13	10	12.9	10
57	96033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683	3.8	0.00	-5,915	8	10	18.5	20
58	340530	자동차차체용 광택제,크림,이와 유사한 조제품	676	2.1	0.00	470	6.5	0	10	10
59	6108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644	4.0	0.00	-8,047	13	10	10.9	10
60	821210	면도기	554	#NUM!	0.00	-7,978	5.6	10	12	10

39

감사합니다

문의 : KOTRA 중국사업단

상품관세·원산지 이해와 활용

▷ 최대규 관세사(신한관세법인)

한·중 FTA 원산지 이해와 활용

- 다가온 한·중 FTA 시대 -

2015. 4.27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관세사



Agenda

- I. 우리나라의 FTA 현황
- II. 한·중 FTA 양허내용
- III. 한·중 FTA 주요 협상내용
- IV.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선결 요건 및 사전 확인사항



I. 우리나라의 FTA 현황

- 1.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 2. 중국의 FTA 체결현황
- 3. 한·중 FTA 협정 향후 절차

I. 우리나라의 FTA 현황

1.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 우리나라는 현재 총 49개 국가와 11개의 협정을 발효 중에 있으며,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발효를 앞두고 있음



- 타결국가: 콜롬비아(2012.06.25), 중국(2014.11.10), 뉴질랜드(2014.11.15), 베트남(2014.12.10)

콜롬비아 2013.2.21일 정식서명, 뉴질랜드 2014.12.11 가서명, 중국 2015.2.25일 가서명, 베트남 2015.03.28 가서명

2. 중국의 FTA 체결 현황

- 중국은 현재 15개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 협정에 대해 발효 중에 있습니다.

국가명	기체결(15개 협정)		협상중(6개 협정)	검토중(6개 협정)
중국 	발효 (13개국)	태국 FTA, 홍콩 CEPA,	SACU FTA, GCC FTA,	인도 RTA, 콜롬비아 FTA,
		마카오 CEPA, ASEAN FTA,	노르웨이 FTA, 스리랑카 FTA,	FTAAP, 이스라엘 FTA,
		칠레 FTA, 파키스탄 FTA,	한중일 FTA, RCEP	상하이협력기구 FTA, 몽골 FTA
		뉴질랜드 FTA, 싱가포르 FTA,	14개 협정 체결 중 총 27개 협정	
		페루 FTA, 코스타리카 FTA,		
		대만 ECFA, 아이슬란드 FTA,		
		스위스 FTA		
	타결 (2개국)	한국 FTA, 호주 FTA		

3. 한·중 FTA 협정 향후 절차

- '2015.2.25일 가서명 이후 협정문 번역, 정식서명, 국회 비준 순으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The financial news

중국 "한중FTA 상반기 중 정식서명 가능"

호 김홍재 기자 > 입력 2015.03.06 15:11 | 수정

중국 상무부장이 지난 3일 올해 상반기에 정식 서명이 가능할 것 이라고 하여 관심 집중!!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지난 3일 "현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정식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에 한중 FTA가 발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오 부장은 이날 "한중 FTA 협정문이 영문본으로 발효된 이후 양국은 자국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중국은 번역을 마무리한 뒤 법률 심사비준 수속에 돌입해, 규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그는 "한국 측은 업계에 영문본을 발표한 동시에 한국어본 전환 작업을 진행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현재 절차에 비춰보면 협정의 정식 서명은 상반기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갖고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뒤 3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가서명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가서명이 끝난 뒤 양국은 한중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비롯해 국가 재정, 관련 산업, 고 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한 뒤 정식 서명하게 된다.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연내에 협정을 발효기로 했다. 하지만 연내 발효를 위해선 한국 정부가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 동의할 여야가 하는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전물이 예상된다.

h.kim@fnnews.com

Ⅱ. 한 · 중 FTA 양허내용

- 1. 한 · 중 FTA 상품 양허내용
- 2. 한 · 중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비교
- 3. 한 · 중 FTA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 4. FTA를 통한 우리의 관세절감액
- 5. 중국 내수시장 진출 유망 품목
- 6. 중국(바이어) 선정 대한국 수입 유망품목
- 7. 한 · 미, EU, 중국 FTA 협정별 수혜품목
- 8. 한 · 중 FTA 주요 업종별 대응 전략

Ⅱ. 한 · 중 FTA 양허내용

1. 한 · 중 FTA 상품 양허내용

- 우리나라는 6,108개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중국은 1,649개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가 이루어질 예정임

품목군		한국		중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일반 NT	즉시 철폐	6,108 (49.9%)	418.5억불 (51.8%)	1,649 (20.1%)	733.7억불 (44.0%)
	5년내	1,433 (11.7%)	31억불 (3.8%)	1,679 (20.5%)	58.3억불 (3.5%)
	10년내	2,149 (17.6%)	173.3억불 (21.5%)	2,518 (30.7%)	312.5억불 (18.7%)
	소계	9,690 (79.2%)	622.8억불 (77.1%)	5,846 (71.3%)	1,104.5억불 (66.2%)
민감 ST	15년내	1,106 (9.0%)	79.5억불 (9.8%)	1,108 (13.5%)	219.2억불 (13.1%)
	20년내	476 (3.9%)	34.1억불 (4.2%)	474 (5.8%)	93.75억불 (5.6%)
	소계	1,582 (12.9%)	113.6억불 (14.0%)	1,582 (19.3%)	312.9억불 (18.7%)
자유화율(NT+ST)		11,272 (92.2%)	736.4억불 (91.2%)	7,428 (90.7%)	1,417.4억불 (85%)
초민감품목(HST)		960 (7.8%)	71.3억불 (8.8%)	766 (9.3%)	250.1억불 (15.0%)
합계		12,232 (100%)	807.7억불 (100%)	8,194 (100%)	1,667.5억불(100%)

※ 품목수는 HS 2012기준(우리 10단위, 중국 8단위), 수입액은 '12년 對상대국 수입액 기준

2. 한·중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비교

양허단계	우리 양허				중국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	5,885	58.9%	41,526	53.8%	1,366	20.3%	73,347	44.2%
(무관세)	1,881	18.8%	33,565	43.5%	570	8.5%	64,642	38.9%
(유관세)	4,004	40.1%	7,962	10.3%	796	11.8%	8,705	5.2%
5년	1,130	11.3%	3,082	3.99%	1,600	23.8%	5,826	3.5%
10년	1,971	19.7%	15,541	20.1%	1,856	27.6%	12,374	7.5%
10A	2	0.02%	1,511	1.96%	1	0.01%	18,791	11.3%
(10년내)	8,988	89.95%	61,660	79.9%	4,823	71.7%	110,338	66.4%
15년	678	6.8%	7,848	10.2%	875	13%	21,809	13.1%
15A					1	0.01%	34	0.02%
20년	34	0.3%	2,710	3.5%	369	5.5%	9,217	5.6%
(20년내)	9,700	90.2%	72,218	93.5%	6,068	90.2%	141,398	85.1%
부분감축	52	0.5%	1,783	2.3%	128	1.9%	9,994	6%
양허제외	240	2.4%	3,220	4.2%	533	7.9%	14,739	8.9%
합계	9,992	100%	77,221	100%	6,729	100%	166,131	100%

※ 10A : 8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9년차부터 2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10년차에 무세
 ※ 15A : 10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11년차부터 5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15년차에 무세

3. 한·중 FTA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양허단계	우리 양허				중국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	223	9.96	327	9.2	283	19.3	25	4
(무관세)	102	4.6	246	6.9	121	8.3	16	2.6
(유관세)	121	5.4	80	2.3	162	11.1	9	1.4
5년	303	13.5	19	0.5	79	5.4	5	0.8
10년	176	7.9	278	7.9	661	45.1	85	13.7
(10년내)	702	31.3	621	17.5	1,023	69.8	115	18.5
15년	428	19.1	103	2.9	232	15.8	74	11.9
20년	439	19.6	612	17.3	105	7.2	158	25.4
20A	2	0.1	28	0.8				
20B	1	0.04	57	1.6				
(20년내)	1,572	70.2	1,420	40	1360	92.8	347	55.8
부분감축	35	1.6	492	13.9	1	0.1	19	3.1
현행관세+TRQ	21	0.9	569	16				
협정배제	16	0.7	77	2.2				
양허제외	596	26.6	989	27.9	104	7.1	256	41.1
합계	2,240	100	3,547	100	1,465	100	621	100

※ 20A : 10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11년차부터 10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20년차에 무세
 ※ 20B : 12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13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20년차에 무세

6. 중국 바이어(238개사) 선정 대한민국 수입 유망품목(24개 품목중 선택)

순위	업종번호	응답수* (복수응답)	비중 (%)
1	화장품	116	17.4
2	생활용품	84	12.6
3	가공식품	72	10.8
4	전 자	65	9.7
5	신선식품	47	7.0
6	잡 제 품	38	5.7
7	의류패션	34	5.1
8	의약.의료	28	4.2
9	산업기계	28	4.2
10	전 기	24	3.6
11	자동차부품	23	3.4
12	정밀기계	19	2.8
13	화 학	16	2.4
14	신선식품	15	2.2
15	기계요소	13	1.9
16	섬 유	11	1.6
17	플라스틱	8	1.2
18	선박.선박부품	7	1.0
19	고 무	6	0.9
20	석유화학	6	0.9
21	피 혁	3	0.4
22	철 강	2	0.3
23	철강제품	2	0.3
24	비철금속	1	0.1
	합 계	668	100



7. 한·미, EU, 중국 FTA 협정별 수혜품목

- 한·중 FTA 가서명에 따른 양허내용 확인 결과 철강, 석유화학, 생활가전, 건강·웰빙제품 등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 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협정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품목	비직물성 필라멘트방직사	석유제품	화장품
	산업용 장갑	승용차	의료기기
	스타킹, 양말류	자동차 부품	반도체
	메리야스 편직물	타이어	일반기계
	두꺼운 폴리원단	플라스틱 수지	음식료
	신발류	엔진 부품	소매유통
	자동차 부품 및 승용차	액체 펌프	생활가전(밥솥, 믹서)
	폴리프로필렌	원유	철강
	ABS	가방	석유화학제품
	탄소강 바트	시계	기능성 의류
	용접용 연결구	화장품	이온교환수지
	자동차용 타이어	컴퓨터	냉연강판
	폴리에틸렌 백	리튬이온배터리	엔진 부품
	PET 필름	LED조명	광학렌즈
	공작기계	CCTV카메라	유선전화기 부품
	볼 베어링	디지털도어락	영유아용품
	디지털 TV	풍력발전기용 플랜지	컬러 TV
	선풍기 박스	산업용 장갑	건강, 웰빙제품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8. 한·중 FTA 주요 업종별 대응 전략

업종별 주요 활용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통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



업종	주요활용품목	주요대응방안
철강	냉면, 열면 등 범용제품	반제품 수출확대, 현지 고부가가치화 전략 추진
석유화학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첨단 고부가제품	고부가 제품 합작법인 투자 유도, 마케팅 강화
섬유	아웃도어 등 기능성 의류	기능성 소재 의류 R&D 및 브랜드 마케팅 강화
일반기계	자동화설비 부품, 포장용 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	유망품목 R&D, 시스템 연계 수출
전자기기	중소형 가전	중국 특화 마케팅·제품기획 지원
생활용품	아동용 완구, 콘택트 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디자인·소재 등 R&D 지원 강화, 한류 콘텐츠 연계 마케팅 강화
농업	과일류(사과, 배, 포도, 복숭아, 딸기), 고기류(소, 돼지, 닭) 가공식품 (햄, 소시지, 우스, 꿀)	친환경·안전 농식품의 對中 수출 확대
수산업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참치	통합마케팅 추진, 중국 시장정보 통합 제공
보건의료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인허가 등 인증 지원,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지원

Ⅲ. 한·중 FTA 주요 협상 내용

- 1. 한·중 FTA 규정 - 통관 분야
- 2. 한·중 FTA 규정 - 원산지 분야
- 3. 한·중 FTA 주요 업종별 협상내용
- 4. 한·미, EU, 중국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 비교

1. 한·중 FTA 규정 – 통관 분야

일관성

각 지역 세관에서 관세 법령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비일관적 집행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의무 명시

상품의 반출

‘48시간 내 통관’ 원칙,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

- 관세 납부 등 법령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통관
- 전자적 서류제출에 의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

세관 협력

세관절차 발전을 위해 전문가 교류 실시 및 동 챗터의 이행 및 양국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상호 지원

기타

통관 절차의 원활화, 자동화 시스템 활용, 저위험 품목 통관 원활화, 사후심사 원칙 등 명시

한·중 FTA 발효시 對中 수출입 기업들의 중국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다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

2. 한·중 FTA 규정 – 원산지 분야 (1/2)

원산지 결정기준(PSR)

결합기준

- 석유화학, 기계 등 수출 관심 품목에 중축이 수방위적으로 제시한 “결합기준” 대폭 해제
- 예 1,010개 / 19.4% → 47개 / 0.9%
- 주요 기계결 FTA 결합기준 현황 : 한-인도 3,719개, 한-미 74개, 한-EU 188개

농·수산물

- 신선농수산물(01류~14류)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WO)으로, 가공품(15류~24류)은 우리의 수출 가능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합의

공산물

- 특혜 관세 혜택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무역촉진적 기준 합의

(석유·화학) 석유제품, 화장품,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결합기준 해제 및 우리 家대로 일괄 합의(CTH)

(섬유·의류) 섬유 제품은 주로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RVC 40%)으로 설정, 의류 제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으로 합의

* 원사 또는 원단을 수입하여 의류를 생산·수출 시에도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

(철강) 원재료 수입선(중국), 양국 산업구조/민감성 등을 고려, 도금 및 선강 품목은 CTH로, 냉연 등 기타 제품은 제한적 CTH 기준으로 합의

(기계·전자기기 등) 전반적으로 업계가 선호하는 세번변경기준(CTH, CTSH) 중심으로, 일부 민감 품목은 절충안*으로 합의

* 대부분은 세번변경기준, 일부 단일 RVC 기준 또는 결합기준 적용

(자동차) 양국이 초민감 품목으로 설정한 완성차는「CTH + RVC(60)」으로, 부품은「CTH or RVC(40), RVC(50)」으로 합의

절차

특혜관세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 명시

-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미화 700불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기관발급 방식

2. 한·중 FTA 규정 – 원산지 분야 (2/2)

개성공단 관련 사항

양측은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현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 부여하기로 합의

- 대상품목은 HS code 6자리 기준 310개 품목으로, 기체결 FTA중 가장 많은 품목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양국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합의

※ 한-EFTA : 267개, 한-인도 108개, 한-아세안, 페루, 콜롬비아 : 100개

- 원산지 인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함

※ 비원산지 재료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어 기체결 FTA규정에 비해 유리

기체결 FTA				한-중 FTA			
비원산지 투입가치(임금 포함)				비원산지 투입가치(임금 제외)			
		X 100	≤ 40(%)			X 100	≤ 40(%)
수출가격(FOB)				수출가격(FOB)			

-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3. 한·중 FTA 주요 업종별 협상내용 (1/5)

철강

현황

- 우리는 대부분의 품목이 이미 무관세인 반면, 12년 기준 중국의 무관세 품목은 전체 품목수 기준 1.2%

협상결과

- 중측은 우리 업체들의 중국 현지공장 소재로 활용되는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과 범용제품인 후판, 열연강판 등을 개방
- 다만, 자국내 산업육성 측면에서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개방 제외
- 중견·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하수도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대상에 제외

석유화학

현황

- '12년 기준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약 5.8%, 중국이 약 6.1%로 우리측 무관세 품목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 13개 품목(중측 무관세 품목 無)

협상결과

- 중국의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선점 및 우리 중소 생산업체인 후방산업 측면을 고려한 양허 도출
- 중측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과 자국 내 공급 부족 기초원료(에틸렌, 프로필렌 등) 시장 개방
- 우리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초산에틸) 및 對中 무역수지 적자품이 큰제품(초산 등) 양허 제외하여 시장 보호

3. 한·중 FTA 주요 업종별 협상내용 (2/5)

섬유	
현황	'12년 기준 평균관세율은 한국이 약9.8%, 중국이 약 11.3%로 중국이 더 높은 수준
협상결과	- 업계의 국내 생산기반 보호 요구를 반영하여 준농업 수준으로 보호하였으며, 화중 수출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편직물 등) 중측 관세 철폐로 수출 확대 기대 - 중측은 우리 수출품목인 직물류(화섬직물, 편직물) 및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 하되, 섬유육성정책에 따라 화섬유 위주 양허제외 - 우리는 순면사, 직물제/편직제 의류, 모사, 면직물 등 화중 무역적자가 크고 경쟁력이 취약한 제품 위주로 관세철폐 대상 에서 제외
일반기계	
현황	'12년 기준 우리 평균 관세율은 6.9%, 중국은 약 9%로 중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
협상결과	- 중측은 중국 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 등을 개방,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확보 - 단, 굴삭기 등 건설기계 및 고급공작기계는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 - 우리는 중소기업 생산 제품은 기계요소(볼 베어링 및 부분품) 및 전동공구(전기드릴 및 기타) 등을 보호

3. 한·중 FTA 주요 업종별 협상내용 (3/5)

자동차·부품	
현황	우리 관세 수준은 완성차 8~10%, 부품 8%, 중국은 완성차 3~25%, 부품 10% 수준으로 중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
협상결과	- 양국 모두 산업정책 차원에서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철폐로 양허하여 FTA 영향은 제한적 - 중국은 승용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을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일부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15~20년), 일부 자동차 부품(충격흡수기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 - 우리는 승용차를 포함,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화물차 및 승합차 등 완성차를 양허제외하고, 대중 주요 수입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장기 철폐로 양허하여 시장 보호
전자·전기	
현황	'12년 기준 전자기기 분야 평균 관세율은 중국 8.4% 우리 5.2%로 중국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
협상결과	- 전기밥솥, 세탁기(10Kg 이하), 냉장고(500L 이하) 등 중소형 생활가전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에 대한 중측 시장 개방 확보 - 우리 경쟁력 우위이나 최근 중국 공급 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LCD 패널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10년내 관세철폐(발효 후 9년차부터 감축시작) - 우리는 전동기, 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장기 철폐로 보호

3. 한·중 FTA 주요 업종별 협상내용 (4/5)

생활용품

현황

- 우리나라의 '12년 기준 관세율 평균은 약 6.6%로 중국 평균관세율 13.6%에 비해 낮은 수준

협상결과

- 중측은 콘택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한 바, 우리 보다 10배 이상 큰 내수 시장 진출 기회 확보
 * '13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 규모는 우리(31조원)보다 10배 이상 큰 316조원으로 추정
- 우리는 생활용품 시장의 원부자재 가격인하 효과, 고급소비재의 對中 수출증대를 위해 대부분의 품목을 10년 이내 개방
- 중국측의 고율 관세철폐와 더불어 지재권 보호, 시험인증, 통관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로 국내업체의 중국진출 가능성 제고

농업

현황

- '12년 기준 우리 농산물 평균관세는 56.7%로 중국의 평균 관세율 15%에 비해 높은 수준

협상결과

-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제외 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
- 일부 품목에 한정된 TRQ 제공 및 관세 소폭 감축 등의 보호 장치를 활용하여 시장개방 충격 최소화
- 중국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고품질·안전 우리 농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확보
- SPS(위생·검역) 분야는 농업계의 우려를 감안,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

3. 한·중 FTA 주요 업종별 협상내용 (5/5)

수산업

현황

- 우리나라 '12년 기준 관세율 평균은 약 18%로 농산물(5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중국은 평균 관세율 10.4%

협상결과

- 주요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4.3%)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 장치 확보
 * 우리나라 수산물 자유화율 : 품목수 86.2%, 수입액 35.7%
-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유화율 약 100%(수입액기준)로 완전 개방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제고
 * 중국 수산물 자유화율 : 품목수 99%, 수입액 약 100%
-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
- 또한 수산협력 협정문에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명시

4. 한·미, EU, 중국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 비교

구분	EU	미국	중국
발효일자	11. 7. 1	12. 3. 15	타결(2015.02.25 가서명)
협정국	그리스(GR) 등 28개국	미국(US)	중국(CN)
C/O증명방식	자율	자율	기관발급
C/O발급주체	- 원산지상품 6천유로 이하 (원본수기 or 전자+이름) - 초과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신청 : 수출자, 생산자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자국법령에 따라 발급
C/O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정형서식없음 (권고서식사용)	통일증명서식
C/O제출면제 (1,000\$이하)	개인소토, 여행자 수하물 \$1,000이하/€500	\$1,000	\$700
C/O유효기간	발급일 1년	발급일 4년	발급일 1년
C/O사용언어	영어 or 당사국 언어	영어 or 당사국 언어	영어
운송요건	직운 有	직운송 無	직운 有
역외가공	불인정	불인정	인정
검증방식	간접 (요청 받은날 10월 이내)	직접 *섬유류:간접검증 (요청 받은날 6월 이내)	직접, 간접 병행
검증주체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공침관가능)	수입국세관	수입국세관
부가가치	MC	집적법(BU), 공제법(BD)	공제법(BD)
	EXW	조정가치	FOB

IV.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사전 확인사항

- 1. 계약당사국간 거래일 것
- 2. 거래품목이 양허대상 품목에 해당할 것
- 3. 한국과 중국간의 물품이 직접 운송되어야 할 것
- 4. 협정에서 정한 절차적 사항을 준수할 것
- 5. 원산지가 한국산 또는 중국산일 것

1. 계약당사자간 거래일 것



Check Point !

- 수출자와 수입자가 한국과 중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할 것
- 역내 거주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 또는 발송하고 수입하여야 할 것
- 거래당사자의 개념에 합당해야 함



< 협정문 제 1.5조. 영역적 적용 >

1. 한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의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된다.
2. 중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 영역, 그리고 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반입 지역에 적용된다.

2. 거래품목이 양허대상 품목에 해당할 것



Check Point !

- 거래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품목분류가 되어야 할 것
-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며, 한·중 FTA 협정문 부속서 8-가-1 한국양허표, 8-가-2 중국 양허표상의 품목에 해당 할 것



< 협정문 제 4.7조. 품목분류 >

양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을 양 당사국 간 교역 되는 상품에 적용한다.

협정문

통일상품명

품목	KOREAN	CHINESE
사과	0808100000	0808100000
사과껍질 및 찌꺼기	0808100000	0808100000
사과주스	2002110000	2002110000
사과주스 (가열처리된 것)	2002110000	2002110000
사과주스 (가열처리되지 않은 것)	2002110000	2002110000
사과주스 (가열처리된 것)	2002110000	2002110000
사과주스 (가열처리되지 않은 것)	2002110000	2002110000

협정문

한국·중국 FTA 협정문 제 4.7조

HS Code	품목명	한국·중국 FTA 협정문 제 4.7조	한국·중국 FTA 협정문 제 4.7조
0808100000	사과	0	0
0808100000	사과	0	0
0808100000	사과	0	0
0808100000	사과	0	0
0808100000	사과	0	0
0808100000	사과	0	0
0808100000	사과	0	0
0808100000	사과	0	0
0808100000	사과	0	0
0808100000	사과	0	0

양허표

3. 한국과 중국간의 물품이 직접 운송되어야 할 것

**Check Point !**

- 물품이 한국과 중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직접 운송되지 않은 경우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 단순경유 : 지리상,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하는 것으로 환적, 상품 보존 작업 이외의 가공 없음



< 협정문 제3.14조. 직접운송 >

- 가.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통과를 위한 상품의 반입은 정당화 될 것
-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
- 다.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한 화물의 분리, 재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외에 비당사국에서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비당사국에 상품이 보관되는 경우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비 당사국에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함)



※ 단순경유 : 지리상,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하는 것으로 환적, 상품 보존 작업 이외의 가공 없음

4. 협정에서 정한 절차적 사항을 준수할 것

**Check Point !**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를 준수할 것
- 협정 적용 신청 시 수출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할 것



< 협정문 제 3.15조. 원산지 증명서 >

1. 국내 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기관발급 방식)
2. 인장은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 것과 합치
3.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4.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 기재**하여 소급 발급 될 수 있음

증명방식	기관발급	by authorized body
신청자	수출자, 제조사, 수출자의 대리인	by the exporter, producer, or under the exporter's responsibility, by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valid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ance
증명서식	통일서식	협정문 CHAPTER 3. ANNEX 3-C (서식 있음)
사용언어	영어	English
발행부수	원본은 1부만	only one original hard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be printed.
발급시기	원칙	선적전 또는 선적시, 선적후 7일 이내
	소급발행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행" 문구 들어가야 함.
원본분실시	서면으로 재발급 신청가능, "진본사본" 문구가 들어가야 함.	written request, bearing the words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___ dated ___".

4.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기관발급)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ANNEX J-1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see Official Instructions)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in, for or to, betwee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Date of dispatch (Month/Day)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HS code (10-digit code)	9. Origin criterion	10. Gross weight (quantity) (Country/Unit) or other measurement (liter, ml, etc.)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information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s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원산지결정기준(PSR) 기재방법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WO	해당 상품이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되고 정의되거나 또는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WP	해당 상품이 그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PSR	해당 상품이 세번변경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공정요건 또는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OP	재해당 상품이 제 3.3 조(특정 상품의 취급)의 적용을 받는 경우

kotra

- 30 -

SHINHAN

5. 원산지가 한국산 또는 중국산일 것



Check Point !

-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만 특혜를 부여하므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것
-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이어야 하며, 협정에 의거 최소 3년간 원산지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

< 협정문 제 3.2조. 원산지 상품 >

가.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되는 경우(WO) **부가가치 판정 품목 47개**
 나.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WP) **이외 모두 세번변경기준임**
 다.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8-가(품목별 원산지규정)에 합치되는 경우(PSR)
 그리고 그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적용가능한 규정을 충족한다.(OP)

< FTA특례법 제 12조 >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kotra

- 31 -

SHINHAN

THANK YOU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관세사

010-8919-0407 / choidaekyoo@gmail.com



차이나데스크 소개 및 활용법 안내

▷ 홍 희 부장(차이나데스크)



한중 FTA 선제적 대응 위한

「차이나데스크」 활용 안내

- I. 차이나 데스크 개요
- II. 세부 지원 사업
- III. 차이나 데스크 상담문의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I. 차이나 데스크 개요



1. 설립목적

2. 구 성

3. 주요기능 및 역할

설립 목적 : 한·중 FTA 활용 원스톱 지원

한중 FTA 활용 준비 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 중국 거대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 FTA 원산지 관리, 중국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수출지원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 기업별 맞춤형 지원

이제 우리 기업들이 FTA를 수출에 활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에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할 것입니다. 한중 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포괄적인 중국 시장 진출전략을 한중 FTA 발효전에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2014년 무역의날 VIP 축하 시)

1

I. 차이나 데스크 개요



1. 설립목적

2. 구 성

3.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

- FTA 전문가(관세, 인증, 지식재산권)
- 수출지원 유관기관(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aT센터)
 - 한중 FTA 협정문 해석, 원산지관리, 수출관료개척 등 FTA 발효 전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現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한중 FTA 활용을 위한 Desk (창구) 역할 수행



구성원 별 역할

무역협회	· 한중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건의
관세사	· FTA 협정문 상담 및 컨설팅
KOTRA	· 중국무역관, 중국 투자, 수출관료개척 업무 연계
대한상의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지원, 중국상의협력
aT센터	· 수출 지원, 통관 및 품질인증 지원농수산물
지식재산 보호협회	· 중국 수출품 상표 및 저작권 관련 상담 지원
인증전문	· 중국 인증, 표준 관련 상담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한중 FTA 발효 후, 상담·컨설팅 수요를 감안하여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식품위생검역, 서비스부문, 원산지 관리정보 제공 등) 추가 배치 검토

2

1. 차이나 데스크 개요



1. 설치목적

2. 구 성

3. 주요 기능 및 역할

한·중 FTA 활용 원스톱 지원

한중 FTA 활용 상담 · 컨설팅

- 1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지원 (품목분류, 원산지규정, 양허율 등)
- 2 한-중 FTA 활용지원 세미나 개최, 교육
- 3 FTA 활용 안내서 발간 (한중FTA 활용 가이드북, 품목별 매뉴얼)

한중 FTA 활용 애로사항 발굴 · 해소

- 1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발굴 및 FTA 협정 활용 해소지원
- 2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관련 지원
- 3 통관 및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지원

중국 수출시장개척 지원

- 1 중국 시장동향정보 제공, 시장개척(사절단, 전시회) 활동 참가 지원
- 2 농수산물수출산업화 지원 사업 활성화
- 3 중국 현지 네트워크 (KOTRA 무역관, 중국상의 등) 활용 강화

3

II. 세부 지원 사업



1. 한중 FTA 활용 상담 · 컨설팅

2. 한중 FTA 활용 애로메일

3. 중국 수출시장 개척 지원

1 한중 FTA 활용 대비 원산지관리 지원

- 한중 FTA 협정문 상담, 원산지증명서 등 자료작성 안내 (1380 콜센터, 인터넷, 방문)
- ※ 상담수요 증가에 대비 1380 콜센터 운영시간 연장 : 9~18시 ➡ 8~20시
- FTA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KOREA) 보급 및 활용지원



2 한중 FTA 활용지원 컨설팅

-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FTA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 컨설팅
- 기업별 맞춤형 한중 FTA 활용방법, 원산지 관리 등 컨설팅 시행



3 한중 FTA 활용 안내서 발간

- 「한중 FTA 활용 가이드북」 발간 (한중 FTA 활용 종합정보, 주요 질의 · 답변 사항 등 안내)
- 「품목별 매뉴얼」 발간 (한중 FTA 수혜 품목)



4

II. 세부 지원 사업



1. 한중 FTA 활용 상담·컨설팅

2. 한중 FTA 활용 애로해결

3. 중국 수출시장 개척 지원

1 중국 각종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안내

- 중국의 인증·표준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처리 절차와 애로사항 상담

* 중국은 '강제성 제품 인증규정'에 따라 가정용 전자제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인증 취득을 의무화

2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관련 지원

- 한중 FTA에 따른 양국간 상품·서비스 무역활성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특허청 연계)



3 통관 애로 해소 지원

- 중국 각 성(省)별로 상이한 통관절차와 관행 등 정보 전달과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 한-중 FTA 협정은 통관의 일관성, 원활화, 투명성 이행을 위한 관세위원회 및 통관·무역원활화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5

II. 세부 지원 사업



1. 한중 FTA 활용 상담·컨설팅

2. 한중 FTA 활용 애로해결

3. 중국 수출시장 개척 지원

1 중국 시장동향정보 제공, 시장개척 지원

중국 비즈니스 포털

- 중국 시장 마케팅 정보 · 통계 · 실무가이드 등 중국 진출에 필요한 콘텐츠를 확충

무역전문가 활용

- 중국 진출 초보 기업 대상 마케팅, 수출입계약, 애로사항 해소 등 노하우 전수

* 해외마케팅 전문위원(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KOTRA) 중 중국전문가

전시회·상담회·사절단

- 우수상품 전시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 온라인 유통채널, 사절단 파견 등 정보 전달

*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등 수출지원유관기업 사업 안내

2 농수산물 수출 산업화 사업 활성화 지원

- 한중 FTA를 활용한 농수산물 수출산업화 사업 안내 및 농수산물 특화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지원 (aT센터 연계)

3 중국 현지 네트워크 활용 연계

- 중국 현지의 유관기관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지원 강화

* KOTRA : 중국 내 4개 무역관(베이징, 청도 등)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설치

- 기업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채널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6

Ⅲ. 차이나 데스크 상담문의



1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80

2 인터넷 : www.fta1380.or.kr

FTA 활용지원 상담

협정문 해석, 관세율 문의

인증 취득, 저작권 문의

농수산물 수출지원 문의

전시회, 사절단 참여 정보

투자 및 중국 네트워크 문의



애로사항 접수 · 발굴

대정부
건의

이행위원회
논의

Session 2

중 시장 진출전략

中 내수시장 진출전략

▷ 홍창표 부본부장(KOTRA 중국지역본부)

중국 내수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KOTRA 중국지역본부

2015. 04. 27.



홍창표 부본부장
(cphong@kotra.or.kr)



CONTENTS

- I 중국 내수시장 최신 동향
- II '한중 FTA'와 새로운 기회
- III 우리기업 진출전략

I

중국 내수시장 최신 동향

1. 중국 내수시장 특징
2. 중국의 내수 육성 정책

I. 중국 내수시장 최신 동향

중국내수시장이란?

- 생산과 투자활동을 통해, 중국내 수요자가 직접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중국시장

- 공간적 광의의 개념
- 중국내의 모든 생산, 생산요소 활동, 판매(소비), 투자 등 포함
- * 가공무역 재수출 포함

扩大内需

B2B

B2C
C2C

중국 내수시장

- 중국내 수요자를 대상으로 직접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중국 내수시장 구분

구분	대상	판매 제품	시장
생산재 시장	기업	생산재	B2B
소비재 시장	개인	소비재	B2C 또는 C2C

I. 중국 내수시장 최신 동향

1 중국 내수시장 특징 (1) :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세

- 소득증가,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영향
 - 소비시장 규모 지속 증가 추세
- * 소비재 판매액 : ('05년) 6.7조 위안 ⇒ ('14년) 26.2조 위안 (연평균 16.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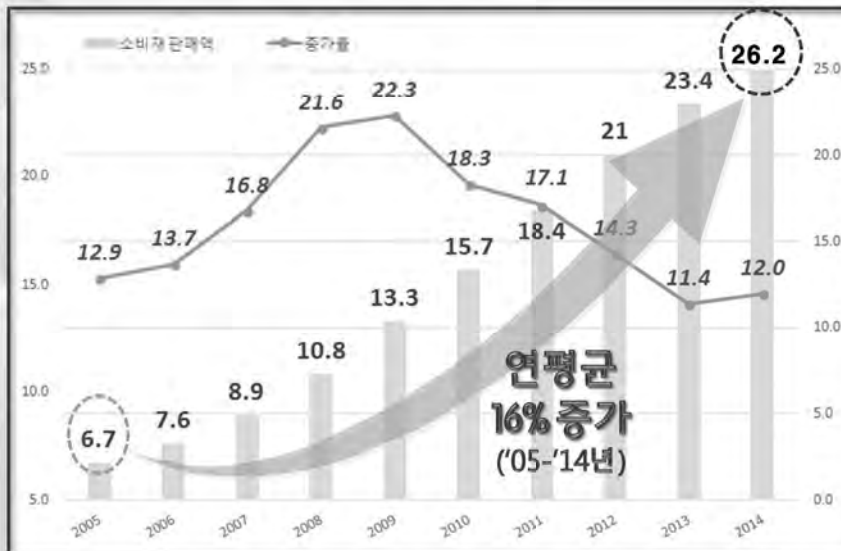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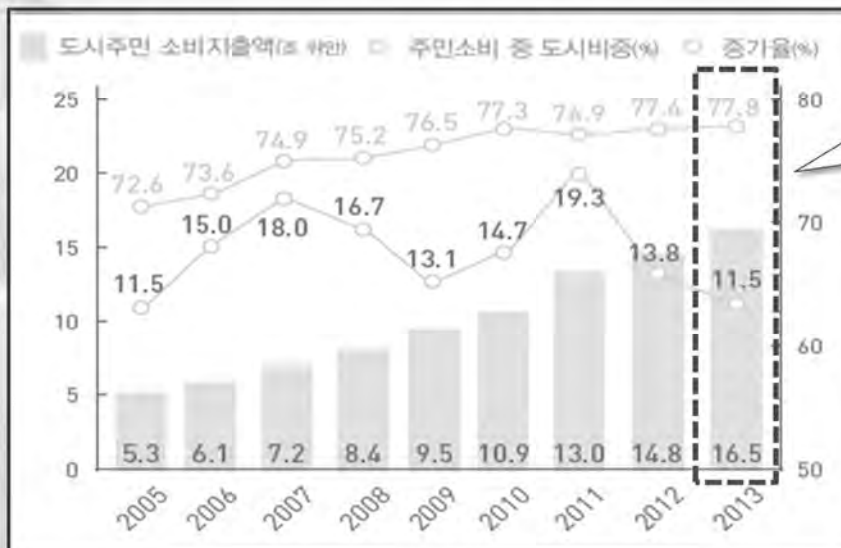
표1. 중국 소비재 판매액 추이

(중국국가통계국)

I. 중국 내수시장 최신 동향

1 중국 내수시장 특징 (2) : '도시' 성장이 주도

- 중국내 소비의 절대 부분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구매력을 갖춘 인구 증가로 도시지역 소비시장 급속 확대
- 도시화 가속으로 향후 중국 소비시장에서 도시지역 비중 증가 전망



16.5조 위안
전체의 77.8%
('13년 기준)

표2. 中 도시주민 소비지출액 추이

(중국국가통계국)

I. 중국 내수시장 최신 동향

2 중국의 내수 육성 정책(1) : 배경



- 전세계적인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국가 차원의 중국판 '뉴 노멀 (신창타이; 新常态)' 정책 추진

* 뉴 노멀 :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의 고성장에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전환되는 상황

중국판 '뉴 노멀'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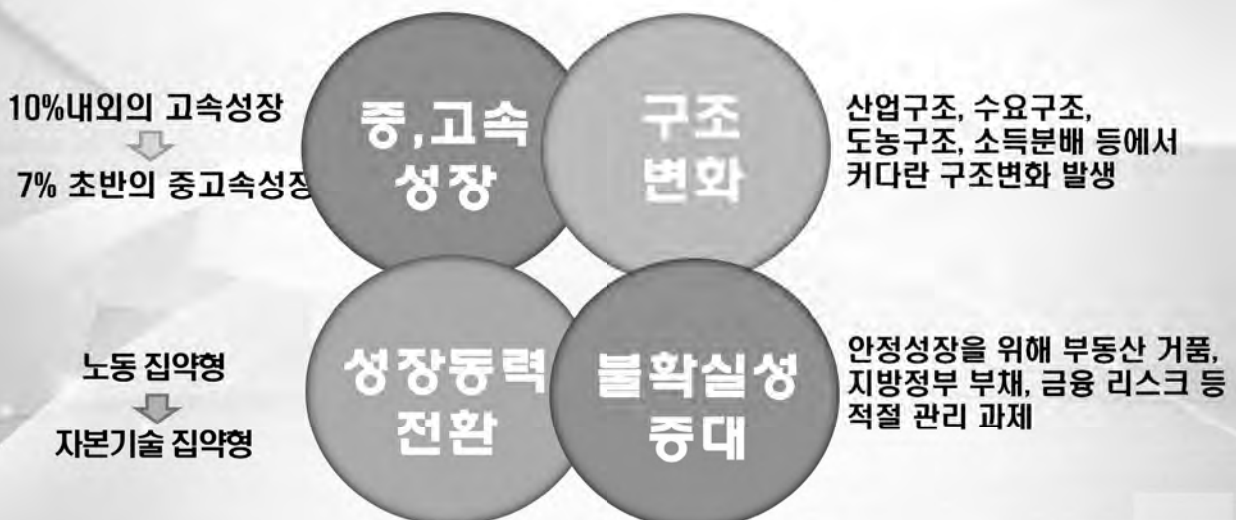
- ▶ '14년 5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허난성 시찰 中 처음 언급
- ▶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기에 진입'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 '시장화 개혁'을 통해 민생안정 및 경제발전 추구함을 의미
 - * 성장 패러다임 전환 및 구조조정 등



"중국 경제가 뉴 노멀 단계에 들어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임.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초를
이어갈 것."
(14.11월 APEC 회의 중)

I. 중국 내수시장 최신 동향

2 중국의 내수 육성 정책(2) : 중국 뉴노멀의 특징



I. 중국 내수시장 최신 동향

2 중국의 내수 육성 정책(3) :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



8년 후 세계 최대 소비대국 부상 전망 (현재의 2배 규모)

(중국 개혁발전 연구원)

I. 중국 내수시장 최신 동향

2 중국의 내수 육성 정책(4) : 6대 소비촉진 정책

소비 영역	주요 내용
정보 소비	• 광대역 속도 제고 • 전자상거래 발전 및 농촌 전자상거래 적극 지원 • 다양한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녹색 소비	• 에너지 절약형 상품보급의 확대 • 신에너지 자동차 활용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 지원
주택 소비	• 보장성 주택, 서민임대주택의 건설 확대 • 주택적립금 대출조건 완화
관광·휴양 소비	• 근로자 유급휴가제도 실시 • 농촌관광 활성화
교육·문화·체육 소비	• 사립학교 납입금 정책 개선 • 중외합자학교 설립 확대
양로·건강·가정 소비	• 산업펀드 조성을 통한 양로서비스업 발전 촉진 • 양로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세수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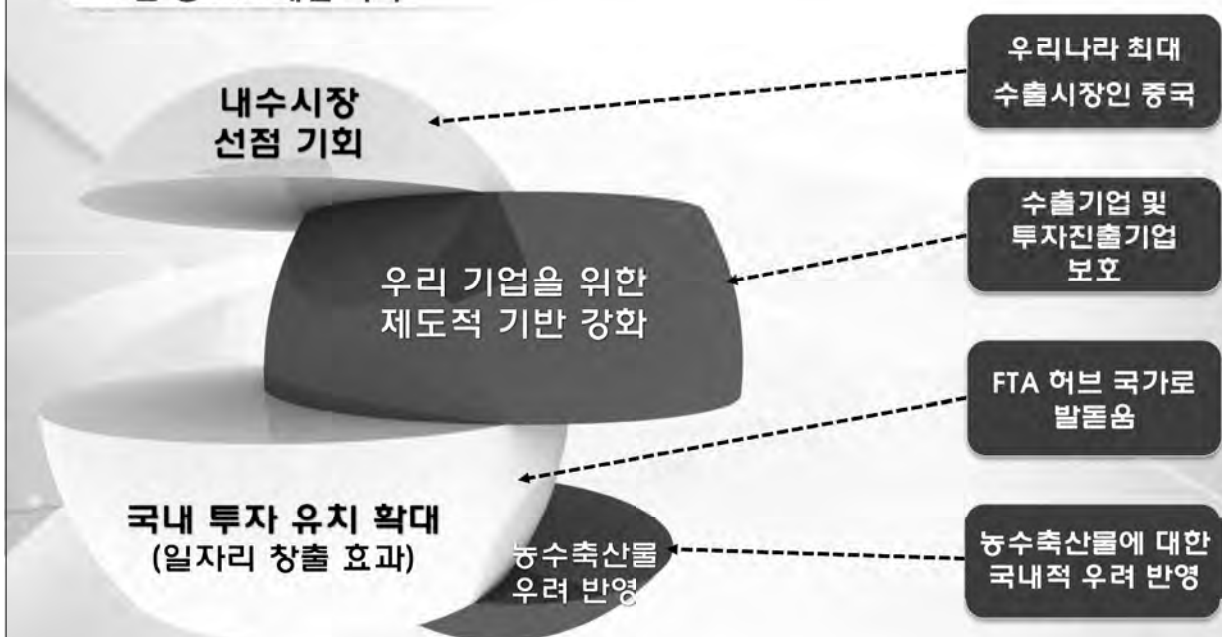


Ⅱ '한중 FTA'와 새로운 기회

1. 한-중 FTA 체결 의의
2. 주요 내용
3. 분야별 영향
4. 활용 방안

Ⅱ. 한-중 FTA와 새로운 기회

1. 한-중 FTA 체결 의의



II. 한-중 FTA와 새로운 기회

2. 주요 내용

연간 54.4억 달러(한화 약 5조 원) 관세 절감

- ❖ 양국 품목 수 기준 90%이상 개방
- ❖ 한국 대중 농산물 수입액의 60%를 대상에서 제외

중국



- 양허품목 5,846개 (총 교역품목의 71%), 수입액 1,104억불(66%) 10년 내 철폐
- 양허품목 7,428개 (총 교역품목의 91%), 수입액 1,417억불(85%) 20년 내 철폐

한국



- 양허품목 9,690개 (총 교역품목의 79%), 수입액 623억불(77%) 10년 내 철폐
- 양허품목 11,272개 (총 교역품목의 92%), 수입액 736억불(91%) 20년 내 철폐

II. 한-중 FTA와 새로운 기회

3. 분야별 영향

- 관세 철폐 · 인아
- 비관세장벽 철폐 · 인아

대중수출

- 수출 확대, 대부분 업종/품목 ex) 연영 고관세 완제품(소비재)

대중수입

- 수입 확대 < 평균관세 8% 철폐 ex) 노동집약품·원자재·농산물

무역

투자

교류
방식

- 투자 제한 완화 · 철폐
- 투자여건 개선

중국向(Outward Direct Investment)

- 대중투자(Biz) 환경 개선 : 투자환경 개선되나 대중투자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

중국發(Foreign Direct Investment)

- 중국기업투자 유치기회 확대

II. 한-중 FTA와 새로운 기회

4. 활용 방안

FTA 동안 양국 공동번영

기 업

정 부

- 최상의 협상결과 도출
- FTA 활용방안 홍보·교육
- 철저한 이행 및 이행 감독
- FTA 사후대책 마련

준 비

- 원산지 활용방안 습득
- 서비스·투자 등 여타 FTA 내용 숙지
- 중국시장 겨냥한 한국내 제품 개발, 생산
- 범 한중 Biz 공간배치 최적화
 - 한중간 supply-chain 재구성
- 양국이 체결한 FTA 최대한 활용
-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유관기관

- 업계 이익·애로사항 발굴
- FTA 활용방안 발굴·홍보
 - 원산지 활용
 - FTA 활용 시장개척
- FTA 이행 감독 → 전달

- FTA 동안 중국 시장전쟁, 진출 촉진
- FTA 동안 안-중 및 역내 value-chain(VC) 재구성 및 위상 제고
- 북안개방 유도 및 동북아 평화기반 확대

III. 우리기업 진출 전략

1. (지역) 승천하는 '용'의 등에 올라타라
2. (유통) 온라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라
3. (산업) 유망분야에 집중하라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1. (지역) 승천하는 '용'의 등에 올라타라

배경

- 중국 경제성장의 지역적 중심축이 1선도시에서 2~3선도시로 이동
- 中 주요 개발정책의 핵심지역에 2~3선 도시 포함
 - ☞ (新실크로드) 시안, 우루무치 (자유무역구) 톈진, 푸저우 (징진지) 탕산, 스자좡 등
- '14년 이후 글로벌기업들의 투자 우선지역은 2선 도시 주축
 - ☞ (GE) 청두, 혁신센터 (샤넬) 난징, 자사 최대 향수전문점 (AEON) 우한, 쇼핑몰

KOTRA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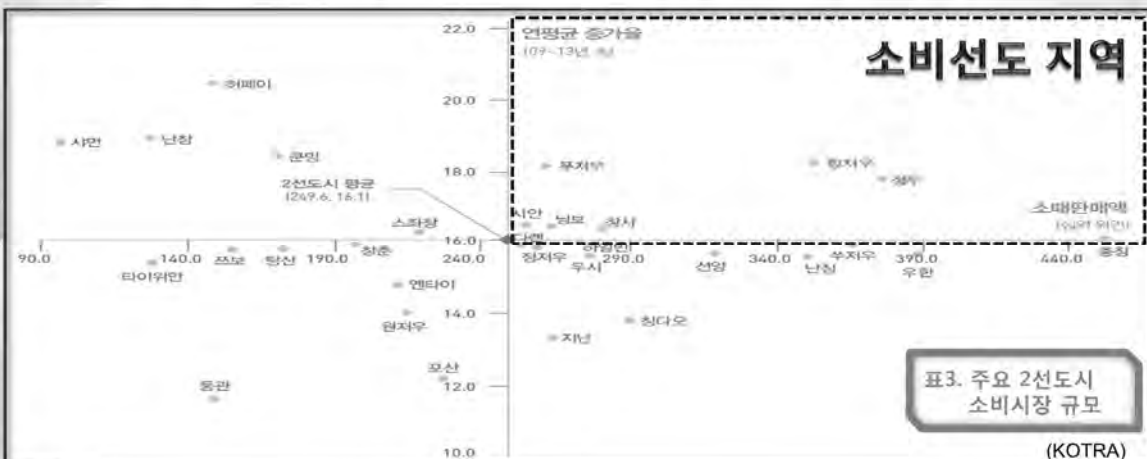
- 중국내 권역 및 도시별 전략적 접근 필요
 - 동일 권역 및 유사한 경제규모의 도시라고 해도 시장접근법은 상이
 - * 예) 시안 및 청두 : (청두) 개방적 (시안) 보수적
- 주력 산업 및 유망 분야(품목)에 대한 분석
 - 현지 정부차원의 육성산업 또는
 - 소비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마케팅 수단 활용 필요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1. (지역) 승천하는 '용'의 등에 올라타라 [참고1- 2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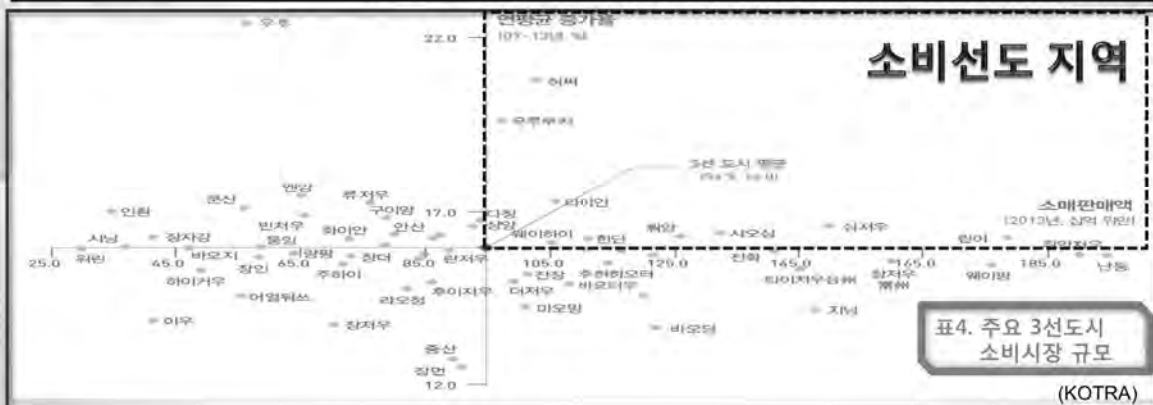
구분	시장규모	성장률	도시
소비선도	大	高	충칭, 청두, 항저우, 푸저우, 창사, 닝보, 시안
잠재소비	大	低	우한, 쑤저우, 난징, 선양, 하얼빈, 우시, 정저우, 다롄, 칭다오, 지난
신흥소비	小	高	허페이, 샤먼, 난창, 쿤밍, 스자좡
소비정체	小	低	창춘, 탕산, 쑤보, 타이위안, 옌타이, 원저우, 포산, 둥관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1. (지역) 승천하는 '용'의 등에 올라타라 [참고2 - 3선도시]

구분	시장규모	성장율	도시
소비선도	大	高	린이, 쉬저우, 샤오싱, 뤼양, 한단, 웨이하이, 타이안, 우루무치, 허쩌, 지린
잠재소비	大	低	난통, 취안저우, 웨이팡, 창저우(常州), 지닝, 진화, 바오딩, 타이저우(泰州), 난양, 자싱, 옌청, 후허하오터, 양저우, 잔장, 바오터우, 마오밍, 더저우
신흥소비	小	高	다칭, 상양, 전장, 이창, 안산, 구이양, 웨양, 류저우, 멘양, 화이안, 빈저우, 둥잉, 쿤산, 우후, 장자강, 시닝, 인촨
소비정체	小	低	장먼, 중산, 창저우(沧州市), 후이저우, 란저우, 라오청, 창더, 타이저우(泰州), 주하이, 장저우, 랑팡, 장인, 어얼뎬쓰, 하이커우, 바오지, 이우, 위린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2. (유통) 온라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라 (1)

시장 동향

-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채널의 시장 장악력 급성장 추세
 - * '14년 온라인시장(B2B,B2C,C2C) 규모는 13조위안 (약2.2조달러)으로 매년 20~30% 성장
-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 역시 급증가세
 - * '14년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 3억명 이상, 세계 1위 (인터넷 이용자 수 6.3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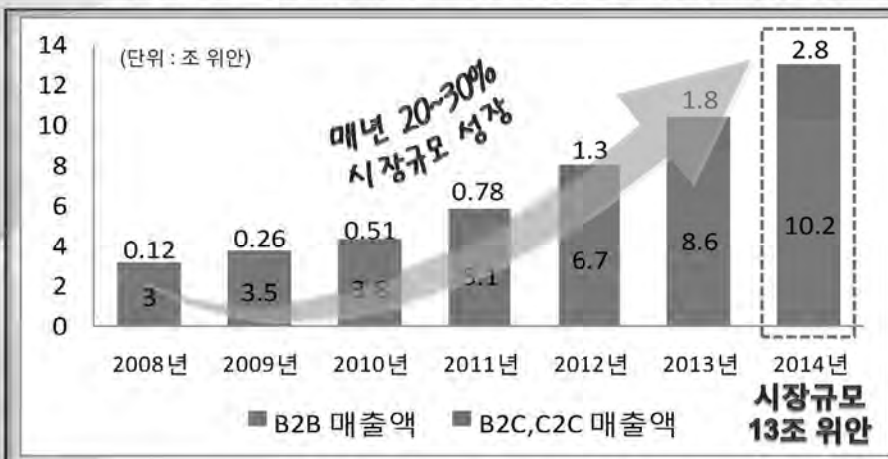


표5. 中 온라인시장
규모 추이

(중국 상무부)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2. (유통) 온라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라 (2)

시장 특성

- 일반 소비를 넘어 '서비스 산업'에도 온라인과의 연계확산
 - 미디어, 게임,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금융(핀테크, 온라인 보험), 헬스케어(온라인 약국), 자동차, 물류, 외식, 여행, 체육 등 온라인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 제고
- 높은 시장진입 장벽으로 중소기업의 진입 성공사례는 소수
 - 인증/허가, 관세, 고비용 구조(물류, 마케팅 등), A/S 및 재고관리 등 다양한 애로 상존

KOTRA 제언

- 유통 플랫폼 맞춤형 전략 수립 및 다원화
 - 유력 전자상거래 채널 거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 구비  인증, 허가, 지재권(상표) 등
- 플랫폼별 특징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에 맞는 협력 파트너 발굴
 - KOTRA '소비재 온라인 네트워크 확대 사업' 활용  연간 / 상하이, 항저우, 난징 등
- 中 전자상거래 촉진 정책 활용, 시장진입 초기 안정적 기반 마련
 - '해외 직접구매(직구)' 판매 방식  관세·부가세·재고 부담 없이 직접 수출
 - * 대중 수출 장벽이 있거나 인증/허가 취득이 어려운 제품에 적합
 - * 최소한의 자본투입으로 中 시장 접근 가능  우편세(行郵稅, 10~50%)만 부담하면 판매 가능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3. (산업) 유망 분야에 집중하라 (1) - 생활소비재

1. '웰빙-뷰티-엔젤'용품

구분	내용
웰빙	생활수준 향상과 중산층 증가에 따른 웰빙 소비계층 확대 * 中 중산층 인구는 현재 15억명에서 향후 10년내 4억명으로 증가 전망 * 中 유기농 시장 연 매출액 300억원 수준 (세계 4위 유기농 식품 소비국) 가정용 소독기, 레저 용품(낚시, 캠핑 등), 소형가전 (비데 등), 건강식품 등
뷰티	소득수준 향상으로 뷰티제품 소비 증가 * 中 화장품 시장규모 US\$ 218억 (세계 3위), 최근 10년간 연평균 10% 성장 화장품, 가정용 피부미용기기, 이너 뷰티 제품, 주얼리, 안경테 등
엔젤	산아제한 완화에 따른 영유아 시장 성장 가능성 확대 * 중국내 아동에 대한 지출이 가정 총지출의 약 30% 수준 교육 콘텐츠, 아동 교육용 기기, 유아용 식품/의약품, 아동 가구 등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 (산업) 유망 분야에 집중하라 (1) - 생활소비재

KOTRA 제언

- 세부 품목별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타겟 시장/지역은 물론 적격 유통 채널과 판매 방식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 (시장) 1선 도시 또는 2~3선 도시
 - * (판매) 대리상 선정 또는 직영점 운영 또는 유통망 직접 납품 등
- 중국내 전문 전시회, 상담회 등 적극 참가하여 중국인의 반응 조사
 - 제품의 우수 기능 또는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 KOTRA 연간 전시회 한국관 10여회 및 사절단(상담회) 60여회 이상 추진 예정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 (산업) 유망 분야에 집중하라 (2) - 문화콘텐츠

2. 문화 콘텐츠

- '13년 문화산업 부가가치 약 2조1천억 위안
 - GDP 비중 약3.7%, 전년대비 15% 성장
 - * 문화부 <12.5 문화산업 성장추진 계획(十二五时期文化产业倍增计划)>
 -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 시행
- '15년 문화산업 생산액 GDP 비중이 약 5%에 달할 예상
 - 애니메이션 산업 부가가치는 300억 위안
 - 게임시장 수입규모는 2,000억 위안으로 성장 전망

주요기업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3. (산업) 유망 분야에 집중하라 (2) - 문화콘텐츠

진출 전략

- 한류 콘텐츠에 중국 현지화를 접목한 한중 협력, 공동제작이 향후 대세
 - 한중 합작영화는 중국서 자국영화와 동등한 대우로 스크린 쿼터 제한 제외
 - * <한중영화합작협약(中韩电影合拍协议)> 체결 ('14. 7월)
- 중국기업의 대 한국 콘텐츠 투자, 공동제작 증가 전망 (공동제작을 통한 국산화)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해외드라마·영상물 인터넷 상영 관리 강화예정 ('15.4월)

KOTRA 제언

- 韓 콘텐츠 + 中 취향 접목한 현지화로 공동제작 : 작품의 시장성 및 수익성 UP
 - 영화, 드라마/예능, 게임, 애니메이션/파생상품 등 문화 콘텐츠 전반
 - * 주요사례 : 영화(이별계약), 예능(아빠 어디가, 런닝맨 등), 애니메이션(다수) 등

구분	회사명	비즈니스 내용	성공/실패 요인
성공 사례	P사 (공연기획)	• 한국 음식 소재로 한 창작 퍼포먼스 • 27개 도시 투어 공연 중	• 한국적 소재와 역동적 퍼포먼스 • 음식과 화려함을 좋아하는 중국인에 인기
실패 사례	A사 (만화캐릭터)	• 한-중 합작 애니메이션 • 3D 형식 영화 상영	• 현지 수요자 기호 분석 실패 * 中 어린이들에게 3D 친숙하지 않음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3. (산업) 유망 분야에 집중하라 (3) - ICT

3. ICT

- IT신흥대기업의 성장 : BAT(Baidu, Alibaba, Tencent), Lenovo, Xiaomi 등
 -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PC 분야 글로벌강자등장, 반도체 및 SW분야 약진
- 스마트시티 열풍 : 신도시화 구축에 따라 전국 200개도시 진행
- 모바일 영역확대 : IoT, 쇼핑, 콘텐츠(게임) 등 전산업 생태계로 확대
- 통신서비스 지각변동 : 4G서비스 본격화 및 민간 자본의 진입허용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3. (산업) 유망 분야에 집중하라 (3) - ICT

진출 전략

- 중국 IT대기업 및 글로벌기업 Supply Chain 진출 추진
- 단순 부품 임가공 모델에서 IT내수소비시장 확대
- 대중소동반 스마트 SoC 프로젝트 진출
- O2O, 온라인(모바일)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강구
- 친환경, Wearable, 프리미엄전자 시장 집중 공략

KOTRA 제언

- IT전자의 高스펙화 및 고급화는 우리 부품기업의 기회
- 스마트시티 구축에 한국 기술을 환영! (2-3선 도시 수요 증가 추세)
- 온라인과 모바일로 중국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라
- 기술이전 및 공동R&D등 차이나머니 활용에 대해 적극 나서라

구분	회사명	비즈니스 내용	성공/실패 요인
성공 사례	P사 (전자부품)	• CMOS 이미지센서 기술로 중국 CCTV 시장 석권	• 글로벌기업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 현지형 영업 네트워크
실패 사례	J사 (휴대폰부품)	• 한국 대기업 협력사로 중국진출	• 대기업 물량 감소 및 모델 변경 • 매출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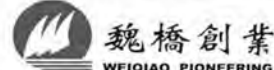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3. (산업) 유망 분야에 집중하라 (4) - 섬유·패션

4. 섬유,패션

- (거시 정책) 최근 중국 경기의 둔화에 따라 섬유 및 의류시장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주도로 방직섬유산업의 고도화 도모
- (의류시장) 2013년 중국 온라인 의류 판매액은 USD 713억으로 2014년에는 USD 1천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판매의 활성화가 패션시장의 수요를 견인
- (섬유시장) 2014년 1-9월 누계수입액은 146.7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4%감소하였으나 후가공 기술분야에서 한국산 고품질 원단수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주요기업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3. (산업) 유망 분야에 집중하라 (4) - 섬유·패션

진출 전략

- (다양) 빠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제품 연구 개발이 필요
- (속도) 생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시장 트렌드에 대응
- (품질) 품질 제고를 통해 미국/유럽제품에 비해 품질이 낮다는 인식에 대한 변화 도모

KOTRA 제언

- 현재 중국은 한류로 인해 한국 섬유/패션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신제품개발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과 격차가 점차 좁아지고 있음.
- 아울러 과감한 설비투자 및 국내 공동생산을 통해 생산속도를 제고하여 납품기한을 최단기화 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
- 특히, 한국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절실하며 일본/유럽제품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

구분	회사명	비즈니스 내용	성공/실패 요인
성공 사례	B사	• 다양한 신제품 원단을 신속 제작 • 다수의 바이어 오더를 수주함	• 유럽과 한국의 미(美) 접목 • 신속한 트렌드 반영 및 생산속도
실패 사례	J사	• KOTRA 통해 바이어 연결, 계약 체결	• 대량 생산에 따른 품질관리 실패 (신뢰 실추로 후속 계약 불발)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3. (산업) 유망 분야에 집중하라 (5) - 친환경 산업

5. 친환경 산업

- 환경 쿠즈네츠 커브 : **1인당 GDP가 \$5,000~10,000**일때 환경에 대한 정부 관심증대
 - '13년 기준 중국 1인당 GDP \$6,596
 - * 미국/ 유럽 : \$8,000~10,000, 일본/한국 : \$5,000~7,000
- '15.1.1일부 중국 新 **환경보호법** 발효
 - (기존) 47개 조항 -> (개정) 70개 조항, 과징금 상한제 폐지, 환경정보공시제도 도입
- 중국은 현재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28%** 차지
 - '06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 '14.11월 미중 기후변화합의

주요기업



Ⅲ. 우리기업 진출전략

3. (산업) 유망 분야에 집중하라 (5) - 친환경 산업

진출 전략

- **산업전략 : E.C.O 분야 진출 확대**
- E:ESCO(에너지절약), C:Clean water(수처리), O:oxygen(대기오염방지)
- **지역전략 : 한-중 중점 환경협력 도시 우선 진출(산둥, 섬서성)**
- 연해지역은 산둥, 내륙지역은 섬서성 중심 진출전략 수립
- **협력전략 : 현지 기관 및 기업과 면밀한 협력전략 수립**
- (연구원) 공동R&D (현지정부) ECO Town 건설 (현지기업) MOU 등을 통한 공동진출 확대

KOTRA 제언

- 성장성이 큰 중국 서부 환경시장 주목
- 현지 유력 기업, 기관과 합작진출
- 환경관련 정부지원 정책 적극 활용

구분	회사명	비즈니스 내용	성공/실패 요인
성공 사례	N사 (탈황/탈질)	· 합작 진출, 기술이전 및 기자재 납품	· 中 파트너와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 (韓 - 기술 / 中 - 시장 마케팅)
실패 사례	A사 (폐기물)	· 中 중부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 프로젝트 참여	· 한국기업간 과당경쟁 · 수요자 의도 파악 불충분 (과도한 고급화)

[참고] 2015년 KOTRA 중국지역 주요 사업

한-중 FTA 활용

-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 (4.27 / 서울)
- 한국 우수 상품전
- 6.5 ~ 7일, 지난 (濟南) / 하반기, 톈진 등
- 한국 우수 소비재 상품전
- 5.18 ~ 20일, 우한 / 6.2 ~ 4일, 구이양 등

소비재 분야

- 한국 소비재 코리아 페스티벌 (연 4회)
- 4.20일, 정저우 / 5.22일, 시안 등
- 중국 온라인 쇼핑몰 한국 상품전
- (상하이/항저우) T-Mall, 1688 등
- (난징) 쉰링 / (광저우) vip.com 등
- 한국 파워상품 로드쇼 (패션, 가전, 유아 등)
- 연간 3회 / 광저우, 선전 등

글로벌 파트너링

- 글로벌 파트너링 China 2015
- 7월, 서울 / 하반기, 중국 등
- K-Tech China 2015 (3분기, 베이징)
- 글로벌/대형 기업 맞춤형 상담회
- 연간 수시 / 글로벌파트너링 거점 지역*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선전 등

新산업·新시장

- 서비스·콘텐츠 상담회 (5.26일, 서울)
- K-Service in China (6.18일, 다롄)
- 방송 콘텐츠 상담회 (9월 / 베이징, 광저우)
- 에너지 및 환경 상담회 (하반기, 상하이)
- 스마트 저탄소 프로젝트 (3분기, 광저우)

* 지원사업 상시 추가 예정 (중국지역 연간 무역사절단 약 60회 및 전시회(한국관) 약 40회 수행)



감사합니다!
谢谢!

중국지역본부

온라인 플랫폼 활용 中 내수시장 진출 전략

▷ 정용환 상무(Qoo10)



중국과 온라인쇼핑



2015. 4. 27(월)

양국 관심사 비교

대한민국

- 대등한 국가간
수출(입) 확대 => F T A
<200불이하 특송화물 면세> 요구
- 한류 콘텐츠 인기
- 관련 소비재 수출 불티
(동대문 패션, 화장품, 유아동 등)
- 13억명 (소비자로서만)

중화인민공화국

- 영해 인접국간
호혜로운 교역 ~> THAAD ?
기각 <EMS 통관 최근 단속 강화>
- 벤치마킹의 대상
- 소비시장 흐름의 일부
(수입대체, 한시적 유행, 보호 등)
- 2억명 (광공업노동자만)

중국 소비시장의 현실

	단일시장의 신화	보편적 가치의 신화	트리클 다운의 신화	후진 시장의 신화	프리미엄의 신화	한류의 신화
신화	중국은 하나의 시장이다	특정 세그먼트의 소비자는 균질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지닌다	1선도시 스타일은 2선도시로 트리클 다운된다	중국 시장은 선진국 시장보다 선진국 전이다	중국 VIP 소비자는 가격을 가리지 않고 구매한다	중국에서 한국 제품은 한류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다.
현실	중국은 매우 이질적인 시장으로 구성. 미국보다는 EU와 유사함	사회주의, 독생자정책 지역적 특성 등으로 고유한 가치관 존재	지역 간 특성이 상존, 대도시 스타일이라고 무조건 전망하지 않음	한국, 타국에서 성공한 제품이 당연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음	VIP 는 역시 매우 독특하고 실용적이며 까다로운 특성을 지님	일부 대도시와 동북3성 젊은 층에게만 제한적 영향
기회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 상존	개별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히트 상품 개발	격전장인 1선도시를 피해 지역적 기반을 구축 할 수 있는 트리클 업의 가능성	다국적 브랜드들이 놓치고 있는 틈새시장 발견 가능	제품에 대한 가치만 있으면 지갑을 열 소비자가 다수 존재함	패션, 뷰티, 식품, 산업,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에 걸쳐 마케팅 전략 수립 가능

시장개척 성공(?)사례

Brand = 성공하면 대박,,,점점 더 쉽지 않은 시장환경



대규모 투자 => 단기간 내 브랜드 확산 => 안정적 시장구축



가장 빠르고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지만, 전제조건이 까다롭다 (한국내 인지도 + 대규모 자금)

중국 오프라인시장 진출

높은 매장 비용

6배나 비싼 부동산 가격

상해 신천지
평당 3억2천 만원



강남 개포동
평당 5천2백 만원



어려운 현지 유통 관리



로고 파손



고장방치

만약 여러분의
사무실이 북경에
있다면,
과연 광주에 있는
매장을 한달에
몇번이나 방문하실
수 있으십니까?

중국 오프라인시장 진출

오프라인의 고비용 구조



Source: OTC Analysis, Wal-Mart requirement

중국 온라인 & 모바일 시장 현황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50% 이상 성장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2014년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은
28145억 RMB임.
(KRW 약 506조원)

중국 온라인 & 모바일 시장 현황



중국 온라인 & 모바일 시장 현황

2014年中国B2C购物网站交易规模市场份额



注释：B2C市场拥有复合销售渠道的运营商规模仅统计其通过网络相关的销售额。
来源：综合企业财报及专家访谈，根据艾瑞统计模型核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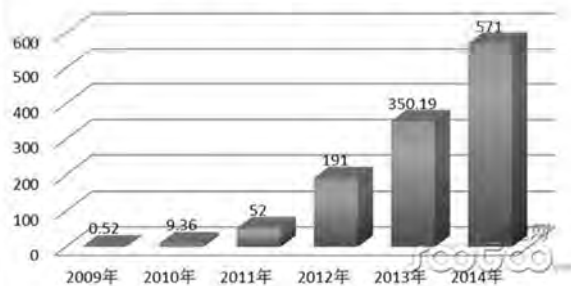
© 2015.1 iResearch Inc.

www.iresearch.com.cn

2014年
중국 온라인 쇼핑 거래 중
B2C가 거래규모는
12882억RMB임.
(KRW 약 232조원)

참고. 天猫(Tmall.com) 双十一 '光棍节' 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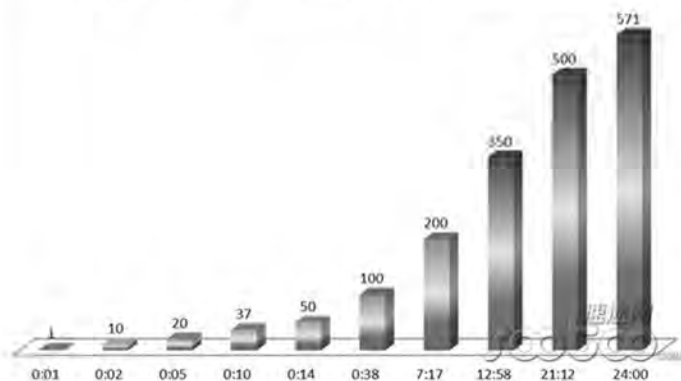
天猫双十一交易量 (单位: 亿元)



2014년 11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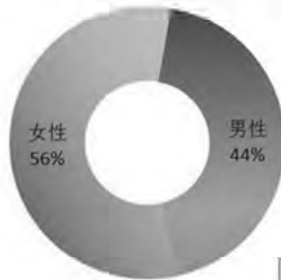
"571억 위안"(한화 약 10조2600억 원)

天猫双十一狂欢实时交易额 (单位: 亿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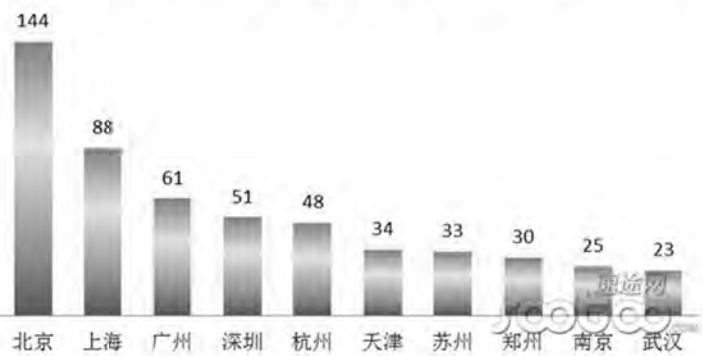


참고. 天貓(Tmall.com) 双十一 '光棍节' 매출 현황

双十一购物节人群性别比例



双十一各城市败家指数TO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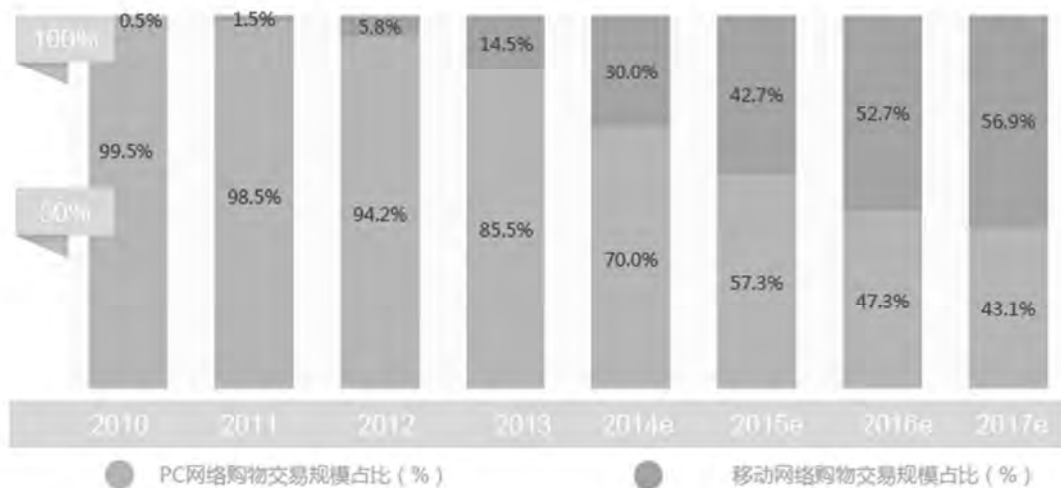


중국 온라인 & 모바일 시장 현황

中国移动购物行业终端渗透

中国移动购物渗透率增长迅速，预计2014年达到30%左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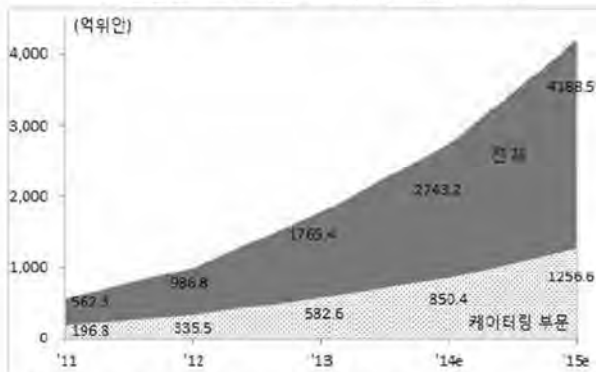
2010-2017年中国网购交易额PC端和移动端占比



O2O 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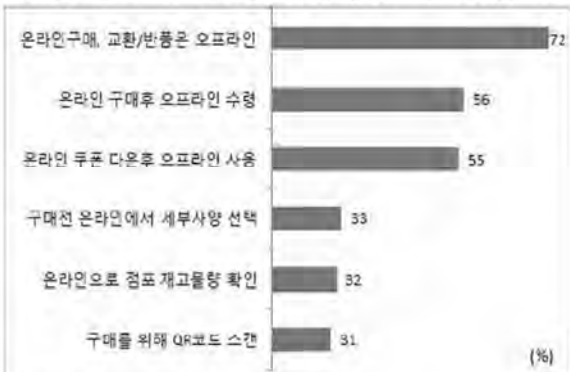
온·오프 융합 O2O (Online to Offline) 서비스 급성장

< O2O 서비스 시장 규모 >



자료 : ii media Research(2014)

< 중국소비자 O2O 관심분야 응답 >



자료 : Mckinsey (2015, 2월)

O2O는 온라인·모바일로 결제 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제 서비스나 물건을 받는 소비 형태로 모바일 이용 활성화로 최근 사용빈도가 크게 확대

중국 온라인시장의 특징

**극도의 신뢰(信賴) 결여로
막대한 고비용(高費用)이 들어간다**

라네즈 공식shop(兰芝官方旗舰店)에서 운영하는 최고가 상품이 최다량 판매

天猫美妆 mei.tmall.com

兰芝 夜间修护保湿面膜80ml

搜索

VS 聚划算

首页 聚美妆 免费试用 我的试用

全部 兰芝 夜间修护保湿面膜

共 18 件相关商品

LANEIGE



¥230.00

兰芝正品 夜间修护保湿面膜80ml 秋冬
兰芝官方旗舰店

月成交 1444笔 评价 2292



¥172.50 ¥230.00

laneige/兰芝夜间修护保湿面膜80ml补
湿修护化妆护肤品专营店

月成交 104笔 评价 124



¥158.00 ¥230.00

韩国直邮 Laneige/兰芝 夜间修护保湿
面膜80ml 兰芝官方旗舰店

月成交 85笔 评价 12



¥193.00 ¥230.00

专柜正品 Laneige/兰芝 睡眠面膜 夜间
修护保湿化妆护肤品专营店

月成交 107笔 评价 338



¥159.00 ¥230.00

专柜正品 兰芝 睡眠面膜 夜间修护保湿
化妆护肤品专营店

月成交 24笔 评价 73

중국 온라인시장의 특징

고객서비스의 기대수준과 제공수준이 모두 최고급이다

※ Jumei.com 고객 안심 서비스



알리페이 65% 점유

처음에는 COD(제품 수령 후, 현금 지급) 방식에서 현재 Alipay, union pay, 휴대폰 충전 카드 등 다양한 지급방식 존재



한국 면적 96배 당일 배송

경동(JD)사례
오전 11시 결제 → 당일 도착
오후 11시 결제 → 다음날 오후 3시 도착
전국 1일 배송 구축



지역 서비스 센터 운영

T-mall 사례
7일 이내 이유없이 교환/환불 가능
24시간 실시간 chatting을 통해 고객 응대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 매출 현황

중국 온라인 주요 쇼핑몰 2014년 거래액



7910亿元
(KRW 142조원)

167亿元
(KRW 3조원)



2396亿元
(KRW 43조원)

180亿元
(KRW 3.2조원)



412亿元
(KRW 7.4조원)

374亿元
(KRW 6.7조원)



168亿元
(KRW 3조원)

17200亿
(KRW 310조원)



Source: i-Research, 실적 발표자료

주요 사이트 특징 및 입점방법

사이트 이미지	주요 특징	입점 방법
	타오바오왕은 알리바바 그룹의 산하의 C2C 사이트로 2003년 5월 10일 설립됨. - 타오바오왕은 중국 최대이자 최초의 C2C 플랫폼으로 시장점유율이 90%를 상회함. - 타오바오에는 회원전용 메신저인 아리왕왕(阿里旺旺)이 있으며, 아리왕왕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함. - 사용자가 온라인 쇼핑물을 방문했을 당시 쇼핑물 운영자가 아리왕왕 온라인 상태일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됐음. - 이 때문에 쇼핑물 운영자와 고객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음.	타오바오왕에 온라인 매장 개설을 위해서는 개인 신분증 스캔본과 실명인증 절차 일환으로 개인이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이 필요함. - 취급품목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 외에는 일반적으로 모두 허용됨. - 고객이 주문서를 보낸 후 판매자는 제품을 신속히 배송해야 하며 배송시기가 늦어질 경우 평가점수가 감점됨. - 점포에 대한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타오바오왕에서의 판매가 금지될 수 있음.

주요 사이트 특징 및 입점방법

사이트 이미지	주요 특징	입점 방법
	티엔마오는 과거 타오바오상청으로 불렸으나 2011년 1월 티엔마오로 상호를 변경함. - 알리바바 산하의 B2C 플랫폼으로 구매자가 4억 명에 달하며 5만 개의 온라인 상점 7만 여 품목을 갖추고. - 개인이 아닌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들로 100% 품질을 보증하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고객이 원할 경우 무조건 상품을 교환해 주는 등 서비스를 강화함.	티엔마오에는 <u>기업만</u> 입점 가능 - 기업이 <u>즈프바오(Alipay)</u>인증을 통과한 이후에 기업 정보를 기입하고 티엔마오 측과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자질과 브랜드 관련 자료를 티엔마오쪽으로 우편 송부해 입점허가 심사를 받음. - 심사 통과 후 점포를 오픈하고 상품 정보를 포스팅할 수 있음. - 티엔마오를 이용하는 점포는 반드시 <u>보증금</u>을 납부해야 함. - <u>기술 서비스 연회비</u>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매출액과 고객만족도 관련 보증금임.

티엔마오 회원 가입 절차



중국내 여타 사이트 입점 비용 (Tmall의 경우)



旗舰店
플래그쉽샵



专卖店
전매점



专营店
전영점

단위: K RMB

업종	보증금				*기술 서비스 (연간)	年수수료 (매출액대비)	TTL
	플래그쉽 (旗舰店/专卖店)		전영점 (专营店)				
	*TM상표	*R상표	TM상표	R상표			
의류/패션	100	50	150	100	60	5%	80~210
화장품	100	50	150	100	30	4%	80~180
식품	100	50	150	100	30	2%	80~180

* TM상표: TM은 Trademark 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의미함
* R상표: ®은 registered, registration 등의 약자로서 "등록상표"를 의미함

(카드수수료 별도)

중국내 사이트 입점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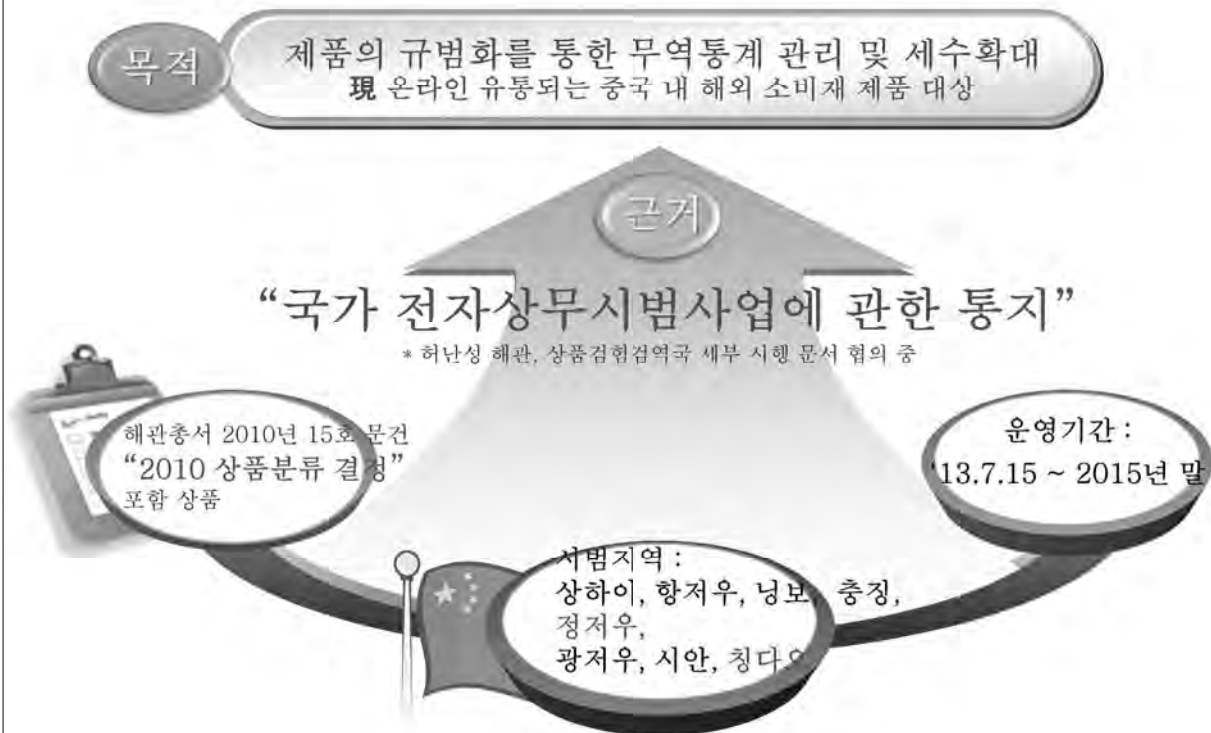
중국 Alipay 계정 및 중국내 출금이 가능한 은행통장 보유시
CN 사이트 내 직접 판매자 가입 가능

Qoo10.com homepage features a search bar at the top, navigation tabs for categories like Fashion, Electronics, and Home Goods, and a large promotional banner for 'I LOVE KOREAN FASHION!' with a 100% refund guarantee. Below the banner are several product listings with images and prices.

중국 내 브랜드 사용권 및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M18 판매자 가입 가능

M18.com homepage features a search bar at the top, navigation tabs for categories like Fashion, Electronics, and Home Goods, and a large promotional banner for 'M18 DAY' with a 'KEEP WARM' theme. Below the banner are several product listings with images and prices.

E-TRADE 개요



허난보세물류센터 활용방법 정리

적용기간 : ~ 2015년말(시범사업 기간), 그 이후는 사업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적용대상 : 1000 위안 이하의 수입상품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소비용 물품만 해당)

조 건 (1) : 온라인 쇼핑사이트에 대한 기업 비안 (Qoo10 취득)

(2) : 각 상품별 비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 후 수일 후 승인)

특별한 혜택

(1) 비안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서류목록 통관을 실시한다.

(2)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개념에 해당하는 판매증치세(17%)를 내지 않는다.

(3) 화장품, 식품 등의 품목들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의 사전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4)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이관세인 행우세는 50 위안 이하인 경우 면제된다.

상품별 세율

분 류	세율(%)	분 류	세율(%)
식품 및 음료	10	주방용품 및 소형가전가구	10-20
주류 및 담배	50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20
방직제품	20	음향·영상 설비	10-20
가죽제품(액세서리, 가방 및 신발)	10	컴퓨터 관련 설비	10
시계 및 액세서리	20-30	서적 및 간행물	10
금·은 보석 류, 공예품 및 수장품	10	문구 및 완구	10
화장품, 가정용 의료·미용 기기	10-50	악기, 스포츠용품, 차전기 등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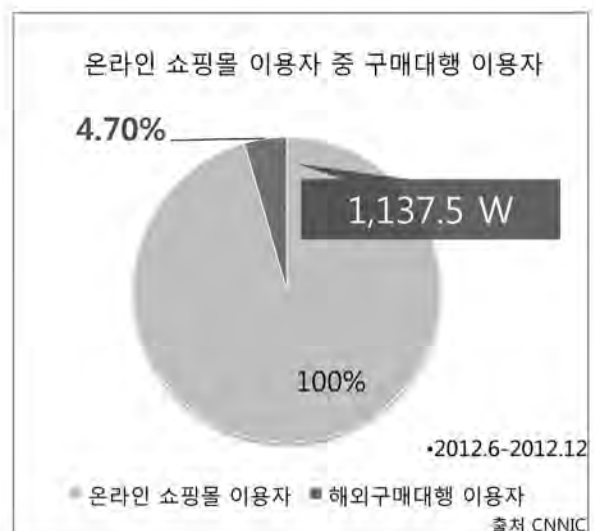
※ 50元(RMB) 미만의 세금은 면세

예) 물품 499元(RMB), 세율 10% → 세금 49元(RMB) → 면세
 물품 510元(RMB), 세율 10% → 세금 51元(RMB) → 납세

e무역을 통한 중국진출

중국 구매대행 시장의 잠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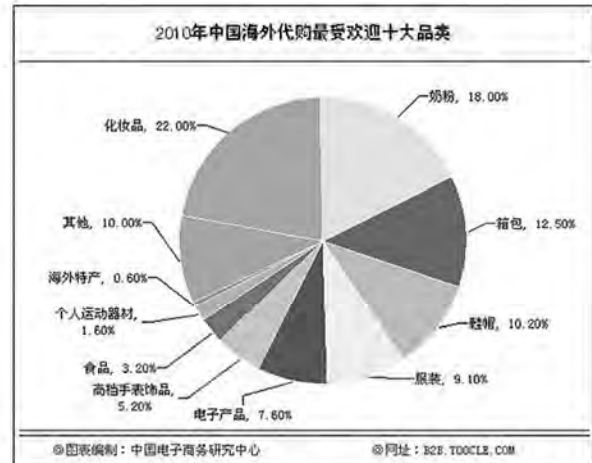
- 중국 인터넷 인구 中 42.9% → 온라인 쇼핑물 이용자 = 약 2억 4천만명
- 온라인 쇼핑물 이용자 中 4.7% → 해외구매 대행 이용자 = 약 11,000,000명



E贸易의 수입규모

중국수입 해외 구매대행 상품시장 규모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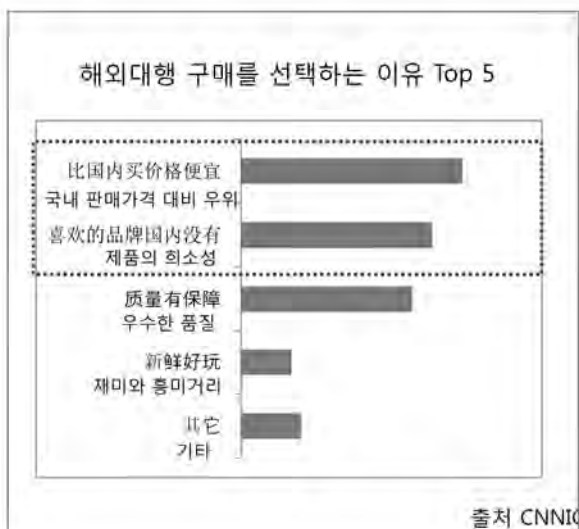
- 해외 구매대행 수입 : 연간 개인 EMS 약 3억건 -> 6조원 추정 (인당 60만원)
- 해외 구매대행 인기 품목 : 화장품, 패션, 유아 등
 - 화장품(22%), 분유(18%), 가방(12.5%), 신발/모자(10.2%), 의류(9.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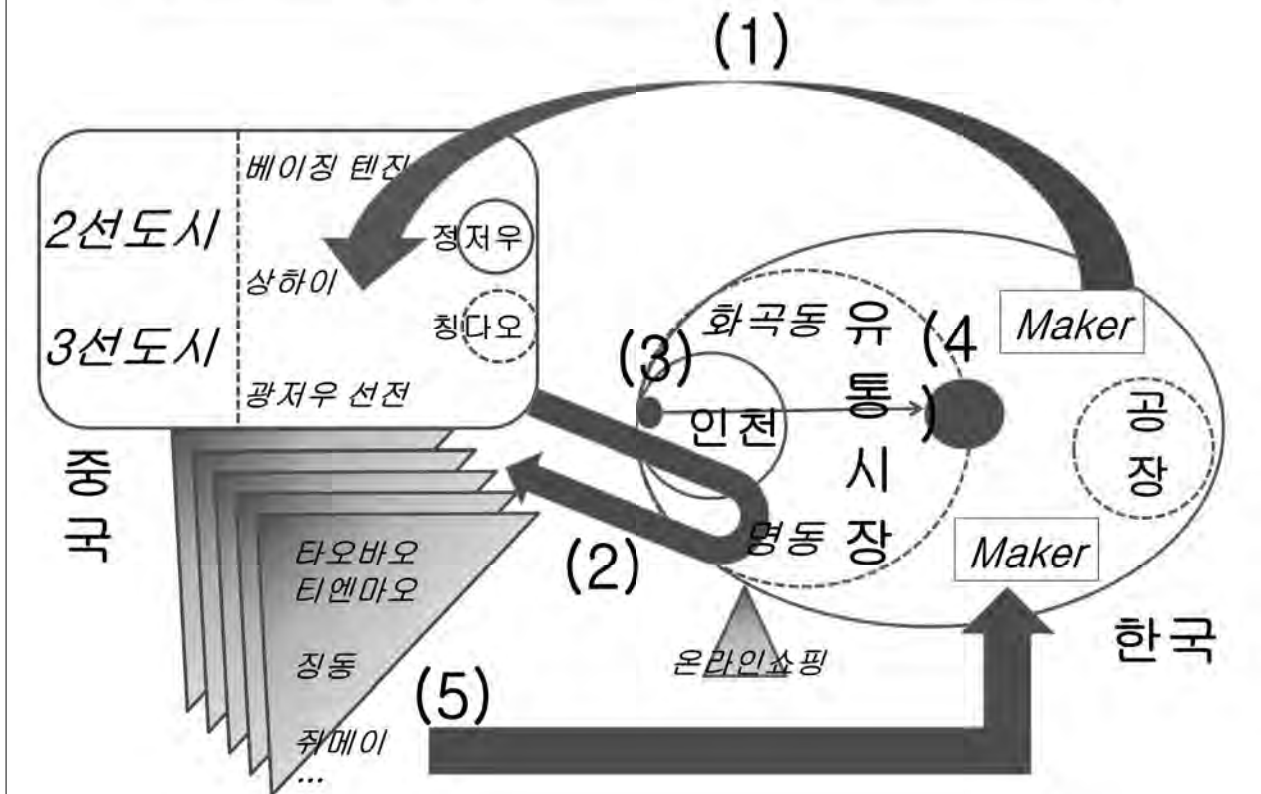
e무역을 통한 중국진출

구매대행관련 네티즌 목소리

- 해외대행을 선택하는 Main Reason → 국내 판매가격 대비 우위 39.9%
- 해외대행의 가장 큰 불만 사항 → 장기간의 배송기간 92.6%



역직구 현황 (화장품의 사례)



Pan-Asia e-Marketplace Platform



정용환 (郑龙焕)

Qool0 Managing Director

개성공단 역외가공 활용 中 시장 진출 방안

▷ 김상훈 과장(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Kaesong Industrial District Foundation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중 FTA 활용 방안

2015.4.27(월)

INDEX

I 개성공단 현황

II FTA와 역외가공

III 한-중 FTA 활용

IV 원산지 판정 예시

I

개성공단 현황



입지여건

1. 개성공단 현황



총면적 : 66.1km²(2,000만평) 중 1단계 3.3km²(100만평) 개발 완료

주요 기반시설

변전소(KEPCO)



공급전력 10만kW, 고압송전방식(154kV)

정배수장(관리위원회·K-water)



1단계 3만톤 처리능력, 최대 6만톤 까지 증설 가능

폐수처리장(관리위원회·한국환경공단)



15,000톤 처리능력, 6,000톤/일 처리 중

폐기물처리장(관리위원회·한국환경공단)



일 12톤 소각 가능, 매립용량 60,900m³

주요 지원시설

종합지원센터



종합 행정지원시설(지상 15층), 관리위원회 청사

기술교육센터



4개 공과, 연 3,000명 교육 가능

소방서(관리위원회)



소방차 8대 보유, 소방대원 총 36명

병원(관리위원회·성모병원)



4개과 8실 10병상 운영

북측 근로자 생활모습

생산모습



태성하타(화장품용기 제작)

출근모습



근로자 대부분이 버스로 출퇴근

업간체조



1일 1회 업간체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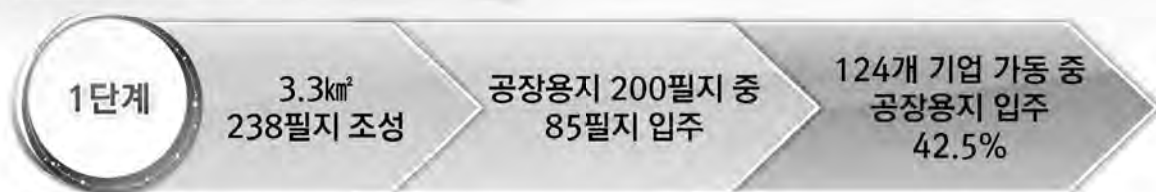
휴식시간



배구 등 체육활동으로 활용

입주기업 개황(15.2월 기준)

분양·가동 현황



생산, 채용, 방문현황

생산·수출현황(누적)

- 생산 27.6억 달러
- 수출 2.6억 달러

채용현황

- 약 55,041명
- 북측: 약 54,228명
- 남측: 약 813명

방문현황

- 누적 104.5만명 방문
- 일 평균 455명 방문
- 일 평균 차량 351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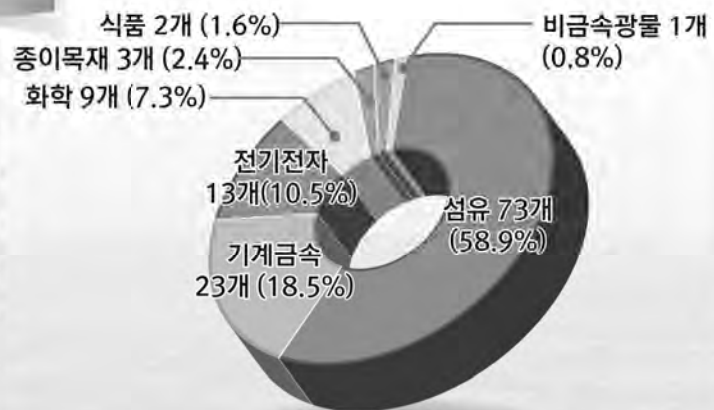
가동 및 업종 현황

연도별 가동현황

연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2월
가동기업	18개	85개	116개	123개	123개	124개

업종별 분포

업종	회사수
섬유	73
기계금속	23
전기전자	13
화학	9
종이목재	3
식품	2
비금속광물	1



임금제도

임금 (노동보수)

- 노임, 가급금, 인센티브(장려금·상금)으로 구성
- '15.2월 평균 노동보수: \$174.8(사회보험료 포함)
- 사회보험료 (노임 총액의 15%)

가급금

-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가급금 지급
- 연장 및 야간 근무 시 50%, 휴일 근무 시 100%

인센티브

- 기업은 실정에 맞게 장려금 또는 상금 지급 가능
- 기업과 종업원간 협의에 의한 인센티브제 실시

노동보수 명세표

	로임계 (\$)	수표
25	88.13	김영희
20	83.13	김영희
0	59.38	김영희
0	60.50	김영희
0	60.13	김영희

세제혜택

기업소득세 세금 우대

- 최초 이익 발생년도부터 △장려·생산부문 5년간 면제, 차후 3년간 50% 감면
△봉사부문은 2년간 면제, 차후 1년간 50% 감면
- 하부구조건설·경공업·첨단과학기술 부문의 기업소득세율 10%
-기타 부문의 기업소득세율 14%

취득·등록수수료(취득·등록세), 재산세 및 영업세·거래세 혜택

- 최초 취득시 취득·등록수수료 면제, 이후 수수료는 남한의 10% 수준
(매매가액 0.3%)
- 신규 건물소유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 전기·가스·난방 등 에너지 생산 및 공급부문, 상하수도·용수·도로 부문
투자·운영기업 영업세 면제

통행·통신·통관

통행

- 통행 : 08:30-17:40 (동절기 21회/ 하절기 23회)
- 인원 및 물자의 당일 입·출경 가능
-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여 운영 중('14.3월)



통신

- 현재 1,300회선 운영 (유선전화·팩스)
- 인터넷 통신 공급 합의(세부사항 협의 중)

통관

- 화물 세관검사
- 입주업체 사전 방문 → 물품확인 → 봉인
- 통관 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합의
- 민족간 거래는 남북 양쪽에서 모두 관세 면제

II

FTA와 역외가공

개성공단 반입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내수용

-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재반입한 위탁가공 물품 중 ①개성공단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남한의 소유지분이 60% 이상, ②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직접재료비 중 남한산 직접재료비의 비율이 60% 이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남한산**으로 간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3-1조)

수출용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은 **수입 당사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일반적인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함

우리나라 FTA 현황



발효국가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기본·상품), 호주, 캐나다

타결국가 ▪ 콜롬비아, 터키(서비스·투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 우리나라와 기 체결된 모든 FTA에서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조항 포함(단, 칠레는 제외)

역외가공 개요

역외가공(영역원칙의 예외)

-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나, 역내산 물품을 수출하여 역외에서 가공한 후 역내로 재수입 하더라도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



- 중국산 원재료를 이용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반제품 등을 무관세로 반입 후 남한에서 완제품으로 최종 가공하여 중국에 무관세 수출 가능(역외가공기준을 충족할 경우)

FTA 협정별 역외가공 허용요건

구분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적용대상(허용)품목		4,625개 (ISI)	134개(OP)	제한없음	267개	아세안 국가별 100개	108개	100개
허용요건	비원산지 투입 요소의 비율	한국에서 수출	최종제품 CIF가격의 40% 이하	최종제품 EXW가격의 10% 이하	최종제품 EXW가격의 40% 이하	최종제품 FOB가격의 40% 이하	최종제품 FOB가격의 40% 이하	최종제품 FOB가격의 40% 이하
	수출 원산지 재료비의 비율		최종제품 CIF가격의 45% 이상	x	역외가공물품의 총재료비 중 60% 이상	역외가공물품의 총재료비 중 60% 이상	역외가공물품의 총재료비 중 60% 이상	x
품목별원산지기준 (PSR) 동시충족 여부		비적용		적용		비적용	비적용	적용
가공지역		개성공단 및 한반도 내의 공단	제한없음	제한없음		개성시와 그 인근에 위치한 공업지구	개성시와 그 인근에 위치한 공업지구	개성공단

▪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s) 방식: 당사국에서 선적되어 수출되는 일정상품을 역내산으로 인정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FTA 협정별 역외가공 허용요건

싱가포르	- 비원산지 투입요소 총 가치가 완제품 관세가격의 40% 이하 - 원산지재료 가치가 완제품 관세가격의 45% 이상
EFTA	- 비원산지 투입요소 총 가치가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40% 이하 - 당사국에서 수출된 원산지재료 가치가 재수입 재료비의 60% 이상
ASEAN	- 비원산지 투입요소 총 가치가 완제품 FOB가격의 40% 이하 - 재수입 재료의 가치가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 전체 재료비의 60% 이상
인도	- 비원산지 투입요소 총 가치가 완제품 FOB가격의 40% 이하 - 당사국에서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최종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 총 가격의 60% 이상
페루	비원산지 투입의 총 가치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하(개성공단에서 수행된 공정 및 처리를 남한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PZ)

대상국가

- EU,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설치하여 역외가공 논의

구성/운영

-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 발효 1주년時 개최
- 단, 호주의 경우 협정 발효 6개월 이내 COPZ 설치

기능

-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의 지리적 구역 지정
- 동 지역의 OPZ 지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 OPZ 생산품의 특혜관세 요건 설정
- OPZ에서 추가될 총 투입가치의 최대비율 설정
- 미국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 내 일반적 환경기준, 근로기준 관행, 임금, 경영·관리 관행(단, 북한지역의 일반기준 및 관련 국제규범 참조) 등을 충족하여야 함

원산지증명서

COMMERCIAL INVOICE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Peru FTA			
1. Seller		2. Invoice No. and date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No.:	
		3. L/C No. and date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Peru FTA	
1. Declaration 2. Goods description 3. To 4. Shipping marks 5. Net & Gross weight 6. Value 7.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8. Quantity 9. Amount 10.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_____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_____ preferential origin 11.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 (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1. Port of loading 2. Port of discharge 3. Number and kind of packages 4. Description of goods 5. HS code (6 digit code) 6. Origin criterion 7.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 (Units of, etc.) 8. Number and date of invoice 9.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0. Certification 11.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III. 한-중 FTA 협정문 상세내용

거래당사자 및 거래유형

거래당사자



거래유형



-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person)을 생산자로 규정 (제3.1조)
- 한-중 FTA의 당사국은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과 중국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고 규정 (서문)
- 북한·홍콩·마카오·대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산자의 제품은 한-중 FTA 협정상 혜택에 대한 권리가 없음

- 협정 당사국 일방이 다른 당사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원부자재를 역외가공지역에 수출(반출)하고 임가공을 한 후 다시 재수입(재반입)한 역외가공 허용품목(부속서 3-B)에 대해서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 (제3.3조 제1항)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재반입한 제품에 한해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Kaesong Industrial Zone Development Foundation

22

역외가공 지역

지역

- 한-중 FTA 체결 이전 한반도 내 운영중인 공업지구에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개성공단 1단계 3.3km²만 지정 (제3.3조 제1항 단서)
-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및 확장은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논의 가능 (제3.3조 제2항 제3호)
 - 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및 확장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 내 공업지구에 한정 (제3.3조 제2항 단서)



섬유, 봉제, 의복
가죽, 가방, 신발
화학, 고무, 플라스틱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기타제조업
복합업종
APT형 공장

1단계
3.3km²
(100만평)

역외가공 허용기준

허용기준

- 다른 원산지기준에도 불구하고 역외가공지역에서 가공한 생산제품 중
 - ① 비원산지 재료비의 총가치가 완제품 FOB가격의 40% 이하,
 - ② 역내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비가 임가공에 사용된 전체 재료비의 60% 이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제3.3조 제1항)

기 체결 FTA	한 중 FTA
$\frac{\text{비원산지 투입가치(임금 포함)}}{\text{수출가격(FOB)}} \times 100 \leq 40(\%)$	$\frac{\text{비원산지 재료가치(임금 제외)}}{\text{수출가격(FOB)}} \times 100 \leq 40(\%)$

비원산지 투입요소(value of non-originating input, 비원산지재료비 + 임가공비 + 해외운송비 등)의 비율 대신 비원산지재료비(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의 비율로 원산지를 판정함에 따라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따른 비원산지 투입요소 상승문제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FTA 활용이 가능

역외가공 허용품목

허용품목

- 완전생산기준 품목(육류, 어류, 채소류 등), 중국측의 초민감품목 및 LCD 패널을 제외한 310개 품목(부속서 3-B 제1항) 역외가공 허용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개성공단에서 반입된 298개 품목(HS 코드 6단위 기준) 중 완전생산기준 품목 15개, 초민감품목 9개, LCD 패널 1개 등을 제외한 273개 품목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요청품목 28개 우선 반영
- 양국은 매년 역외가공 허용품목의 수정에 대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함(부속서 3-B 제2항)

주요제외품목

유형	주요제외품목
완전생산기준	껍데기 벗긴 밤, 고추가루, 전분류, 참깨, 식용의 해초류, 참기름과 그 밖의 기름 등
초민감품목	종이봉투, 장부·노트·연습장, 광섬유용·케이블용 커넥터, 램프의 부분품, 머플러 등
요청품목	액정디바이스와 그 밖의 기기(LCD 패널 등)

역외가공 허용품목(섬유·신발·가방)

허용품목

- 176개 품목(56.8%)이 해당되며, 평균 15.3%의 기준세율이 발효 후 평균 10년간 단계적 관세인하
- △낙하산 등 8개 품목은 협상 발효 즉시, △면제의 티셔츠, 어망 등 11개 품목은 5년 내, △언더팬츠, 유아용 의류 등 136개 품목은 10년 내, △이불·베개 등 14개 품목은 15년 내,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슈트 등 7개 품목은 20년 내 관세가 철폐

주요품목 양허유형(기간)

양허유형(기간)	주요품목
발효 즉시	견사, 합성섬유제의 끈·밧줄·로프·케이블, 낙하산과 로토슈트 등
5년	부직포, 어망, 면제의 티셔츠,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재킷, 면제의 여성용 바지 등
10년	인조섬유제의 언더팬츠, 면제의 유아용 의류, 면제의 양말류, 인조섬유제의 브래지어 등
15년	기타의 핸드백,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재킷·드레스, 이불·쿠션·베개 등
20년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슈트,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 갑피와 부분품 등

역외가공 허용품목(화학·플라스틱)



- 21개 품목(6.8%)이 해당되며, 평균 10.4%의 기준세율이 발효 후 평균 11년간 단계적 관세인하
- △소매용 글루 등 2개 품목은 5년 내, △플라스틱제의 뚜껑, 볼펜, 목탄 등 12개 품목은 10년 내, △플라스틱제의 포장대(sack and bag) 등 3개 품목은 15년 내, △플라스틱제의 상자, 연필·크레용 등 4개 품목은 20년 내 관세가 철폐

주요품목 양허유형(기간)

양허유형(기간)	주요품목
5년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소매용 글루, 플라스틱제의 관 등
10년	물감, 치과용 왁스,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시트, 플라스틱제의 뚜껑, 볼펜, 파스텔·목탄 등
15년	기타의 판·시트,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포장대,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 기타 제품 등
20년	플라스틱제의 상자·포장용기, 연필과 크레용 등

역외가공 허용품목(전기·전자)



- 47개 품목(15.1%)이 해당되며, 평균 7.0%의 기준세율이 발효 후 평균 7년간 단계적 관세인하
- △인쇄회로, 광섬유케이블 등 20개 품목은 협상 발효 즉시, △전동기·발전기의 부분품 등 4개 품목은 5년 내, △자화한 영구자석, 오븐·쿠커 등 13개 품목은 10년 내, △플라스틱제 절연물품 등 6개 품목은 15년 내, △기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등 4개 품목은 20년 내 관세가 철폐

주요품목 양허유형(기간)

양허유형(기간)	주요품목
발효 즉시	자동차처리기계의 부분품, 인쇄회로, 전기회로의 개폐용·접속용 기기, 광섬유케이블 등
5년	냉동기기 온도조절기의 부분품, 전동기·발전기·발전세트·회전변환기의 부분품 등
10년	자화한 영구자석, 전기식 조명용 기기의 부분품, 오븐·쿠커와 로스터, 프리즘·반사경 등
15년	접화용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의 것),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등
20년	기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기타 송신기기의 부분품 등

역외가공 허용품목(기계·금속)

허용품목



- 52개 품목(16.8%)이 해당되며, 평균 10.5%의 기준세율이 발효 후 평균 11년간 단계적 관세인하
- △액체펌프의 부분품 등 8개 품목은 협상 발효 즉시, △연료 급유용 펌프 등 6개 품목은 5년 내, △주방용품, 손목시계 등 21개 품목은 10년 내, △조명기기의 부분품 등 11개 품목은 15년 내, △자동차 부분품 등 6개 품목은 20년 내 관세가 철폐

주요품목 양허유형(기간)

양허유형(기간)	주요품목
발효 즉시	액체펌프의 부분품, 기계 여과기와 청정기, 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등
5년	리니어 액팅식의 엔진과 모터,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냉매용 펌프 등
10년	스테인레스제 식탁용품·주방용품,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손목시계 등
15년	소포장한 기타 가스켓, 핸들 및 운전박스 부분품, 램프의 부분품 등
20년	자동차의 그 밖의 기타 부분품 등

역외가공 허용품목(기타)

허용품목



- 14개 품목(4.5%)이 해당되며, 평균 7.0%의 기준세율이 발효 후 평균 7년간 단계적 관세인하
- △완구 등 6개 품목은 협상 발효 즉시,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등 5개 품목은 10년 내, △종이 바닥 깔개·종이 부채 등 3개 품목은 15년 내 관세가 철폐

주요품목 양허유형(기간)

양허유형(기간)	주요품목
발효 즉시	아동용 그림책, 사무실용 목제가구, 세발자전거·인형과 그 밖의 완구 및 퍼즐 등
10년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연마제품,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위생타올 등
15년	종이제의 바닥 깔개, 인쇄된 엽서, 기타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등

310개 품목 중 65개 품목(21%)이 5년 내, 187개 품목(60%)이 10년 내 관세 철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증명서

ANNEX 3-C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E

10. Origin criterion

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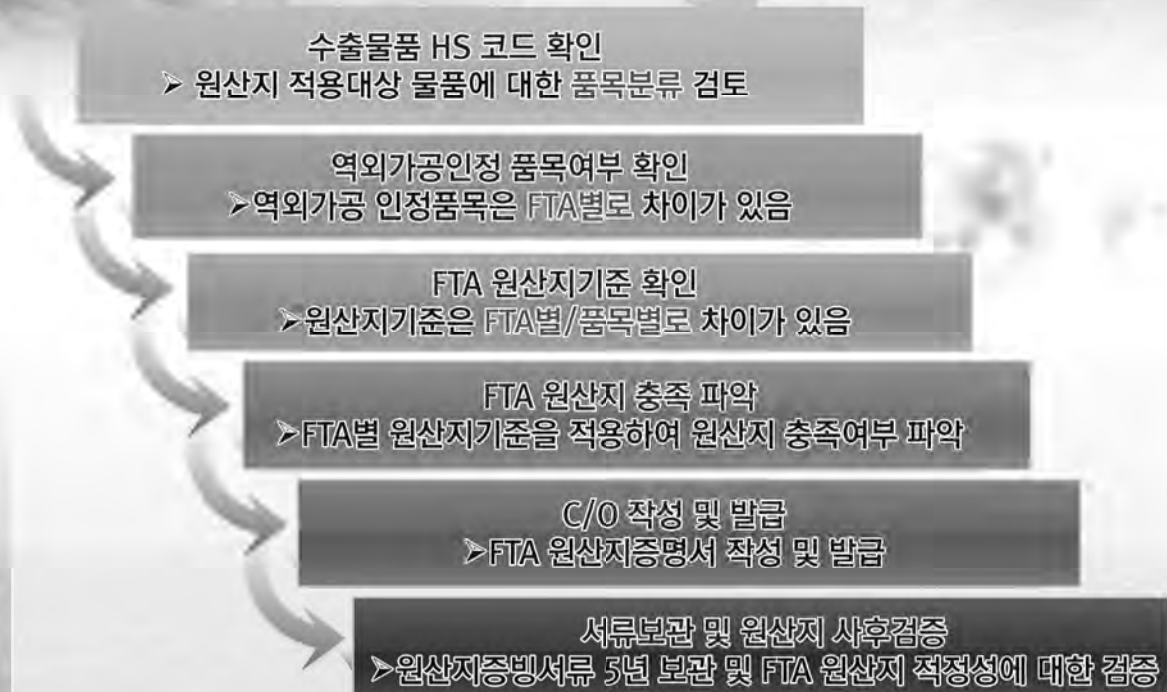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에서만 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문 3-C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원산지결정기준 박스(Origin Criteria)에 "OP" 문구 삽입

사후검증



- 원칙적으로 수출국 세관의 서류입증을 통한 간접검증방식이나, 예외적으로 수입국 세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검증하는 직접검증방식 적용, 순차적으로 적용 (제3.23조)

(참고) FTA 활용 Process



(참고) 원산지 표시

FTA와 원산지 표시

- FTA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에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없애 체약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도록 하는 국제협정
- 원산지 표시 문제는 한-중 FTA를 포함한 모든 FTA 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하고, 수입국 원산지규정에 따라 표기

중국의 원산지규정

- 중국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완성한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 제3조)
- 동 조례에 따라 확정된 원산지와 원산지 표기는 일치하여야 함 (동 조례 제16조)

IV 원산지 판정 예시



거래형태 (가정)

거래당사자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생산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수출국가 : 중국
-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가공지역

- 개성공단 현지기업에서 가공 후 생산제품을 남측으로 반입
- 역외가공지역 요건 충족

거래유형

-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남측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개성공단으로 반출하고 임가공한 후 완제품을 다시 재반입
- 거래유형 요건 충족

허용품목

- 오일필터(HS 코드 8421.23) 부속서 3-B에 포함
- 한국 HS 코드 : 8421.23-1000(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중국 HS 코드 : 8421.23-00(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 역외가공 허용품목 요건 충족

비원산지 재료비의 비율

단위 : 원

Part No.	품명	소요량	단위	원산지	증빙서류	가격
TT888-01	CAP	1	EA	KR	원산지확인서	160
TT888-02	CAP	1	EA	KR	원산지확인서	80
TT777-01	여지	1	EA	CN	원산지증명서	200
TT666-01	에폭시	1	EA	KR	원산지확인서	80
TT666-02	에폭시	1	EA	KR	원산지확인서	60
TT555-01	클립	1	EA	KR	없음	30
TT444-01	Out Box	1	EA	CN	없음	50
TT444-02	스티커	1	EA	미상	없음	30
TT444-03	In Box	1	EA	ID	원산지증명서	100
FOB 가격 : 1,500			임가공비(운송비 포함) : 400			

한-중 FTA 비원산지재료비의 비율 : $210/1,500 \times 100 = 14\% < 40\%$ (충족)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적용 : $610/1,500 \times 100 = 41\% > 40\%$ (미충족)

수출원산지 재료비의 비율

단위 : 원

Part No.	품명	소요량	단위	원산지	증빙서류	가격
TT888-01	CAP	1	EA	KR	원산지확인서	160
TT888-02	CAP	1	EA	KR	원산지확인서	80
TT777-01	여지	1	EA	CN	원산지증명서	200
TT666-01	에폭시	1	EA	KR	원산지확인서	80
TT666-02	에폭시	1	EA	KR	원산지확인서	60
TT555-01	클립	1	EA	KR	없음	30
TT444-01	Out Box	1	EA	CN	없음	50
TT444-02	스티커	1	EA	미상	없음	30
TT444-03	In Box	1	EA	ID	원산지증명서	100

FOB 가격 : 1,500

임가공비(운송비 포함) : 400

한-중 FTA 수출원산지재료비의 비율 : $580/790 \times 100 = 73\% > 60\%$ (충족)

중국산 원부자재 역외산으로 인정 : $380/790 \times 100 = 48\% < 60\%$ (미충족)

감사합니다!

진봉산에서 바라본 공단모습

한-중 FTA 역외가공 허용품목 중국 기준세율 및 양허유형

No.	HS Code	Items	Base rate	Staging category
1	230690	기타의 오일케이크	5.0	0
2	321310	물감(세트상의 것)	10.0	10
3	321390	물감(기타)	10.0	10
4	340700	10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6.5	10
		20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6.5	5
		90 기타 조형용 페이스트	10.0	10
5	350610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	10.0	5
6	391740	플라스틱의 관,파이프등의 연결구류 (예:조인트,엘보우,플랜지)	10.0	5
7	391990	기타의 플라스틱제의 기타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	6.5	10
8	392010	10 에틸렌 중합제의 배터리 세퍼레이터	6.5	10
		90 에틸렌 중합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보강하지 않은 것)	6.5	15
9	392190	20 유리섬유로 보강한 기타의 폴리에틸렌 판,시트	6.5	5
		30 인조펠트로 보강한 기타의 폴리이소브틸렌 판,시트,코일	6.5	10
		90 기타의 판,시트	6.5	15
10	39231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유사물품(플라스틱제의 것)	10.0	20
11	3923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대(sacks and bags)	10.0	15
12	392350	뚜껑,마개,캡 이와 유사한 물품(플라스틱제의 것)	10.0	10
13	392390	플라스틱제의 기타 물품운반용기,포장용기	10.0	20
14	392610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플라스틱제의 것)	10.0	10
15	39264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플라스틱제의 것)	10.0	10
16	39269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10.0	10
17	401699	10 기계용의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제 제외)	8.0	15
		90 기타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제 제외)	10.0	10
18	420212	10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트렁크,슈트케이스	20.0	15
		90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화장품케이스,서류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20.0	10
19	420219	기타의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서류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20.0	15
20	42022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	10.0	10
21	420229	기타의 핸드백	20.0	15
22	42023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20.0	10
23	42029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기타의 케이스,가방	10.0	10
24	42029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의 케이스,가방	10.0	10
25	420299	기타의 케이스,가방	20.0	15
26	420310	가죽의류	10.0	5
27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가죽장갑	20.0	15
28	420329	기타의 가죽장갑	20.0	15
29	430230	기타 전신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것)	20.0	15
30	430310	10 모피의류	23.0	20
		20 모피의류의 부속품	18.0	10
31	441239	기타 그 밖의 합판(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시트로 구성된 것)	4.0	0
32	482390	10 종이나 판지를 재료로 한 바닥 깔개	7.5	15
		20 JOSS 앞에서 태우는 금,은 종이	7.5	5
		30 종이부채	7.5	5
		90 기타 종이제품	7.5	E
33	4903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0	0
34	4909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	7.5	15

No.	HS Code	Items	Base rate	Staging category
35	500400	견사(견웹시스트로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것 제외)	6.0	0
36	520839	기타 면직물(면함유량 85%이상,염색한것,1M2당 중량 200G이하)	10.0	5
37	521039	기타 면직물(염색한것,면함유량 85%미만,1M2당중량 200G이하)	10.0	15
38	540110	10 합성필라멘트 재봉사(소매용이 아닌것)	5.0	15
		20 합성필라멘트 재봉사(소매용인것)	5.0	0
39	55093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0	0
40	550961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것)	5.0	0
41	550969	기타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 스테이플섬유의 것)	5.0	0
42	551519	기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10.0	5
43	560311	1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제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10.0	5
		90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제 부직포	10.0	10
44	56041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	5.0	5
45	560741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포장용 끈	5.0	0
46	56075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끈,밧줄,로프,케이블	5.0	0
47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10.0	5
48	580421	기계로 만든 레이스(인조섬유제의 것)	10.0	5
49	581092	인조섬유로 만든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 모양인 것,모티프로 된 것)	10.0	15
50	610130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아노락,윈드재킷(편물제)	17.5	10
51	610230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아노락,윈드재킷(편물제)	17.5	10
52	610310	10 편물제 남성용 슈트(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5.0	20
		20 편물제 남성용 슈트(합성섬유로 만든 것)	25.0	20
		90 편물제 남성용 슈트(그 밖의 방직용섬유로 만든 것)	17.5	10
53	610331	양모나 섬수모제의 남성용 재킷과 블레이저(편물제)	16.0	10
54	610342	면제의 남성용 바지(편물제)	16.0	10
55	610343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바지(편물제)	17.5	10
56	610433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 재킷과 블레이저(편물제)	19.0	10
57	610442	면제의 여성용 드레스(편물제)	16.0	10
58	610452	면제의 여성용 스커트와 치마바지(편물제)	14.0	10
59	610453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스커트와 치마바지(편물제)	16.0	10
60	610461	양모나 섬수모제의 여성용 바지(편물제)	16.0	10
61	610462	면제의 여성용 바지(편물제)	16.0	10
62	610463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바지(편물제)	17.5	10
63	61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성용 바지(편물제)	16.0	10
64	610510	면제의 남성용 셔츠(편물제)	16.0	10
65	610520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셔츠(편물제)	17.5	10
66	610610	면제의 여성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브라우스(편물제)	16.0	10
67	610620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브라우스(편물제)	17.5	10
68	610711	면제의 남성용 언더팬츠와 브리프(편물제)	14.0	10
69	610712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언더팬츠와 브리프(편물제)	16.0	10
70	610722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나이트셔츠와 파자마(편물제)	16.0	10
71	610791	면제의 남성용 목욕용가운 ,드레싱가운(편물제)	14.0	10
72	610811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슬립과 페티코트(편물제)	16.0	10
73	6108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여성용 슬립과 페티코트(편물제)	14.0	10
74	610821	면제의 여성용 브리프와 팬티(편물제)	14.0	10
75	610822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브리프와 팬티(편물제)	16.0	10
76	610831	면제의 여성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편물제)	14.0	10
77	610832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편물제)	16.0	10
78	610891	면제의 여성용 네그리제,목욕용가운,드레싱가운(편물제)	14.0	10

No.	HS Code	Items	Base rate	Staging category
79	610892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네그리제,목욕용가운,드레싱가운(편물제)	16.0	10
80	610910	면제의 티셔츠(편물제)	14.0	5
81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티셔츠(편물제)	14.0	10
82	611011	양모로 만든 저지,폴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편물제)	14.0	5
83	611020	면으로 만든 저지,폴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편물제)	14.0	10
84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저지,폴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편물제)	16.0	15
85	611120	면제의 유아용 의류	14.0	10
86	611130	합성섬유제의 유아용 의류	16.0	10
87	611211	면제의 트랙슈트(편물제)	16.0	10
88	611212	합성섬유제의 트랙슈트(편물제)	17.5	10
89	611521	합성섬유제의 팬티호스와 타이츠(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	16.0	10
90	611594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기타의 양말류(편물제)	14.0	10
91	611595	면으로 만든 기타의 양말류(편물제)	14.0	10
92	611596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의 양말류(편물제)	16.0	10
93	6115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타의 양말류(편물제)	14.0	10
94	611710	술,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4.0	10
95	611790	의류나 의류부속품의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제 부분품	14.0	10
96	620111	양모,섬수모제의 남성용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직물제)	16.0	10
97	620112	면제의 남성용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직물제)	16.0	10
98	620113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직물제)	17.5	10
99	620191	양모,섬수모제의 남성용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직물제)	16.0	10
100	620192	면제의 남성용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직물제)	16.0	10
101	620193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직물제)	17.5	10
102	620211	양모,섬수모제의 여성용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직물제)	16.0	10
103	620212	면제의 여성용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직물제)	16.0	10
104	620213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직물제)	19.0	10
105	6202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여성용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직물제)	16.0	10
106	620291	양모,섬수모제의 여성용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직물제)	16.0	10
107	620292	면제의 여성용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직물제)	16.0	10
108	620293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직물제)	17.5	10
109	620311	양모,섬수모제의 남성용 슈트(직물제)	17.5	10
110	620312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슈트(직물제)	17.5	10
111	62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남성용 슈트(직물제)	17.5	10
112	620331	양모,섬수모제의 남성용 자켓,블레이저(직물제)	16.0	10
113	620332	면제의 남성용 자켓과 블레이저(직물제)	16.0	10
114	620333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자켓과 블레이저(직물제)	17.5	5
115	6203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남성용 자켓과 블레이저(직물제)	16.0	10
116	620341	양모,섬수모제의 남성용 바지(직물제)	16.0	10
117	620342	면제의 남성용 바지(직물제)	16.0	10
118	620343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바지(직물제)	17.5	10
119	6203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남성용 바지(직물제)	16.0	10
120	620412	면제의 여성용 슈트(직물제)	17.5	10
121	620413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슈트(직물제)	17.5	10
122	6204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여성용 슈트(직물제)	17.5	10
123	620431	양모,섬수모제의 여성용 재킷과 블레이저(직물제)	16.0	10
124	620432	면제의 여성용 재킷과 블레이저(직물제)	16.0	10
125	620433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재킷과 블레이저(직물제)	17.5	15
126	620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 여성용 재킷과 블레이저(직물제)	16.0	10

No.	HS Code	Items	Base rate	Staging category
127	620441	양모,섬수모제의 여성용 드레스(직물제)	16.0	10
128	620442	면제의 여성용 드레스(직물제)	16.0	10
129	620443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드레스(직물제)	17.5	15
130	620444	재생,반합성섬유제의 여성용 드레스(직물제)	16.0	10
131	6204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여성용 드레스(직물제)	16.0	10
132	620451	양모,섬수모제의 여성용 스커트와 치마바지(직물제)	14.0	10
133	620452	면제의 여성용 스커트와 치마바지(직물제)	14.0	10
134	620453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스커트와 치마바지(직물제)	16.0	10
135	6204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여성용 스커트와 치마바지(직물제)	14.0	10
136	620461	양모,섬수모제의 여성용 바지(직물제)	16.0	10
137	620462	면제의 여성용 바지(직물제)	16.0	5
138	620463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바지(직물제)	17.5	10
139	62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여성용 바지(직물제)	16.0	10
140	620520	면제의 남성용 셔츠(직물제)	16.0	10
141	620530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셔츠(직물제)	16.0	10
142	62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남성용 셔츠(직물제)	16.0	10
143	620620	양모,섬수모제의 여성용 브라우스,셔츠,셔츠브라우스(직물제)	16.0	10
144	620630	면제의 여성용 브라우스,셔츠,셔츠브라우스(직물제)	16.0	10
145	620640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브라우스,셔츠,셔츠브라우스(직물제)	17.5	10
146	620690	그 밖의 방직용섬유제의 여성용 브라우스,셔츠,셔츠브라우스(직물제)	16.0	10
147	620711	면제의 남성용 언더팬츠와 브리프(직물제)	14.0	10
148	620719	10 실크제의 남성용 언더팬츠와 브리프(직물제)	14.0	10
		20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언더팬츠와 브리프(직물제)	16.0	10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남성용 언더팬츠와 브리프(직물제)	14.0	10
149	620791	면제의 남성용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목욕용가운,드레싱가운(직물제)	14.0	10
150	620799	10 실크제의 남성용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목욕용가운,드레싱가운(직물제)	14.0	10
		20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목욕용가운,드레싱가운(직물제)	16.0	10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의 남성용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목욕용가운,드레싱가운(직물제)	14.0	10
151	620811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슬립과 페티코트(직물제)	16.0	10
152	620822	인조섬유로 만든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직물제)	16.0	10
153	620891	면제의 여성용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브리프,팬티,네그리제,목욕용가운,드레싱가운(직물제)	14.0	10
154	620892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브리프,팬티,네그리제,목욕용가운,드레싱가운(직물제)	16.0	10
155	6208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 여성용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브리프,팬티,네그리제,목욕용가운,드레싱가운	14.0	10
156	620920	면제의 유아용 의류(직물제)	14.0	10
157	621040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펠트제,침투,도포한 직물제)	16.0	10
158	621111	남성용 수영복(직물제)	16.0	10
159	621112	여성용 수영복(직물제)	16.0	10
160	621132	면제의 남성용 트랙슈트 및 그 밖의 의류	16.0	10
161	621133	10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Arabian robes	17.5	10
		20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트랙슈트	18.0	10
		90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그 밖의 의류	17.5	10
162	6211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 남성용 트랙슈트,그 밖의 의류	16.0	10
163	621142	면제의 여성용 트랙슈트 및 그 밖의 의류	16.0	10
164	621143	인조섬유제의 여성용 트랙슈트 및 그 밖의 의류	17.5	10
165	621210	10 인조섬유제의 브라지어	16.0	10
		90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브라지어	14.0	10
166	621220	10 인조섬유제의 거들과 팬티거들	16.0	10
		90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거들과 팬티거들	14.0	10

No.	HS Code	Items	Base rate	Staging category
167	621290	10 인조섬유제의 브레이스,서스펜더,가터 및 이들의 부분품	16.0	10
		90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브레이스,서스펜더,가터 및 이들의 부분품	14.0	10
168	621320	면제의 손수건(직물제)	14.0	10
169	621430	합성섬유제의 숄,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직물제)	16.0	10
170	621440	재생,반합성섬유제의 숄,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직물제)	14.0	10
171	621600	장갑류(직물제)	14.0	10
172	621790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직물제)(브래지어,거들,콜렛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4.0	15
173	630130	면제의 모포(전기모포 제외)와 여행용 러그	16.0	10
174	630140	합성섬유제의 모포 (전기모포 제외)와 여행용 러그	17.5	10
175	630231	면제의 그 밖의 베드린넨(날염하지 아니한 것)	14.0	10
176	630391	면제의 커튼,실내용 블라인드,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직물제)	14.0	10
177	630492	면제의 그 밖의 실내용품(편물제 제외)	14.0	10
178	630493	합성섬유제의 그 밖의 실내용품(편물제 제외)	16.0	10
179	630532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	16.0	10
180	630533	기타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포장용 빈포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으로 만든 것)	16.0	10
181	630539	기타 인조 방직용섬유제의 포장용 빈포대	16.0	10
182	630612	합성섬유제의 방수포,천막,차양	16.0	10
183	630710	마루담이포·접시담이포·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14.0	10
184	630790	기타 제품으로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14.0	15
185	640291	발목을 덮는 것 그 밖의 신발(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4.0	20
186	640299	기타 그 밖의 신발(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4.0	20
187	6403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갑피는 가죽제)	24.0	20
188	640359	기타 그 밖의 신발류(갑피와 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	10.0	10
189	640391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바닥은 고무,플라스틱,가죽 갑피는 가죽)	10.0	10
190	640399	기타 그 밖의 신발류	10.0	10
191	640419	기타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4.0	20
192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를 제외)	15.0	20
193	640620	바깥바닥과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15.0	10
194	640690	기타 신발류 부분품	15.0	10
195	650500	10 헤어네트	10.0	10
		20 메리야스나 뜨개질 모자	20.0	15
		91 펠트제 모자	22.0	20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 모자	20.0	10
196	68053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연마물품	8.0	10
197	681280	청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제품	10.5	10
198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을 제외)	15.0	10
199	691490	기타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10.0	15
200	701400	10 유리제의 광학소자	10.0	5
		90 기타(신호용 유리제품, 실드빔 램프 등)	17.5	10
201	701590	10 시계용 유리	17.5	10
		20 편광용 안경유리	18.0	10
		90 기타 유리	12.0	10
202	701919	슬리버,로빙,실,단연사(유리섬유)	10.0	10
203	711311	은제의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20.0	15
204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2.0	0
205	730890	철강으로 만든 기타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4.0	5
206	732290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 이들의 부분품	20.0	15
207	732393	스테인레스강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기타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12.0	10

No.	HS Code	Items	Base rate	Staging category
208	732599	10 철강으로 만든 공업용 주물제품	10.5	10
		90 기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20.0	15
209	732690	10 철강으로 만든 공업용 그 밖의 제품	10.5	10
		90 기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0	5
210	761699	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공업용 그 밖의 제품	10.0	20
		90 기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15.0	10
211	821300	가위,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12.0	10
212	821520	스푼,포크,국자,스키머,생선용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18.0	10
213	830140	비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자물쇠(디지털도어록 등)	14.0	10
214	830890	비금속으로 만든 걸쇠,버클,구슬,스팽글(부분품을 포함)	10.5	20
215	831000	비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소판,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	18.0	10
216	840390	중량난방용 보일러의 부분품	6.0	10
217	84123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의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14.0	5
218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	3.0	5
219	841391	액체펌프의 부분품	5.0	0
220	841480	10 자유 피스톤 가스터빈	8.0	5
		20 이산화탄소 압축기	7.0	10
		30 과급기(슈터차저)	7.0	15
		90 기타(수평면 최대길이가 120cm를 초과하는 후드 등)	7.0	0
221	841490	11 테이크오프나 배출밸브의 leaf	8.0	5
		19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기타 부분품	8.0	0
		20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의 부분품	12.0	10
		90 기타 기체펌프,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후드의 부분품	7.0	0
222	841510	창형이나 벽형의 공기조절기	15.0	10
223	841590	공기조절기의 부분품	10.0	10
224	841899	10 냉장기나 열펌프의 부분품	10.0	10
		91 영하 40도이하의 냉동기나 냉동기기 온도조절기의 부분품	9.5	5
		92 용량 500리터를 초과하고 영하 40도 이상의 냉동기나 냉동기기 온도조절기의 부분품	10.0	10
		99 기타 열펌프의 부분품	10.0	10
225	842091	캘린더기 또는 기타 로울기에 사용되는 실린더	8.0	5
226	842121	10 가정형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	25.0	20
		91 선박 밸러스트 수처리용 여과기나 청정기	5.0	15
		99 기타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	5.0	15
227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10.0	10
228	842131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10.0	20
229	842139	10 가정형 기타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	15.0	PR-35
		21 공업용집진기용 기타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	5.0	0
		22 정전기 여과기와 청정기	5.0	5
		23 농업용 집진기의 여과기와 청정기	5.0	0
		29 사이클론	5.0	15
		30 내연기관 공기정화기	5.0	15
		40 배연탈황설비용 기타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	5.0	0
		50 배연질산제거기용 기타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	5.0	0
		90 기타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	5.0	10
230	842199	10 가정형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	10.0	10
		90 기타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	5.0	0
231	84224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	10.0	10
232	843120	포오크리프트 트럭 및 기타 작업트럭의 부분품	6.0	15

No.	HS Code	Items	Base rate	Staging category
233	843141	버켓, 셔블, 그랩과 그립	6.0	10
234	844319	21 로터리 스크린 직물날염기	10.0	10
		22 평압 스크린 인쇄기	10.0	15
		29 플레이트,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10.0	10
		80 기타 인쇄기	8.0	5
235	844399	10 디지털인쇄기의 보조기기	12.0	10
		21 열감응 인쇄헤드	6.0	10
		29 기타 인쇄기의 부분품	6.0	PR-50
		90 기타 인쇄기의 부속품(드럼, 카트리지 등)	0	0
236	846694	프레스,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의 가공용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6.0	0
237	84733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238	847989	기타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0	0
239	848079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의 기타 주형	5.0	0
240	848490	재질이 다른 것을 셋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기타 가스켓과 유사한 조인트	8.0	15
241	850110	10 완구용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	24.5	20
		91 하우징이 20mm 초과 39mm 미만인 마이크로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	9.0	15
		99 그 밖의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	9.0	15
242	850300	10 제8501.1010호 또는 제8501.1091호 전동기의 부분품	12.0	PR-35
		20 제8501.6420호 또는 제8501.6430호 발전기의 부분품	3.0	0
		30 제8502.3101호 발전기의 부분품	3.0	0
		90 전동기, 발전기, 발전세트, 회전변환기의 기타 부분품	8.0	5
243	850410	방전등이나 방전관용의 안정기	10.0	10
244	850431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그 밖의 변압기	5.0	0
245	850440	13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지형 변환기	0	0
		14 직류 정지형 변환기	7.0	15
		15 교류 정지형 변환기	0	0
		19 기타 정지형 변환기	0	0
		20 무정전 전원장치	10.0	15
		30 인버터	10.0	15
		91 전환 반도체모듈	10.0	5
		99 기타	10.0	15
246	850490	11 제8504.2321호, 제8504.2329호의 변압기 부분품	5.0	15
		19 기타 변압기의 부분품	8.0	15
		20 정지형변환기, 무정전전원장치의 부분품	8.0	15
		90 기타 그 밖의 유도자의 부분품	8.0	15
247	850511	금속제의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7.0	0
248	850519	기타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7.0	10
249	850790	10 연산축전지의 부분품	10.0	10
		90 그 밖의 축전지 부분품	8.0	15
250	851290	전기식의 조명, 신호용기기, 윈드스크린와이퍼, 제상기, 제무기의 부분품	8.0	10
251	851610	10 전기식의 저장식 물가열기	10.0	10
		20 전기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10.0	10
		90 기타 투입식 가열기	10.0	E
252	851631	헤어드라이어	10.0	10
253	851632	전기가열식의 그 밖의 이용기기	35.0	20
254	851660	그 밖의 오븐, 쿠키, 조리판, 보일러링, 그릴러와 로스터	15.0	10
255	851690	10 토양가열기나 전열용 저항체의 부분품	8.0	10
		90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의 부분품	12.0	10

No.	HS Code	Items	Base rate	Staging category
256	851770	10 유선전화용, 유선전신용 교환기의 부분품	0	0
		20 광통신터미널기기의 부분품	0	0
		30 무선전화 핸드셋의 부분품	0	0
		40 무전기의 부분품	8.0	10
		60 광통신레이저수발신기기의 부분품	0	0
		70 제8517호 기기의 안테나의 부분품	2.0	5
		90 기타 통신기기의 부분품	0	0
257	852910	10 레이더기기, 항행용 무선기기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1.5	10
		2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텔레비전수신기기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0	0
		90 기타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2.0	0
258	852990	10 텔레비전 송신기기의 부분품	0	0
		41 특수목적용 기기의 부분품	8.0	PR-35
		42 카메라 모듈의 부분품	12.0	10
		49 기타 송신기기의 부분품	12.0	15
		50 레이더기기와 항행용 무선기기의 부분품	1.5	10
		6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부분품	15.0	10
		81 천연 텔레비전 수신기의 부분품	15.0	E
		82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	15.0	PR-20
		89 기타 수신기기의 부분품	0	0
		90 기타 그 밖의 부분품	0	0
259	853190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의 부분품	0	0
260	853340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	0	0
261	853400	인쇄회로	0	0
262	853590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1,000볼트 이상)	10.0	20
263	853620	자동차단기(1,000볼트 이하)	9.0	5
264	853669	기타 플러그와 소켓(1,000볼트 이하)	0	0
265	853690	기타의 기기	0	0
266	853890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1,000볼트 이하)	7.0	0
267	853931	10 과학용이나 의학용의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	8.0	E
		20 기관차,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용의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	8.0	E
		91 콤팩트형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	8.0	5
		99 그 밖의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	8.0	5
268	853939	10 과학용이나 의학용의 방전램프(자외선 램프 제외)	8.0	E
		20 기관차,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용의 방전램프(자외선 램프 제외)	8.0	E
		90 그 밖의 방전램프(자외선 램프 제외)	8.0	15
269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 포함)와 발광다이오드	0	0
270	854232	메모리	0	0
271	854370	91 금속이나 광산 디텍터	0	0
		92 고주파증폭기	0	0
		93 전기철책에너자이저	10.0	10
		99 그 밖의 전기기기(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0	0
272	854390	그 밖의 전기기기의 부분품	0	0
273	854430	2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세트(자동차의 것)	10.0	15
		9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세트(항공기·선박용의 것)	5.0	15
274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그 밖의 전기도체(1,000볼트 이하)	0	0
275	854470	광섬유케이블	0	0
276	854720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8.0	15
277	854890	기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2.0	20

No.	HS Code	Items	Base rate	Staging category
278	870829	30 자동차용 유리창 레이저(raiser)	10.0	15
		41 자동차용 전기식 썬루프	10.0	PR-10
		42 자동차용 헤드오퍼레이티드 썬루프	10.0	15
		51 자동차 차체 옆면	10.0	20
		52 자동차 문짝	10.0	20
		53 자동차 본넷	10.0	20
		54 자동차 전면 차체	10.0	20
		55 자동차 뒷좌석 차체	10.0	20
		56 자동차 후미 차체	10.0	20
		57 자동차 발판	10.0	20
		59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	10.0	20
		90 차체의 그 밖의 부속품	10.0	PR-10
279	870894	10 제8701호의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6.0	15
		20 제8702.1091호,제8702.9010호의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10.0	15
		30 제8704.1030호, 제8704.1090호의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6.0	15
		40 제8704.2100호, 제8704.2230호,제8704.3100호,제8704.3230호의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10.0	15
		50 제8704.2240호,제8704.2300,제8704.3240호의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10.0	15
		60 제8705호의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10.0	15
		90 그 밖의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10.0	E
280	870899	10 제8701호의 기타 그 밖의 부분품	6.0	10
		21 제8702.1091호,제8702.9010호의 프레임	25.0	20
		29 제8702.1091호,제8702.9010호의 기타 그 밖의 부분품	25.0	20
		31 제8704.1030호, 제8704.1090호의 프레임	6.0	15
		39 제8704.1030호, 제8704.1090호의 기타 그 밖의 부분품	6.0	15
		41 제8704.2100호, 제8704.2230호,제8704.3100호,제8704.3230호의 프레임	25.0	20
		49 제8704.2100호, 제8704.2230호,제8704.3100호,제8704.3230호의 기타 그 밖의 부분품	25.0	20
		51 제8704.2240호,제8704.2300,제8704.3240호의 프레임	10.0	15
		59 제8704.2240호,제8704.2300,제8704.3240호의 기타 그 밖의 부분품	10.0	15
		60 제8705호의 그 밖의 부분품	15.0	10
		91 제8705호의 프레임	10.0	15
		92 제8705호의 트랜스미션 샤프트	10.0	15
		99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	10.0	15
281	871410	모터사이클의 부분품과 부속품[모페드(moped)의것을포함]	30.0	20
282	871680	그 밖의 차량	10.0	10
283	880400	낙하산과 로토슈트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0	0
284	900190	10 칼라필터	8.0	15
		90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	8.0	10
285	900211	10 사진기용의 대물렌즈	8.0	5
		2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치용 대물렌즈	8.0	5
		31 반사식 카메라 단일렌즈용 대물렌즈	15.0	E
		39 기타 용도의 대물렌즈	15.0	10
		90 그 밖의 기타 대물렌즈(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등)	15.0	15
286	900219	10 영화카메라, 영사기용 대물렌즈	15.0	10
		90 기타 그 밖의 대물렌즈	15.0	15
287	900290	기타 각종 재료로 만든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	15.0	15
288	901720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	0	0
289	902121	의치	4.0	0
290	903190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No.	HS Code	Items	Base rate	Staging category
291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손목시계	12.5	10
292	911120	비금속제의 휴대용 시계 케이스	14.0	10
293	911320	휴대용 시계줄,시계밴드,시계팔찌와 그 부분품(비금속제의것)	14.0	10
294	940190	11 자동차 시트 앵글 조절장치	10.0	E
		19 그 밖의 자동차 의자용 부분품	0	0
		90 그 밖의 의자 부분품	0	0
295	940330	사무실용 목제가구	0	0
296	940490	이불,쿠션,푸프,베개 등 침구와 유사한 물품	20.0	15
297	940510	상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	10.0	10
298	940540	10 서치라이트	17.5	10
		20 스포트라이트	17.5	10
		9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10.0	5
299	9405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20.0	15
300	940592	플라스틱제의 것 램프와 조명기기 부분품	20.0	15
301	940599	그 밖의 램프와 조명기기 부분품	20.0	15
302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 인형과 그 밖의 완구,축소모형,각종 퍼즐	0	0
303	95051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0	0
304	950669	기타의 공(골프공과 탁구공 제외)	12.0	10
305	960810	볼펜	15.0	10
306	960820	팁이 펄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21.0	20
307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속에 심을 넣은 것)	21.0	20
308	960990	기타 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15.0	10
309	961511	경화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18.0	10
310	961900	10 냅킨	7.5	E
		20 위생타올(패드),타폰	10.0	10
		90 기타 냅킨라이더와 이와 유사한 물품	14.0	10

* Base Rate(기준세율) : FTA 협상시 기준이 된 관세율로서, 관세철폐 또는 감축의 출발점

* Staging Category(양허유형)

양허유형	내용	비고
0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1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2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PR-1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역외가공허용품목에서 제외
PR-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PR-3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PR-5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E	기준관세율 유지	

중국 인증제도 이해와 활용

▷ 김기현 대표(중국경영인증컨설팅)

비관세 장벽 - 중국 인증 극복방안



(주)중국경영인증컨설팅
China Management & Certification Consulting

www.cmcc.co.kr

Contents



제 1장. 중국 인증 제도의 이해

제 2장. 중국 인증 별 소개

○ 큰대륙 - 중국, 무엇을 느끼십니까 ?

여행

문화제

인구

짜통

제조

저임금



진출기업

경제부상국

안마

이웃나라

인해전술

짜장면

○ 한국기업 -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

看的到

看不到

看不到



인증제도란?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나 수입수량제한 등이 감축 또는 철폐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FTA)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강화

WTO 출범과 함께 TBT협정 체결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 상대국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만드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구분된다. 법정인증제도는 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 및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다시 강제인증과 임의(자율)인증으로 구분된다.



세계의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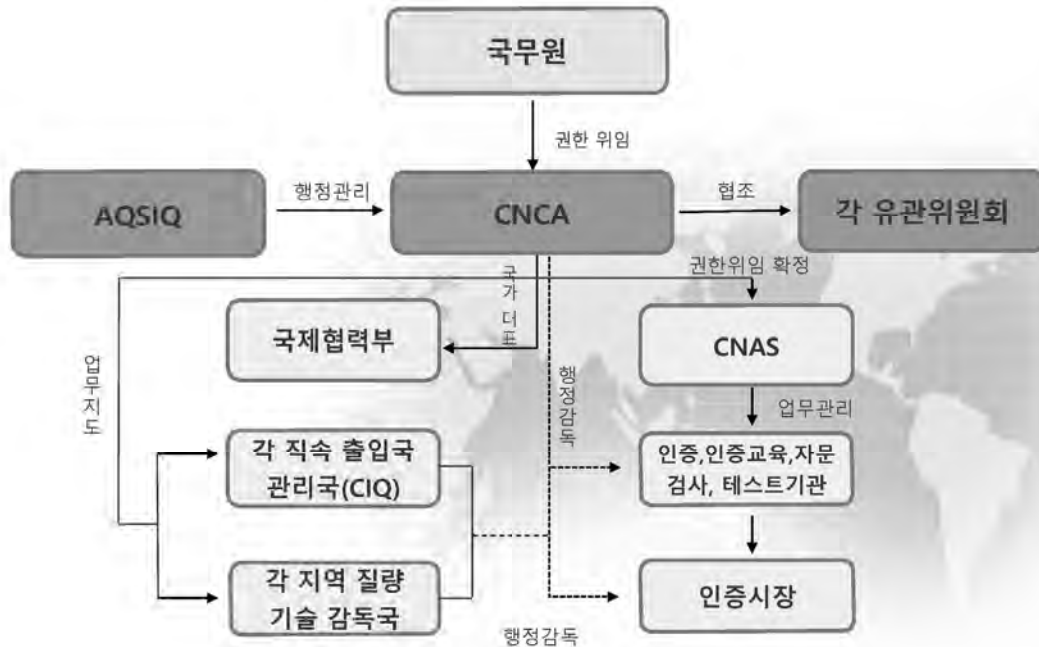


no.	인증 대상	유럽	미국	한국	중국
1	전기 및 공산품	CE	UL	KC	CCC
2	보일러 및 압력용기류	CE	ASME	KS	SEL
3	환경보호 eco-label	Ecolabel	EPA	환경표지	환경보호
4	산업안전 보건	CE	NIOSH	KS	LA

중국의 인증제도



인증조직기구



중국의 인증제도



번호	구분	인증 및 허가 명칭	인증마크	대상범위
1	법정강제	CCC		전기전자 및 자동차류, 페인트, 완구류 등
2		CFDA		중국 일반, 특수용 화장품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3		CCCF		소방제품류(불꽃탐지기, 소화기, 소화약제 등)
4		CSP		세curities제품(금고, 도어락, 경보기, 차량도난방지시스템 등)
5		China EX		MFCs, Valves, Exhaust sensors (Differential pressure sensor), 모터, 가스탐지기 등 방폭제품
6		SEL		압력용기, 보일러, 가스실린더, 엘리베이터, 크레인, 지게차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 기구 등
7		SRRC		무선 통신제품
8		CPA		온도계, 압력계, 가스탐지기, 자동차 가스 배출 측정기 등 모든 계측기
9	자원인증	LA산업안전		안전모 등 생산·제조 생명안전보호제품류
10		China ROHS		통신설비, 컴퓨터 등 전기·전자설비
11		CQC절수절전		LED조명, 전기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 절전제품, 수처리 등 수자원용 설비 등
12		환경보호		도로, 타일, 목조, 가구, 의류, 신발, 도자기, 공기청정기 등 환경보호대상품
13		CQC유기농		유기농 농수산물 및 가공품 등
14		CQC PV		태양광전지, 모듈 등

1	CCC 강제인증
2	CQC 자원인증
	1) CQC 절수절전(에너지절약)
	2) CQC 유기인증(식품)
	3) CQC 환경보호
	4) CQC RoHS
	5) CQC PV 태양광
3	CFDA 의료기기 행정허가
4	CFDA 화장품 위생허가

중국 인증 소개

CCC강제성제품인증 관리규칙

제 2 조 (第二条)

“国家规定的相关产品必须经过认证（以下简称强制性产品认证），并标注认证标志后，方可出厂、销售、进口或者在其他经营活动中使用。”

국가에서 규정한 제품은 반드시 인증(강제성제품 인증)을 진행해야 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한 다음, 공장 출하, 판매, 수입 혹은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인증 소개



- ◆ 정의 • CCC - 중국강제성 인증 - 中国强制性认证
- ◆ 개요
 - 의미 : 유기제품에 대한
 - 시행 일시 : 2003년 8월 1일부터 CCC 제도 전면 시행
 - 소요 기간 : 90 working day
※ 서류준비 및 시험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증서유효기간 : 5년 (연1~2회 사후심사)
※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 연장 신청
- ◆ 허가형식 • 형식시험 + 초기공장심사 + 사후공장심사
- ◆ 주관기관 • CQC - 중국품질인증센터 - 中国质量认证中心
- ◆ 대상품목 총 22개 제품군 (전기전자, 자동차, 페인트, 완구류 등)
Switches, Relays, Motors & Pumps, monitor, Terminal blocks, Motor capacitors 등

중국 인증 소개



CCC 인증 대상 범위

전자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전선 등 21대분류의 170여종 제품이 대상에 해당

01	전선 및 케이블	02	전기 스위치 및 보호기기 or 연결용 전기장치
03	저전압 제품	04	소형 모터
05	전동 공구	06	전기 용접기
07	가정용 혹은 유사 용도 설비	08	AV 설비
09	IT 설비	10	조명 설비
11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량 안전 부품	12	자동차 타이어
13	안전 유리	14	농업 기기
15	라텍스 제품	16	통신 설비
18	소방 제품 (CCCF)	19	안전 방법 제품 (CSP)
20	무선 근거리 통신망 제품	21	장식용 제품(도료 등)
22	완구류 제품	17	의료용기기(2013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됨)

중국 인증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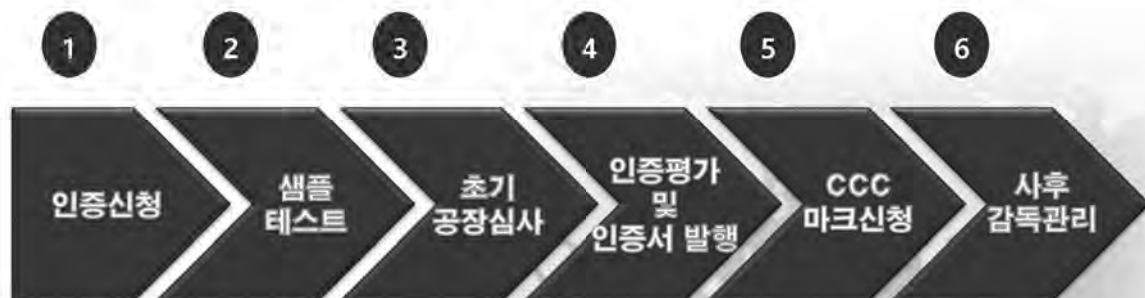
인증대상 판단근거

- CCC 인증 대상 판단
 - CQC 홈페이지 : www.cqc.com.cn
 - CMCC 유선문의 : www.cmcc.co.kr
 - CNCA 홈페이지 : www.cnca.gov.cn
- 인증 대상 판단의 기본 자료
 - 제품의 해당 국제 IEC 표준
 - 제품 명칭 및 용도
 - 기능 및 전기적 사양
 - HS CODE 등

중국 인증 소개



CCC 인증 절차



* CCC 획득 소요 기간: 약 90 Working Days
(제품별 상이 / 테스트 및 공장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중국 인증 소개



CCC 인증 신청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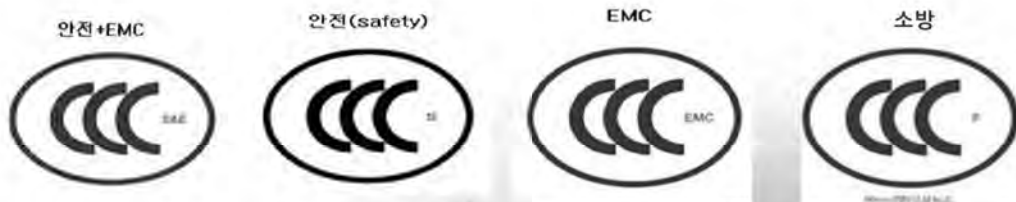


1. CCC 신청서
2. 영문 사업자 등록증
3. 공장 등록증 (생산지 주소지가 다를경우)
4. 공장 심사 조사표
5. 제품 중문 설명서
6. 제품 회로도, 전기 원리도
7. 안전 & EMC 주요 부품 리스트
8. 제품 중문 명판 (NAME PLATE)
9. 기타 (타 기관 인증서 등)

중국 인증 소개



CCC 마크 관리 규정



- 스티커, 인쇄, 각인의 방법을 통해 CCC마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인증서 정지 혹은 철회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없음
- 위조, 변조, 도용된 인증 마크 및 기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인증 마크는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중국 인증 소개



<CCC 인증서>



<CCC 마크 허가서>

중국 인증 소개



- | | |
|---|--------------------|
| 1 | CCC 강제인증 |
| 2 | CQC 자원인증 |
| | 1) CQC 필수절전(에너지절약) |
| | 2) CQC 유기인증(식품) |
| | 3) CQC 환경보호 |
| | 4) CQC RoHS |
| | 5) CQC PV 태양광 |
| 3 | CFDA 의료기기 행정허가 |
| 4 | CFDA 화장품 위생허가 |

중국 인증 소개



CQC 인증 대상 범위

분 류	
001 전자제품 및 부품	002 가전제품
003 전기부품	004 조명전기기기 부품
004 전동공구 및 부품	006 중소형모터 및 부품
007 의료측정기	008 가전제품
009 상업용기계	010 조명제품
011 전선케이블	012 저전압제품
013 자동차부품	014 오토바이 부품
015 타이어류	016 유리류
017 전력시스템 계전보호 및 자동화장치	018 펌프
019 전기에너지 미터기	020 저전압세트설비 및 부품
021 고압설비 및 전기기기	022 발전기 세트
024 태양광(PV)류 제품	025 자동차제품
026 3C증서를 보유한 전선케이블 제품 CQC 품질마크인증	027 시험용 계측, 통제 측량 설비
028 토목 기계 및 부품	103 방직품
108 건축제품	109 위생도기
110 시멘트 제품	116 기계제품

중국 인증 소개



CQC 인증 대상 범위

분 류	
118 사무설비(성능)	123 피뢰제품
125 음향영상제품(성능)	126 경전동차 및 부품
127 전동자동차 및 그 부품	129 베어링 제품
130 RoHS 인증	134 비금속재료 및 부품 성능 인증
135 납축전지	138 학생용품
140 PAHs 인증	160 금속용접, 절삭 및 열처리 설비

● 국내 CQC 인증 획득 주요 품목:

LED컨버터, 비데, 공기청정기, 비금속 재질 인증, 퓨즈, 써멀프로텍트, 캐패시터, 조명 등

● 인증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CCC 강제인증과 동일 (단,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상이)

중국 인증 소개



CQC 마크 종류



<안전&EMC>



<절전인증>



<성능인증>



<중국 RoHS>

중국 인증 소개



CQC 마크 종류



<환경보호인증>



<농산품인증>



<유기농인증>

중국 인증 소개



1) CQC 절수절전(에너지절약)인증

◆ 정의	• CQC절수절전인증_节能节水认证
◆ 개요	• 의미 : 기업 선택에 의한 자율 인증 (중국 정부조달 대상) • 시행 일시: 1998년 10월 시행 • 소요 기간 : 90 working day ※ 서류준비 및 시험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유효기간 : 4년 (연1회 사후심사) ※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 연장 신청
◆ 인증 형식	• 형식시험+초기공장심사+사후심사(샘플채취)
◆ 주관 기관	• CQC- 중국품질인증센터 - 中国质量认证中心(한국:CCICKOREA)
◆ 대상 품목	가전 부품, LED조명, 스위치, 커넥터, 프로텍터, 저 전압 기기, 자동차부품, 완구, 건축제품 등 절전제품 공업 및 도시 수처리, 농업용 배수관개설비 등 수자원용 기기 및 설비

중국 인증 소개



“节能产品政府采购清单”(第十五期)公示通知

에너지 절약 제품 정부 조달 목록 (제 15기) 공 시 통 지

<강제 정부조달 에너지절약제품제도의 통지> 국무원 2007 51호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에너지절약제품 정부조달 목록”을 조정했다.

공포된 “에너지절약제품 목록”(제15기)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f.gov.cn>), 중국정부조달홈페이지(<http://www.ccgp.gov.cn>), 국가발전개혁위원회홈페이지(<http://hzs.ndrc.gov.cn>)와 중국품질인증센터홈페이지(<http://www.cqc.com.cn>)에 공시되었다.

관련 사항 통지:

1. 공시시간 2013년 12월12일~2014년 1월 2일
2. “에너지절약제품목록”중 자동차제품은 당정기관 공무용차량 배치 사용표준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3. “에너지절약제품목록”유관 제조상은 공시기간내 자체적으로 중국품질인증센터 홈페이지(<http://www.cqc.com.cn>)의 “에너지절약제품 정부조달목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상세 내용 <생략>

중국 인증 소개



중국 인증 소개



2) CQC 유기인증

- ◆ 정의
 - OP - 중국 유기인증- 中国有机产品认证
- ◆ 개요
 - 의미 : 유기인증을 통한 중국내 시장진입과 품질안전의 보장
 - 시행 일시 : 신규정 2014년 4월 1일 실시
 - 소요 기간 : 약 90 working day
 - ※ 서류준비 및 시험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증서유효기간 : 1년 (연 최소 1회 현장검사)
 - * 증서 만기 최소 3개월전 갱신 신청
- ◆ 인증형식
 - 서류심사+ 원산지 심사+샘플링테스트 + 사후감독심사
- ◆ 주관기관
 - CQC-중국품질인증센터- 中国质量认证中心(한국 : CMCC대행)
 - CNCA-중국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国家认监委
 - CIQ- 출입국검험검역기구-出入境检验检疫机构(수입품)
- ◆ 대상품목
 - 유기제품인증목록(有机产品认证目录)에 포함된 120여 제품
 - 곡물,야채,과일,식물성오일류,견과류,향신료,제당 및 기타식물,식용약재,가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가공식품,유제품,사료,술,방직류 등

중국 인증 소개



◆ 유기인증 절차



중국 인증 소개



3) CQC 환경보호인증

◆ 정 의

• 환경보호인증_环保标志认证

- 의미 : 기업 선택에 의한 자율 인증 (중국 정부조달 구매대상) 유사 제품보다 독성과 유해성이 적고 에너지절약 등 환경적 우위에 있는 제품을 인증해주고 정부조달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환경마크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촉진

◆ 개 요

- 시행 일시 : 1993년 3월 시행
- 소요 기간 : 약 90 working day
※ 서류준비 및 시험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유효기간 : 3년 (연1회 사후심사)
※ 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 연장 신청



◆ 허 가 형 식

- 형식시험+초기공장심사+사후심사(샘플채취)

◆ 주 관 기 관

- CQC- 중국품질인증센터 - 中国质量认证中心(한국 : CMCC대행)
- CEC-중국연합인증센터유한공사-中环联合 (北京) 认证中心有限公司

◆ 대 상 품 목

가전, 생활용품, 건축용자재, 사무용품 등 80여개 품목 화학제품(도료, 잉크, 접착제, 에어로졸), 건축용자재(문, 창문, 마루, 벽지등), 신발및방직품,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가스및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냉장고, 소형컴퓨터, 모니터, 변압기, 복사기등), 난방기류, 실내용가구류, 소형자동차, 플라스틱류(완구 등)

중국 인증 소개



环境标志产品政府采购清单（第十三期）公示通知 환경마크제품 정부조달목록(제13기)공시통지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 환경보호부는 “환경마크제품의 정부조달목록”(이하 “환경 보호목록”)을 조정했다.

공포된 “환경보호목록”(제13기)은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f.gov.cn>), 중국정부조달홈페이지(<http://www.ccgp.gov.cn>),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홈페이지(<http://www.mep.gov.cn>), 중국녹색구매홈페이지(<http://www.cgpn.org>)에 공시되었다.

관련 사항 통지:

1. 공시시간 2013년 12월12일~2014년 1월 2일
2. “에너지절약제품목록”중 소형동차제품은 당정기관 공무용차량 배치 사용표준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3. “환경보호목록”유관 제조상은 공시기간내 자체적으로 중국 녹색구매홈페이지(<http://www.cgpn.org>)의 “환경마크제품 정부구매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상세 내용 <생략>

중국 인증 소개



4) CHINA RoHS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 工业和信息化部 第 39 号

第三条

设计、生产、销售以及进口过程中，标注有毒、有害物质或元素名称及其含量，标注电子信息产品环保使用期限等措施。

禁止进口不符合电子信息产品有毒、有害物质或元素控制国家标准或行业标准的电子信息产品

중화인민공화국 공업과정보화부 제 39 호 공고

제3조

설계,생산,판매 및 수입과정 중, 반드시 유독유해물질 혹은 원소의 명칭, 함량 및 환경사용기한 등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정보제품 유독유해물질 혹은 원소 관리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자정보제품은 수입을 금지한다.

◆ 정의

- China RoHS 자기성명 & 자율인증
电子电气产品污染控制自我声明及自愿认证

◆ 개요

- 의미 : 중국 시장 진입 시, 제품 품질 보증 자기성명 및 인증에 의한 품질 증명
- 시행 일시 : 2007년 3월 1일(자기성명)
2011년 11월 1일 (자율인증)
- 소요 기간 : 인증기간(10~90workingday)
※ 서류준비 및 시험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증서유효기간 : 1년/3년
※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 연장 신청



◆ 인증형식

- 자기성명: 형식시험+부합성성명
- 자율인증: 형식시험+공장심사+사후심사(연1회)



◆ 주관기관

- CQC - 중국품질인증센터 - 中国质量认证中心(한국:CCICKOREA)

◆ 대상품목

- 자기성명: 전기전자제품
- 자율인증: <<목록>> 제품
반도체 재료, 컴퓨터, 핸드폰 등

China RoHS의 인증 취득 이점

1. 전기·전자제품 폐기처분 세금 우대 정책 확보
2. 중국 바이어 요구 만족
3. 사후감독 샘플링 검사 시 적발 확률 감소
4. 통관 문제 해결
5. 제품의 브랜드 가치 및 신뢰도 상승
6. 기업의 유해물질 관리 능력 상승



중국 인증 소개



5) PV 태양광 인증

- ◆ 정의 • CQC태양광PV인증_光伏认证
- ◆ 개요 • 의미 : 중국 정부의 “금태양 프로젝트” 및 중국 태양광 발전소 특
허권 입찰에 가능하고, 중국 정부 주최의 대형 태양광 발전
소 프로젝트 참여 근거.
• 시행 일시 : 2009년 7월 <태양광모듈인증 실시규정> 발표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서류준비 및 공장심사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증서 유효 기간 : 4년 (연1회 사후심사)
※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 연장 신청
• 특이사항: 정부 보조금 정책 시행
- ◆ 허가형식 • 형식시험+초기공장심사+사후심사
- ◆ 주관기관 • CQC- 중국품질인증센터 – 中国质量认证中心(한국 : CMCC)
- ◆ 대상품목 • 결정계 실리콘 지상용 태양전지 모듈, 컨트롤러, 인버터, 컨트롤러-
인버터 일체기, 지상용 박막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태양광정션박스
등

중국 인증 소개



PV 인증 대상 범위

제품명	인증규격
결정계 실리콘 지상용 태양전지 모듈(Crystalline Silicon Terrestrial Photovoltaic)	GB/T 9535 or IEC61215:2005
	IEC61730-2:2004
컨트롤러(Controller), 인버터(Inverter) 컨트롤러-인버터 일체기(Controller-Inverter One Machine)	GB/T19064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Photovoltaic(PV) Stand-alone systems)	IEC62124
지상용 박막 태양광 모듈(Thin-film Terrestrial Photovoltaic(PV) Modules)	GB/T18911 or IEC 61646
	IEC 61730-2
계통 연계형 인버터 (Utility-interconnected Inverter)	GB/T 19939
	IEC62109-1
	IEC62116
	CNCA/CTS0004
태양전지 (Solar Cell)	GB/T 22473-2008 /IEC61427

중국 인증 소개



太阳能产品认证证书

证书编号: CQCXXXXXXXXXX

申请人名称及地址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制造厂名称及地址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生产厂名称及地址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产品名称和系列、规格、型号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产品标准和技术要求

XXXXXXXXXXXXXXXXXXXX

认证模式

产品型式试验+初次工厂检查+获证后监督

上述产品符合CQCXXXXXXXXXX-2011认证规则的要求, 特此认证。

发证日期: XXXX年XX月XX日 有效期至: XXXX年XX月XX日

证书有效期内本证书的有效期按获证后的定期监督保持



主任:

张强



中国质量认证中心

中国·北京·海淀区西四环100070 P.R.China
http://www.cqc.com.cn



SOLAR PRODUCT CERTIFICATE



President:

张强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Section F, No.100, Haidianmen Xilu, Beijing 100070 P.R.China
http://www.cqc.com.cn

중국 인증 소개



1

CCC 강제인증

2

CQC 자원인증

1) CQC 절수절전(에너지절약)

2) CQC 유기인증(식품)

3) CQC 환경보호

4) CQC RoHS

5) CQC PV 태양광

3

CFDA 의료기기 행정허가

4

CFDA 화장품 위생허가

중국 인증 소개



CFDA 의료기기 행정허가

CFDA (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는 중국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한국 식약처와 유사함. 중국 내 수입의료기기 중 SFDA의 대상제품은 허가 취득 후 시장판매가능. 중국 내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시(市) 급 이상의 행정기관의 식품약품 감독기관이 각 관할 지역내의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국 (CFDA)
홈페이지: www.cfda.gov.cn



중국 인증 소개



■ 의료기기 대상 범위

- 중국 내에서 판매 및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 신청
- 미등록 의료기기는 시장 판매 및 사용 불가

■ 의료기기 사용목적

-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간호, 완화
- 상해 또는 장애 상태의 진단, 치료, 간호, 완화, 보충
- 해부 또는 생리과정 연구, 대체 또는 조절
- 피임 조절

■ 의료기기 분류등급

등급	정 의	관리감독 기관
1등급	통상적인 규정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 에서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2등급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관리(제어기능)가 요구되는 의료기기	
3등급	생명 연장 또는 유지에 사용되거나 인체에 삽입 또는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의 관점 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기기	

중국 인증 소개



허가 절차



중국 인증 소개



1	CCC 강제인증
2	CQC 자원인증
	1) CQC 절수절전(에너지절약)
	2) CQC 유기인증(식품)
	3) CQC 환경보호
	4) CQC RoHS
	5) CQC PV 태양광
3	CFDA 의료기기 행정허가
4	CFDA 화장품 위생허가

중국 진출 로드맵



(1) 상표등록

- ▶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나 상표를 중국내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한 절차
- ▶ 효과 : 브랜드 도용 방지 및 무형자산가치 제고
- ▶ 시기 : 일반적으로 중국진출을 확정된 초기단계에서 진행

(2) 위생허가

- ▶ 중국 내 판매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생허가 취득 (강제성)
- ▶ 분류 :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위생허가증(일반화장품)
수입 특수용도화장품 위생허가증(기능성화장품)

(3) 중문라벨심사

- ▶ 위생허가와 함께 중국수출을 하기 위한 필수 절차
- ▶ 효과 : 라벨심사 결격 리스크(반송, 폐기, 행정처분) 감소
- ▶ 시기 : 위생허가 허가증 제작단계 실시

(4) 신용조사

- ▶ 수입상 혹은 바이어 측 신용조사
- ▶ 필요성 : 재무상태 및 거래처의 부실도와 부실경영 사전확인을 함으로써 손실예방

(5) 수출계약

- ▶ 수출계약서 작성
- ▶ 주의사항 : 계약서 내용 부실 -> 최근 몇년간 법적대응 사례 급증
- ▶ 대응책 :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지도를 통한 계약서 작성 요망

(6) 한국 수출절차

- ▶ 수출서류 준비 → 선적의뢰 및 운송 → 수출통관 → 선적

(7) 중국 수입통관

- ▶ 관세 : 일반화장품 6.5~10%, 특수용도화장품 / 색조화장품 10%
- ▶ 증치세(부가가치세) : 17%
- ▶ 소비세 : 특수용도화장품, 색조화장품에 30% 부가

상표등록 개요



필요성

- ▶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나 상표를 중국내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한 절차

진행시기

- ▶ 일반적으로 중국진출을 확정된 초기단계에서 진행

진행절차

- ▶ 상표예비검색(1~3일) → 자료신청 → 상표형식심사(3개월) → 상표 접수통지서 발급 → 상표실질심사(12개월) → 상표공고(3개월) → 등록증 발급
- ▶ 등록신청 예상소요기간은 18개월이지만 실제로 2~3년 소요

준비서류

-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혹은 신청인의 여권사본
- ▶ 사업자등록증 혹은 여권사본 중문번역본
- ▶ 상표등록 신청서
- ▶ 적용하려는 서비스 혹은 제품 분류
- ▶ 기타 : 수권 위탁서

소요비용

- ▶ 관납료(행정비용) 1,000위안 / 건
- ▶ 대행료(컨설팅비) 1,000~5,000위안 / 건 (중국현지기준)

보호기간

- ▶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만료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통해서 10년간 보호기간 연장 가능.
- ▶ 연장비용 : 2,500위안 / 건 (관납료)

중국 상표의 개요와 특성



중국 상표의 정의 및 분류¹⁾

- 상표는 기업의 브랜드 혹은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브랜드 혹은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중국정부는 상표국의 중국정부는 상표국의 기준을 거쳐 등록된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중국상표법 및 관련규정은 화장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상표의 종류는 구성, 사용대상, 용도에 따라 분류됨.

<상표분류>

분류기준	상표종류
구성	문자상표, 도형상표, 자모상표, 숫자상표, 3D상표, 색상조합상표, 복합상표
사용대상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용도	영업상표, 증명상표, 등급상표, 파생상표, 예비상표, 방어상표, 연합상표

<중국상표예시>

Dior
迪奥

强生® 婴儿
Johnson's
baby

珀
苑

雪花秀
Sulwhasoo

1) 출처 : 중국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상표의 개요와 특성



상표표기

- 일반적으로 상표를 표기할 때 오른쪽 상단 혹은 하단에 “등록상표” 표시를 하는데 중국도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표기를 함. 이는 해당상표가 정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었음을 의미함.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됨.



- TM표기는 해당 상표가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반드시 이미 등록된 상표임을 나타내지는 않음. 보통 상표등록을 진행 중인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보호기간 및 연장신청

- 상표는 일단 등록되면 배타적 권리로 보호를 받는데, 1차 보호기간은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기간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10년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연장시 개당 2,500RMB의 행정비용을 상표국에 납부해야 됨.
또한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중국 상표의 개요와 특성



금기사항²⁾

중국 상표법은 아래 사항을 금기사항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가휘장, 훈장 및 이와 유사한 것, 정부국가기관의 명칭과 관련물의 명칭, 도형 및 이와 유사한 것.
- 외국 국가명칭, 국기, 국가 휘장, 군기 및 이와 유사한 것. 단, 해당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존의 것과 유사한 명칭, 깃발, 표지. 단, 해당기관의 동의를 얻었거나 대중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제외함.
- 적십자의 명칭, 표식 및 이와 유사한 것.
- 민족을 경멸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
- 과대선전 및 사기성의 내용을 포함한 것.
- 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해할 수 있거나 기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 현(縣)급 이상의 행정단위 명칭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외국지명은 상표로 할 수 없음. 단,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집단상표로 사용될 시에는 가능함.
- 단체상표는 단체, 협회, 기타 조직명칭의 상표를 의미하는데, 해당조직의 구성원이 사용할 시에는 해당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용함을 명시해야 함.
- 제품의 도형, 제품 번호.
- 상품의 질량, 주요 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것.
- 명확한 특징이 없는 것.
- 아직 등록되지 않은 외국상표를 모방, 복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우.

2) 출처 : 중국상표법 제1장 10, 11, 12, 13조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상표의 개요와 특성



상표제작원칙

- 상표 명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상표법 등 중국법규에 만족해야 함.
- 1) 알기 쉽고, 읽기 쉽고, 쉽게 기록하고, 쉽게 식별이 가능해야 함. 예를 들어 이미 없어진 고문자를 쓴다거나 문장이 너무 긴 표현은 피해야 함.
- 2) 제품 혹은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 중요사항을 표시해야 함.

명칭	제품의 주요 특징	세부 설명
贵州茅台酒 (귀주 마오타이주)	생산지 강조	귀주라는 지명과 제품명의 결합
古汉养生精 (고한양생정)	기술 강조	고대 한나라부터 내려오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
白丽牌香皂 (미백비누)	제품 효용성 강조	희고白 아름답다丽라는 글을 활용 효용성을 강조한 예
垦得机有机大米 (유기농 쌀)	제품 품종 강조	유기有机라는 말을 붙여 품종을 강조한 예

- 3) 상표명칭과 제품 혹은 서비스의 실제 내용이 상호 부합해야 하며 상호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됨.
- 4) 대중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상표를 작성해야 함.

명칭	호감도 상승요인
中意(중의)	자동차 브랜드 명칭으로 이탈리아를 의미하는 意를 삽입하여 이탈리아 기술을 도입했다는 것을 암시하여 기술에 대한 신뢰도 상승을 꾀함.

상표등록 절차



(1) 예비상표검색

▶ 상표예비검색은 신청 전에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임. 대행회사를 통해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 대행회사가 진행. 상표국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도 가능

(2) 상표신청

▶ 자료 준비 후 신청

(3) 형식심사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됨

(4) 접수통지서발급

▶ 형식심사 통과시 상표접수통지서 발급. 미통과 시 수정 후 재접수

(5) 실질심사

▶ 상표의 실질심사는 신청한 상표가 상표법 규정에 부합되는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등록과 기각을 결정하는 심사과정으로 약 12개월 정도 소요됨.

(6) 공고

▶ 실질심사 통과후 상표국에서 발행하는 《상표공고商標公告》에 초보 심사 공고를 해야 됨.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거나 이의 제기 후 이의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상표등록 효력발생.

(7) 등록증 발급

▶ 공고 후 별도의 이의가 없거나 재심 후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증 발급.

중국 상표의 개요와 특성



신청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하나의 신청서에는 하나의 상표만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에 기입한 상표와 첨부한 도안의 명칭이 일치해야 함.
- 상품 명칭란에는 반드시 통용되는 상품 명칭을 적어야 되고, 하나의 상품에 두 개 이상의 통용명칭이 있을 경우 부가 설명이 필요함.
- 상품분류가 어려운 경우, 그와 관련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기술 표준란에는 반드시 실제집행의 표준을 기입해야 하며, 기술표준이 없는 경우 부가 설명이 필요함.
- 신청인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성명과 일치해야함.(사업자일 경우)
- 주소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실제주소를 기입해야 함.
- 상표 등록시 제출하는 도안은 반드시 명확하고 선명해야 됨. 중국어 병음(발음부호)을 표기할 경우, 반드시 표준 병음을 표기해야 함. 도안의 크기는 3cm 이상 10cm 이하로 규정하며, 원형상표도안의 경우 5cm 이상이어야 함.
- 상표도안은 딱딱한 재질, 비닐 재질 혹은 붙일 수 없는 재질은 사용할 수 없음. 필요할 경우 사진으로 대체 가능. 추상디자인, 문자가 없는 도안, 너무 간단하거나 복잡한 경우 설명을 추가함.
- 상표등록 신청시 상표국 혹은 지방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수량의 도안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중국 상표의 개요와 특성



신청과정 유의사항

- 상표등록 신청과정 중 아래 단계에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해야 함.
 - * 실질 심사시 신청 기각
 - * 공고기간 중 이의 제기
 - * 등록증 발급이후 상표 분쟁 발생
-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통해 상표등록을 했을 경우 상표국은 해당 상표를 취소함.
- 등록신청기간은 18개월이지만, 실제 소요기간은 약 2~3년 정도임.
- 신청인이 상표국의 기각에 불복할 경우 상표국의 상표기각통지서를 받은 15일 이내에 상표국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됨. 상표신청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2번 신청을 연기할 수 있는데, 매번 30일을 넘을 수 없음.
- 재심 신청시 기각상표 재심신청서 1부, 반환된 상표신청서와 도안을 상표심사위원회에 제출함.
- 기각된 상표의 재심시 해당 상표를 그대로 제출해야하며, 만약 도안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재심시 재심신청서정부본 각 1부, 상표도안 5부와 기타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함.
- 상표등록인이 상표국의 상표취소결정에 불복할 경우 반드시 취소결정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상표국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2번 신청을 연기할 수 있으며, 매번 30일을 넘을 수 없음. 재심심사 신청시 상표재심심사신청서 1부와 도안 5부를 함께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중국 상표의 개요와 특성



갱신시 유의사항

- 상표변경신청, 이전, 말소, 연장의 경우에는<상표등록증>을 반납해야 됨.
- 등록인의 명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연장, 자료 보충의 경우에는 상표국에 도안 5부를 제출해야 됨.

보호기간 및 연장신청

- 상표국이 신청을 기각 했을 경우, 사용했던 신청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등록된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표 비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분쟁신청심사를 요청해야 함.
- 쟁의심사 신청시 상표쟁의심사신청서 정부본 각 1부와 관련 증명자료를 함께 심사위원회에 제출함.

중국 상표의 개요와 특성



분류기준	상표종류 및 예시	세부 설명	분류기준	상표종류 및 예시	세부 설명
구성에 따른 분류	<문자상표> 	■ 문자로 구성된 상표, 중국어와 소수 민족문자, 외국문자 및 아라비아숫자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표		<숫자 상표> 	■ 아라비아숫자, 로마숫자 혹은 중국어 숫자를 이용한 상표
	<도형상표> 	■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		<3D상표> 	■ 입체상표, 길이와 넓이, 높이를 가진 입체물로 구성된 상표, 2001년 수정된 <상표법>에 추가된 사항
	<자모 상표> 	■ 병음문자, 자모, 주음부호, 열어가모, 라틴어 자모의 최소단위를 이용한 상표		색상조합상표 	■ 두 개 이상의 색상의 배열 혹은 조합으로 구성된 상표
				복합 상표 	■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종류의 상표 중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복합 상표라고 함.

■ [자료출처]KEII

■ [자료출처]KEII

중국 상표의 개요와 특성



분류기준	상표종류 및 예시	세부 설명	분류기준	상표종류 및 예시	세부 설명
사용대상에 따른 분류	상품 상표 	■ 상품상표는 상품에 표기하는 상표로 가장 흔한 상표의 종류인 생산자 상표와 유통자 상표로 나누기도 함		증명상표 	■ 원산지, 원료, 제조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상표로, 순양모표지, 진피표지 등이 이에 속함
	서비스 상표 	■ 서비스상표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로 항공, 여행, 보험, 금융, 호텔 등에 사용하는 것을 가리킴.		등급 상표 	■ 질량, 규격, 품질 등 등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를 가리킴.
	단체 상표 	■ 단체, 협회 혹은 기타 조직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함. 해당조직의 구성원이 활동 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직의 성원임을 표시해야 함.		파생 상표 	■ 원형상표를 기준으로 각종 문자나 도형을 재조합, 구성하여 사용하는 상표로 한 기업의 다양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용도에 따른 분류	영업 상표 	■ 생산자, 경영자가 특정한 상표를 제조물 혹은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함.			

■ [자료출처]KEII

■ [자료출처]KEII

CFDA 화장품 위생허가 개요



분류

- ▶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허가증(일반화장품)
- ▶ 수입 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허가증(특수화장품)

진행절차

- ▶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선정* → 수권위임서작성 및 비안 → 검측 → 비준신청 → 심사+비준(특수용도) → 등록증 발급

준비서류

- ▶ 신청서, 제품 명칭 명명 근거, 제품처방, 제품 품질안전 관리 요구, 제품 원포장, 검측보고서,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 재중국책임회사 위임서 사본 및 영업집조 사본, 광우병관련 승낙서, 생산국 또는 원산국의 자유판매 증명 서류, 샘플+(특수용도), 효능 성분과 사용근거, 공정에 대한 설명과 공정도

※ 재중국신고책임회사

- 위생허가신청시 반드시 중국 내 설립된 법인을 중국 내 책임회사로 선임하도록 함.
- 역할 : 수입 화장품의 중국 내 위생허가신청에 대한 책임회사로 위생허가증 신청 및 연장시 법인대표의 서명이 필요함.
- 책임 : 중국 내 위생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주관기관

-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는 2013년 3월22일 CFDA로 변경

CFDA 화장품 위생허가 개요



■ 비특수용도화장품 위생허가증 견본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凭证

등록번호 → 国妆备进字J20148

化妆品公司:

根据《化妆品卫生监督管理条例》及其实施细则有关规定, 对你单位的以下产品予以备案, 备案有效期至2018年10月7日。

제품명	产品名称	中文	面膜贴
		英文	AVOCADO
신청기업	生产企业	中文	化妆品公司
		英文	COSMETIC CO., LTD.
생산국(지역)	生产国(地区)	韩国	地址: Korea 040
		名称	商贸有限公司
재중신고책임회사	在华申报责任单位		地址:

备注

请予附件有效期届满4个月前提出延续申请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未组织对本产品卫生安全性进行技术审核, 本备案凭证不作为对产品卫生安全质量的认可。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二〇一四年八月八日
化妆品许可专用章 No. 14005161

Tip : 위생허가 취득후 반드시 컨설팅업체로부터 모든 신청서류 스캔본 수령

☞ 유의사항 : 증서상 신청한 정보 (모델명, 주소 등) 가 동일하지 반드시 확인, 만약 오타가 있을 경우 CFDA 증서재발급 요청

CFDA 화장품 위생허가 개요



개념정의

■ 중국화장품위생허가등록(비준)절차 :

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은 중국정부산하<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화장품의 수입적합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여야만 중국으로의 수입이 가능한데, 이 절차를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비준)절차라고 함.

■ 특수용도화장품 :

중국정부는 화장품 중 위생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발모제류 등 9개 분류를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 10조에 명시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음.

■ 비특수용도화장품 :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10조에 명시되지 않은 화장품 분류를 통칭하여 비특수용도화장품 혹은 일반화장품이라고 함.

유의사항 : 허가증 미취득한 수입화장품 및 국산특수용도화장품은 중국시장에서 판매 금지.
통관시 위생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제품이 압류되거나 반송 조치됨.

CFDA 화장품 위생허가 개요



■ 수입화장품 심의제도

CFDA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화장품감독관리소

화장품위생허가관리, 화장품위생허가규범
화장품 위생기준·기술규범
화장품 新 원료의 사용·국산특수용도화장품의
생산·화장품 최초 수입 심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화장품 위생감독관리

SAIC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광고감독관리소

화장품 광고관리

CIQ 수출입검험검역국

▶ 지방 수출입검험검역국(CIQ)

화장품 수입상 등기관리
통관검역검사
화장품라벨심사 및 품질검사

AQSIQ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수출입 화장품의 검사감독

수출입 화장품의 감독관리 : - 원료생산 - 세관검사 감독

화장품 심의제도란,

화장품 新원료, 특수용도화장품, 수입화장품 등에 대한 심사 및 비준 등 행정인허가 업무를 뜻함.
「화장품행정허가신청처리규정」 제2조

심의를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 또는 판매 할 경우,제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5배의 벌금부과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26조

CFDA 화장품 유형분류



■ 비특수용도 화장품 – 5가지 분류 (등록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비고
헤어류	일반헤어제품	헤어오일, 포마드, 헤어로션, 헤어토닉, 헤어젤	
	안부 접촉제품	샴푸류, 린스류, 스프레이류, 일시 분사, 헤어컬러(비염모제)	
기초 화장품류	일반 기초화장품	크림류, 로션류, 오일류, 화장수류, 목욕류	
	안부 접촉제품	아이케어류, 팩류, 클렌징폼	
메이크업류	일반 메이크업	파운데이션류, 컴팩트류, 연지류, 바디페인트류	
	아이 메이크업	아이브로우, 섀도우류, 마스카라류, 아이리무버	
	립케어&립메이크업	립케어류, 립글로스류, 립스틱류, 립펜슬류	
네일류		탑코트류, 네일칼라, 아세톤류	
방향류		방향제류	

※ 특수용도화장품과는 달리 법규에 명시된 분류규정은 없음. 편의상 통상적인 분류기준 적용

CFDA 화장품 유형분류



■ 특수용도 화장품 – 9가지 분류 (등록허가제)

대분류	내용	비고
육모(育发)류	모발성장, 탈모와 斷毛의 감소 기능 제품	
염모(染发)류	모발색상을 변경 기능 제품	영구(일시)적 염색제
퍼머(烫发)류	모발의 형태의 변형과 유지 기능 제품	
탈모(脱毛)류	체모감소 및 제거 기능 제품	
미유(美乳)류	가슴 미용제품	
건미(健美)류	체형 교정 및 다이어트 기능 제품	
건미(健美)류	냄새 제거 기능 제품	
기미제거(雀斑)류	피부표피의 색반 감소 및 제거 기능 제품 피부미백 및 증백에 유리한 화장품	
일소방지(防晒)류	자외선 흡수 및 피부보호 기능 제품	

수입 비특수용도 등록절차



수입 특수용도 등록절차



단계별 제출서류



구분	1. 위임장 안전비준	2. 제품검사	3. 평가심사	4. 증서발급
구비서류	1. POA	1. 검사신청표	1. 심사신청표	
	2. LOA	2. 검사용 샘플	2. 제품 중문 명명근거	
	3. 쌍방 날인 진실성 공증	3. 제품성분표	3. 제품성분표	
	4. 위임장 중문번역 및 공증	4. 사용설명서	4. 제품 생산공정	
			5. 제품품질안전관리요구	
			6. 제품 포장 및 번역	
			7. 제품 검사보고서	
			8. 안전위험평가보고	
			9. 위임장 사본 및 재중국책임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BSE (광우병) 검역증명서	
			11. 제품 판매증명서	
			12. 미개봉 견본	
			13. 제품기술요구	

중국 수입통관 절차



중국 관세정책



중국 관세정책의 일반원칙

- 중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 정책은 재정관세 정책과 보호관세 정책의 복합형 정책으로 국가의 대외개발 정책을 장려하고, 수출과 필수품의 수입 확대를 장려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보호·촉진하면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방향임.
- 중국의 관세 정책은 아래의 원칙과 같음
- 수입국가와의 관계 유지와 국민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동식물의 우량종, 비료, 사료, 약제, 정밀측정기, 측량기, 기계설비와 식량 등은 면세이거나 세율이 낮음.
- 원재료의 수입세율은 일반적으로 완제품이나 완제품보다 낮으나, 자연조건과 계약을 받거나 국내 생산 발전이 단기간에 어려운 원재료는 그 세율을 더욱 낮게 책정함.
-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기계설비와 측량기의 부속품, 조립 부품의 세율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함.
- 국내에서 이미 생산되어 지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의 비 필수품은 세율이 비교적 높게 책정함.
- 국내에서 보호해야 하는 상품이나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상품의 세율은 훨씬 높게 책정함.

❏ 화장품 관세 및 세금

- 관 세 : 현재 화장품에 대한 관세는 6.5%~15%사이에서 책정되고 있음.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6.5%~10%, 특수용도화장품, 색조화장품의 경우 10%의 관세가 부과됨.
- 증치세 : 우리나라의 부과세와 같은 개념.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제한 차액에 세율을 부과함. 예) (매출금-매입금)*17%=납부해야 될 세금
- 소비세 : 소비세는 1994년부터 신설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유통되는 소비품 혹은 소비 행위에 부과함. 현재 화장품에는 비특수화장품에는 부과가 안되고 특수용도 화장품, 색조화장품에만 부과되고 있음. 세율은 30%임.

■ [자료출처]KEII

중국 식품 인증 제도 및 라벨 소개



Passion	고객을 위한 열정이 있습니다.
Respect	고객 존중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Innovation	맞춤형 혁신적 차별화를 제공합니다.
Decision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갖도록 해드립니다.
Execution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화장품·식품 중국 수출의 길
CMCC가 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동향



중국 시장동향



- 대상제품: 모든 식품가공제품
- 제외상품: 현장에서 만들어 판매되는 식품, 신선식품(냉동식품, 조미료 및 장류 등 제외), 음료, 술, 생수
- 1월 1일 이전에는 권장사항이었으나 1월 1일부터 엄격히 적용됨.
- 반드시 중문으로 표기해야
- 일부 수입제품은 영양성분을 영문으로만 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반드시 중문으로 표기해야 함.

식품(케이크) 영양분석표 표기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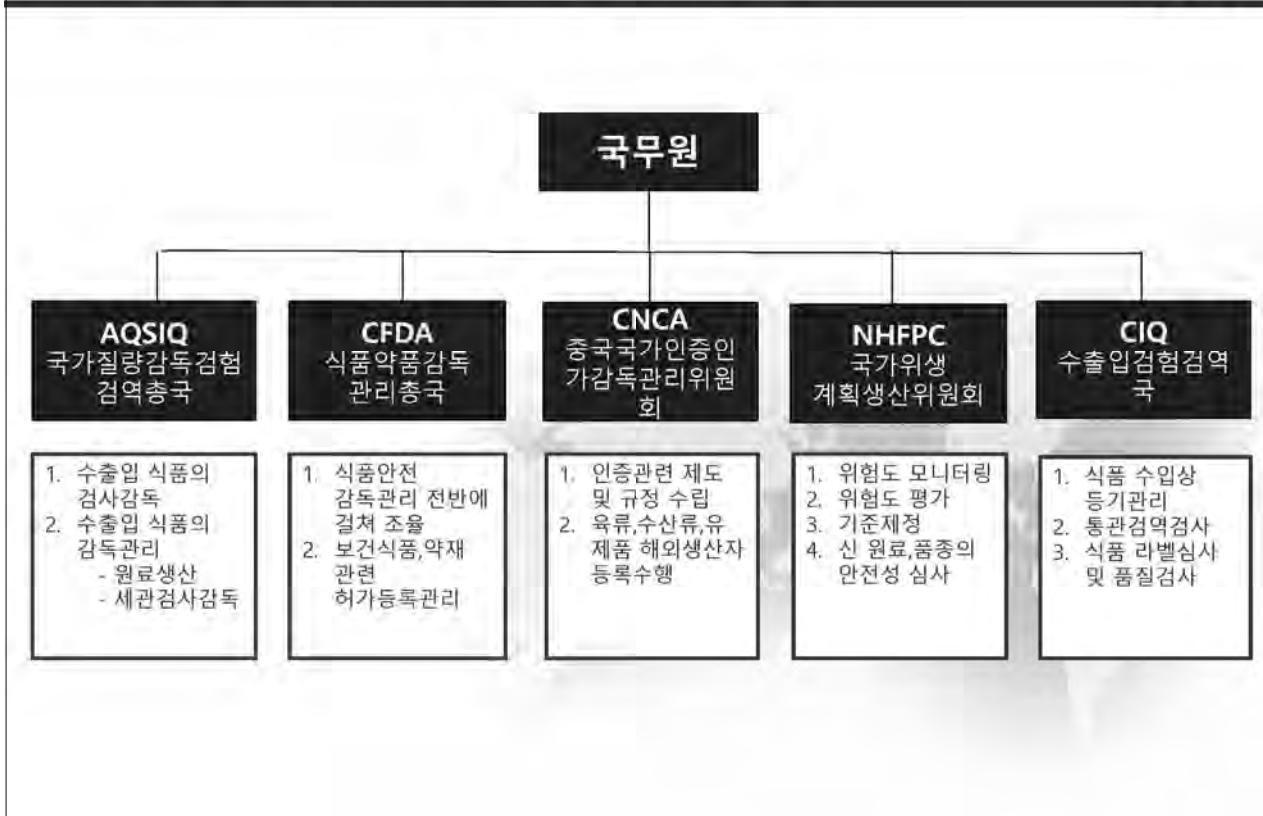
营养成分表		
项目	每100g	NRV%
能量	1562KJ	19%
蛋白质	7.4g	12%
脂肪	13.2g	22%
碳水化合物	68.4g	18%
钠	210mg	10%

注意事項: 本产品含有食品添加剂, 请适量食用;
营养成分表(仅供参考) 仅供参考, 不作为依据

- 위반 시 식파라치의 표적 되기도: 벌금, 식품 및 설비 압수, 유통허가증 취소까지
- 중국 식파라치란?
-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은 2013년 1월 8일부터 식품의약품 관련 문제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사안별로 식품 및 약품 가격의 1~6%(최대 30만 위안을 넘지 않음) 선에서 보상을 지급함.
- 우리 기업 식파라치 피해당하기도
- 중문라벨 부착은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일부 기업은 잘 인지하지 못해 식파라치들의 피해를 본 사례가 나타남.
- 관련법에 따르면 벌금, 식품과 생산설비 압수, 수입업체 유통허가증 취소 가능
- 식품안전법 86조 규정에 따르면 중문라벨 미부착 등 식품안전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식품과 생산설비 압수, 벌금 부과(판매가치 1만 위안 이하의 경우 2000~5만 위안 벌금,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2~5배의 벌금), 유통허가증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식품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법규 준수 필요

출처: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 식품허가 및 관리 감독기관



중국 식품안전법



- | | |
|------------------|---|
|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법 · 수출입 상품검사법 ·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
| 법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 수출입 제품 검사법 실시조례 ·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
| 부문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 · 수출입 수산물, 육류, 유제품, 주류 등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 수출입 식품안전정보 및 위험경보관리 실시조례 |

중국 식품안전법



■ 적용 범위 및 대상

1.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
2. 식품생산업자가 사용하는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
3.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의 안전관리
4. 요식업 서비스

■ 적용 제품

1. 식품 : 각종 식품 혹은 음료 및 원료, 또 전통적으로 식용, 약용으로 사용되는 원료(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제외)
2. 식품첨가제 : 식품의 품질, 색깔, 향미를 개선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공과정 중 식품에 첨가하는 인공합성 혹은 천연물질
3. 식품관련제품 : 식품의 포장재, 용기, 세척제, 소독제 및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의 생산경영

중국 식품안전법



■ 식품 관련규정

1. 62조: 수입식품 및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은 반드시 중국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만족해야 한다.
2. 63조: 위생부 신고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해당 규정이 없는 수입 식품 또는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 첨가제 신제품, 식품 관련 상품 신 품종의 경우, 수입상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처에 신청을 하고,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처는 본 법 제 44조 규정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즉시 관련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3. 65조: AQSIQ 기업 등록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반드시 국가출입국검험검역국에 등록 해야 한다.

4. 66조: CIQ 중문 라벨링

수입한 포장 전 제품은 중문라벨 및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본 법규 및 중국 기타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기준 요구에 부합 하여야 하며, 식품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명기하여야 한다. 포장 전 식품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 혹은 라벨, 설명서가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시 수입할 수 없다.

식품별 인증 종류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중국, 식파라치가 뜬다

- 올해 1월부터 식품영양성분 중문라벨 부착 엄격히 관리 -
- 법규 위반 시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기도 -



□ 가공식품 영양성분 라벨 부착, 올해 1월 1일부터 엄격히 적용

○ 2013년 1월 1일부터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표기 통칙” 시행

- 영양성분 부착(4+1) 시행: 식품포장 혹은 용기에 '4'대 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와 '1'(칼로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영양소 참고치(NRV)를 백분율로 표기해야 함.
- 식품원료 배합 및 생산과정에서 수소화합물 혹은 수소지방을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표시해야 함.
- 영양성분 기능 광고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함, 예컨대 고칼슘 치즈 제품으로 상품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100g당 칼슘 함유량이 240mg 이상이어야 함.

출처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수출자등록 필요서류	1. 영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식품 카테고리 선택 3. 중국 바이어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기업명칭, 기업주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반드시 중문정보	
대상범위	肉类 meat	蛋及制品类 egg and egg products
	水产及制品类 aquatic products and preserved aquatic products	中药材类 traditional Chinese medicinal materials of animal and plant origin
	粮谷及制品类 grains and grain products	油脂及油料类 oil and oil seeds
	饮料类 soft drinks and drinking water	糖类 sugar
	蔬菜及制品类 vegetable and vegetable products	植物性调料类 processed flavorings of plant origin
	干坚果类 dried fruits and nuts	其他植物源性食品类 other plant origin food
	罐头类 canned foods	乳制品类 dairy products
	蜂产品类 bee products	酒类 alcoholic beverage
	糕点饼干类 pastry biscuits and crackers	蜜饯类 candied (preserved) fruits
	卷烟类 cigarette	茶叶类 tea
	调味品类 processed flavorings	其他加工食品类 other processed foods
	特殊食品类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 심사완료

信息变更 Update of Information
 说明(Explain):
 1、*为必填项。
 Information marked with an * must be submitted

返回(Go Back)

备案变更/information changed 进境信息查询/information Query

进境信息查询 Information Query

当前处理结果说明
 Results of Transaction: 审核通过, 已发布 심사통과, 기발표

备案号 备案번호
 Record No: 4101XXXXX

企业名称(中英文) 기업명칭(영문명)
 Name(in Chinese/English): CMCC

操作日期(Operation Date)	处理状态(Handling state)	처리상태	处理结果说明(Processing results show)	처리결과설명
2014-08-01	审核通过, 已发布	심사통과, 기발표	总局审核通过, 已发布	심사통과, 기발표
2014-08-01	审核通过, 待发布		总局审核通过, 待信息发	
2014-08-01	备案提交, 待处理		企业备案提交, 待处理	
2014-08-01	备案申请, 待审核		备案申请, 待总局审核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 제도 동향



我国将于明年1月1日全面推行食品营养标签制度

《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GB 28050-2011) 2013年1月1日正式施行

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四种营养成分和能量 ("4+1") 含量值及其占营养素参考值百分比

强制标示营养成分表: 能量、蛋白质、脂肪、碳水化合物、钠

自愿标示营养成分表: 膳食纤维、维生素A、维生素E、钙、铁、锌、硒、碘、维生素B1、维生素B2、维生素B6、维生素B12、维生素C、维生素D、维生素K、维生素PP、维生素B5、维生素B9、维生素B7、维生素B11、维生素B15、维生素B17、维生素B19、维生素B20、维生素B21、维生素B22、维生素B23、维生素B24、维生素B25、维生素B26、维生素B27、维生素B28、维生素B29、维生素B30、维生素B31、维生素B32、维生素B33、维生素B34、维生素B35、维生素B36、维生素B37、维生素B38、维生素B39、维生素B40、维生素B41、维生素B42、维生素B43、维生素B44、维生素B45、维生素B46、维生素B47、维生素B48、维生素B49、维生素B50、维生素B51、维生素B52、维生素B53、维生素B54、维生素B55、维生素B56、维生素B57、维生素B58、维生素B59、维生素B60、维生素B61、维生素B62、维生素B63、维生素B64、维生素B65、维生素B66、维生素B67、维生素B68、维生素B69、维生素B70、维生素B71、维生素B72、维生素B73、维生素B74、维生素B75、维生素B76、维生素B77、维生素B78、维生素B79、维生素B80、维生素B81、维生素B82、维生素B83、维生素B84、维生素B85、维生素B86、维生素B87、维生素B88、维生素B89、维生素B90、维生素B91、维生素B92、维生素B93、维生素B94、维生素B95、维生素B96、维生素B97、维生素B98、维生素B99、维生素B100

2013年1月1日后生产的食品应当严格按照标准规定执行

2013年1月1日前生产的食品可在食品保质期内继续销售

设立过渡期限

최신 식품라벨 중국표준 강제실시

2012년 4월20일《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2011) 강제적 실시

2013년 1월1일《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GB 28050-2011) 강제적 실시

2011년 6월 1일부터 수입 포장식품 라벨관리시스템 정식운영

검사에 합격된 최초수입 ※주1) 포장식품라벨에 대하여 검사검역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관련 정보를 라벨관리 시스템에 등록 후 라벨신고번호를 부여한다.

※ 최초 수입한 포장식품이란?

2011년 6월 11일 식품라벨관리시스템 운영 이후, 라벨관리시스템 신고번호를 취득하지 못한 포장식품은 모두 최초수입으로 간주한다.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 적용범위 및 대상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라벨심사 제출서류	1. 한국 라벨건본 & 중문번역본 2. 중문 라벨건본 (* 법정규격 만족 필수) 3. 수입상, 수입대리상 또는 판매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원산지 증명서 5. 특허, 수입 건강식품화장품 위생허가증, 유기인증서, 특수성분 등 기타 강조할 내용의 관련 근거 증빙자료 6. 영양성분 테스트 성적서 (* 중국 법정규격 만족 필수) ※ 주의 : 모든 문서는 신청회사의 직인날인 필수, 국문 문서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 후 제출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규정- 2012.6.1실시	2장 제6조 중 중문라벨검사 시 제출서류 중 '영양성분테스트성적서' 만약 식품라벨에 특수 혹은 영양성분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양성분테스트성적서)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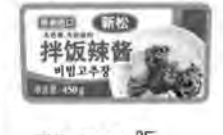
■ 라벨 표기사항

1. 법규에 만족해야 함.
2. 간단명료, 눈에 잘 띄고, 오래 지속될 수 있어야 함.
3. 알기 쉽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함.
4. 진실하고 정확해야 함.
5. 암시성 언어, 도형, 부호로 소비자들의 구입을 오도하거나 식품의 어느 성질이 다른 제품의 성질과 섞여서는 안 됨.
6. 예방, 질병치료 등의 내용을 표기 혹은 암시하면 안 되며, 비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작용을 명시 혹은 암시하면 안 됨.
7. 라벨이 식품 혹은 그 포장물(용기)와 분리되면 안 됨.
8. 규범화된 중문 간체자 사용해야 함(상표예외)
9. 표음문자와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표음문자가 해당 중문 간체자보다 커서는 안 됨.
10.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문과 대응관계여야 함. (상표, 제조자와 주소, 국외판매대리상의 이름과 주소-웹사이트 제외) 모든 외국어는 대응하는 중문 간체자보다 커서는 안 됨. (상표예외)
11. 포장재 혹은 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35cm² 이상일 때, 강제 표시 내용의 문자, 기호, 숫자의 높이가 1.8mm보다 작아서는 안 됨.
12. 하나의 판매 포장단위 안에 여러 품목이 있고 각기 다른 품목을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면, 모든 품목에 단독 라벨을 표기해야 함.
13. 외포장을 쉽게 열어 식별할 수 있거나 내포장(용기)상의 모든 혹은 부분 강제표시내용을 외포장을 통해 식별이 가능하다면 외포장에 중복 표시하지 않아도 됨.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라벨 표기사항

2012.08.17 중국 비빔고추장 450 g 10.2*61  9.2*48  9.0*48 	중문 표기내용 - 제품명칭 - 상표 - 무색소, 방부제표기 - 내용량 - 수입표기 - 배합원료 - 원산국 - 생산일자 - 품질보증기한 - 생산업체&주소 - 수입상&주소&전화 - 주의사항 - 식용방법 - 영양성분	 중문 표기내용 - 제품명칭 - 제품유형 - 내용량 - 수입표기 - 배합원료 - 원산국 - 생산일자 - 품질보증기한 - 생산업체 - 수입상&주소&전화 - 영양성분
--	---	---

출처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등록사례



鲜牛奶

意大利***牌新鲜全脂牛奶

配料: 牛乳 原产国: 意大利

经销商: 上海***商务有限公司

地址: 上海市***区***路***号

电话: 021-*****

生产日期: 年/月/日

保质期至: 年/月/日

贮藏方法: 0-4度冷藏

营养成分表

项目	每 100 毫升	NRV%
能量	271kJ	3%
蛋白质	3.2g	5%
脂肪	3.6g	6%
碳水化合物	5g	2%
钠	0g	0%
钙	120mg	15%

净含量:
1升

中文标签实际尺寸

长: 11.5CM

宽: 6CM

중국 식품 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



■ 불합격 사례 현황 및 원인

- 최근 몇 년간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해 수입식품은 이미 중국의 일반 가정에까지 진출하였음. 최근 중국에서 식품 안전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격이 비싼 수입식품이 안전하다는 기대심리로 일부 소비자들은 수입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수입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깊다고 해서 위생안전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됨
- 중국에 수입되는 식품에는 식품첨가제와 음료류, 주류, 조미료류, 코코아제품, 과자 등의 종류가 많음. 이 중에서 불합격률이 높은 식품 유형에는 과일채소류와 음료류이며, 불합격률이 낮은 식품 유형에는 혼제식품과 식품첨가제, 베이커리 식품류가 있음
- 중국 수출 시 수입식품의 불합격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합격판정으로 인한 중국내 진입 금지에 대비할 필요 있음. 아울러 주요 진입항구의 통관절차를 파악하여 비교적 쉽게 중국내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판단이 필요함

<표-1> 수입식품의 주요 불합격 원인

- 생산일자 및 승인번호가 없거나 유통기한 초과
- 외부포장이 파손되어 오염되어 위생상태 불량
- 일반식품에 건강식품 원료나 약품 첨가
- 중국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식용근거가 없는 원료나 조미료를 사용
- 중국어 라벨 적합성 검사에서 불합격
- 사용금지 첨가제 첨가 혹은 규정을 어기고 식품첨가제 사용
- 증명서류가 내용물과 불일치
- 기타 중국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北京时间: 2015年2月11日 星期三

返回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首页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进出口食品安全局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进出口食品安全数据库

关键字搜索

检索

当前位置: 首页>进出口食品化妆品风险预警>进口食品风险预警>进口不合格食品通报

2014年12月进境不合格食品、化妆品信息

郑重说明:

本表所列进口不合格食品、化妆品信息仅指所列批次食品、化妆品。表中所列批次食品、化妆品的问题是入境口岸检验检疫机构实施检验检疫时发现的,都已依法做退货、销毁或改作他用处理;这些不合格批次的食品、化妆品未在国内市场销售。

附件1: 进境不合格食品化妆品信息(2014年12月).xls

网站声明 网站地图 关于我们 联系我们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검역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은 매월 불합격 식품 및化妆품을 홈페이지에 공고함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 2014.3월 한국식품 불합격 판정 제품 리스트 및 원인

번호	식품	기업	중량 (1000kg)	불합격원인	처리조치	진입항구
1	카레	O	1000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2	사탕	L	500	대장균 기준초과	소각	산동
3	튀김가루	C	500	중서 제공 미비	반품	산동
4	부침가루	C	500	중서 제공 미비	반품	산동
5	라면	O	480	중서 제공 미비	반품	산동
6	소면	O	2160	중서 제공 미비	반품	산동
7	과자	O	90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8	과자	O	90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9	과자	H	54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10	과자	C	360	대장균 기준초과	소각	산동
11	과자	H	40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12	과자	H	39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13	과자	H	28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14	과자	H	18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15	과자	O	140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16	과자	H	83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17	과자	O	160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18	커피	D	290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19	토마토소스	O	1980	중서불합격	반품	산동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 2012~2013년 한국식품 불합격 판정 제품 리스트 및 원인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번호	식품	불합격원인	중국표준
1	과자	일반 세균수 기준초과로 부적합	중국의 일반세균수 기준 : 1g당 750이하
2	과자	과자의 과산화물가 기준초과로 부적합	중국의 과산화물가 기준 : 0.25g/100g이하
3	과자	과자에 중비소 기준초과로 부적합	중국의 비소 기준 : 0.5mg/kg
4	구운 조미김	세균수초과 부적합	중국기준 : 1g당 30,000이하
5	어묵	어묵에 소르빈산 기준초과	중국기준 : 0.075g/kg이하
6	영유아 조제식	영·유아 조제식에 철 기준초과로 부적합	중국기준 : 5-11mg/100g
7	영유아 조제식	영·유아 조제식에 아질산염 기준초과	중국기준 : 2mg/kg이하
8	생식제품	생식제품에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부적합	중국기준 : 40/100g이하, 고체음료
9	음료	혼합음료에 열화마그네슘 및 솔비톨사용 부적합	중국기준 : 열화마그네슘 및 솔비톨사용못함
10	라면	라면에 대장균군, 세균총수 초과로 부적합	중국기준 : 대장균(면) 30MPN/100g이하, (면및스프) 150MPN/100g이하, 세균총수(면) 10,000MPN/1g, (면및스프) 15,000MPN/1g이하
11	구운오징어	구운오징어에 미신고 식품첨가물(소르빈산) 검출	중국기준 : 0.075g/kg이하, 소르비톨 사용못함
12	홍삼	홍삼함유식품은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사전에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허가를받지않아부적합	보건식품 위생허가 취득 후 중국 내 판매 및 유통가능
13	고추장	고추장에 대장균군 기준초과 부적합	중국기준 : 30/100g이하
14	치즈	치즈에 곰팡이균 기준초과 부적합	(중국기준 : 50/g이하)
15	냉동핫도그	냉동핫도그 알루미늄 기준초과로 부적합	중국기준: 알루미늄-100mg/kg이하) *국내기준없음
16	탄산음료	오렌지맛 탄산음료 적양배추색소사용 부적합	(중국기준:적양배추색소-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국내기준-탄산음료에 사용할 제한없음

중국 진출을 위한 제언



■ 중국 정책에 反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

- 중국 정부는 최근 라벨링 규정, 식품안전 및 특정품목의 교역 및 판매조건을 강화한 규정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음.
- 이들 규정을 수행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음
- 초기 규정준수로 인한 타 업체와의 경쟁, 원가상승 등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국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
- 최근 중국은 상검국, 공상국 등 정부기관의 단속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위반사항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Thank You!